

『장기요양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2. 07.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5.08.11.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차 례〉

I . 통계작성 기획	1
II . 통계설계	36
III . 자료수집	73
IV . 통계처리 및 분석	102
V .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15
VI . 통계기반 및 개선	133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장기요양실태조사」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통계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I. 통계작성 기획

□ 통계개요

- 장기요양실태조사(승인번호 : 제117104호)
-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 ※ (조사·통계 처리) 국가데이터처 통계대행과 / (결과분석·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조사방법

□ 조사 대상자에 따라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조사, 인터넷 조사 등을 병행함

- 장기요양수급자는 조사원이 수급자가 생활하고 있는 자택이나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또는 자기기입조사 실시
 -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중 원거리 거주 가족 등은 전화조사 실시
- 장기요양기관과 요원은 조사자가 시설 또는 기관에 방문하여 면접조사 또는 자기기입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 19 등 조사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조사 실시
 - 인터넷 조사는 조사원이 인터넷 조사 참여법을 안내한 뒤 인터넷 조사 실시

2. 조사 및 공표주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

- 2019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3년마다 조사하며, 조사 년도의 다음 해에 통계 공표

3. 조사일정 및 일정별 수행업무

□ 사업추진일정 ('22년)

추진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조사준비											
-자료검토, 자문회의 등											
-조사표 초안 완성											
-사전조사											
-조사표 확정											
-집계표 작성											
-조사지침서 작성											
-표본설계 논의 및 확정											
-(국가데이터처)표본추출											
-(국가데이터처) 통계승인											
-(국가데이터처) 조사원											

교육												
② (국가데이터처) 본 조사 (7.12-7.25)												
③ (국가데이터처) 자료입력 및 마이크로데이터 산출												
-사후가중치산출												
④ 실태조사 결과분석												
⑤ 행정지표 추출 및 분석												
⑥ 보고서 집필 및 제출												
비고												
* 공표	2023.8.16.(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및 마이크로데이터 : 2023.12.5											

4. 통계연혁

4-1 작성통계의 최초개발 시기 및 배경

□ 2019년 1차 장기요양실태조사 실시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

- (법적 근거)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①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②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수급자)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 관한 사항, ③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④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⑤ 그 외의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제시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 2)
- (2019년 1차 조사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6년 5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법제화된 이후 최초 실시
 - 2019년 3월~7월 중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논의, 주무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사문항이 개발 및 확정(2019.7.23.)되었으며, 표본 설계를 위한 모집단 구축(2019.3.15.~5.31), 표본설계 및 조사지역 확정(2019.6.3.~7.5), 대체표본 논의(2019.7.17.)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됨
 - 2019년 1차 조사는 2019년 9월 17일~30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됨
- (조사 배경) 전체 노인인구 및 후기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노인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확대되고 있음. 다가오는 초고령시대에 대응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개선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노인 및 가족의 복지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필요성이 요구됨
 - 특히, 후기 노인인구 및 인지기능 저하 노인인구 등의 요보호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장기요양기관과 제공인력등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응한 제도 보완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가 필요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현황을 조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양적 및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함

4-2 통계의 변경 또는 개편이력 관리

□ 변경 내용

- (조사규모 변경) 전체 조사 예산을 감안하여 2019년 대비 조사대상 축소 및 조사규모 변경
 - 조사자료의 정책 활용도 측면 고려시, 수급자(미이용자) 규모 축소
 - 조사대상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규모 확대

	2019년	2022년
전체	12,000	11,000
수급자 (가족)	6,000 (4,935)	4,500 (3,381)
장기요양기관	2,000	2,000
장기요양요원	4,000	4,500

- (조사내용 변경) 2019년 1차 조사 항목의 시계열 유지를 통해 장기요양실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정책의 변화와 장기요양에서의 새로운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문항 추가함. 또한 2019년 조사 문항 중 시의성과 정책적 필요도와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삭제 또는 수정함

- 조사내용 수정 보완 기본 방향

2019년	2022년	주요 변경사항
수급자 및 가족	수급자 및 가족	- 응답자의 응답 편의 및 조사문항 활용도 등을 제고하여 문항 수정(삭제 및 수정) -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신규 문항 발굴 - COVID-19를 반영하여 문항 내용 추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 응답자의 응답 편의를 고려하여 선택지 및 응답방법 상당 부분 수정 - COVID-19를 반영하여 문항 내용 추가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한 문항 내용 추가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 응답자의 응답 편의 및 조사문항 활용도 등을 제고하여 문항 수정(삭제 및 수정) - COVID-19를 반영하여 문항 내용 추가

A. 수급자 및 가족

a. 조사원 확인사항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변경여부	변경내용	사유
-	수급자 성명	-	수급자 성명	유지		
-	수급자 급여 이용 구분	-	수급자 급여 이용 구분	유지		
-	수급자 연락처	-	수급자 연락처	유지		
-	대리응답자 성명	-	대리응답자 성명	유지		
-	수급자와의 관계	-	수급자와의 관계	유지		
-	대리응답자 연락처	-	대리응답자 연락처	유지		
-	수급자 조사표 기입방법	-	수급자 조사표	유지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기입방법		
-	수급자 조사 소요시간	-	수급자 조사 소요시간	유지	
-	-	-	가족 조사표 조사방법	추가	- 가족 조사문항 변경에 따라 파악 필요
-		-	가족 조사 소요시간	추가	- 가족 조사문항 변경에 따라 파악 필요
-	지방청(사무소)	-	지방청(사무소)	유지	
-	조사원 성명	-	조사원 성명	유지	
-	조사원 연락처	-	조사원 연락처	유지	
-	이용급여 유형	-	이용급여 유형	유지	
-	지리적 위치(시설급여)	-	-	삭제	- 정책활용도 낮은 문항으로 삭제
-	건물형태(시설급여)	-	-	삭제	- 정책활용도 낮은 문항으로 삭제

b. 세부 문항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구분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변경여부
I. 고령연금 수급자	1	배우자 여부	1	배우자 여부	유지
	2	현재 자녀 수	2	현재 자녀 수	유지
	3	평소 식사 형태	3	평소 식사 형태	유지
	4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4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정 선택지 수정 및 추가 - (9)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 (13)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 (18) 치과질환(치통, 치주질환 등)
	5-1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질병 종류 개수	5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질병 종류 개수	유지
	5-2	알약 개수(1일 기준)	-	알약 개수(1일 기준)	유지
	6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경험	6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경험	유지
	6-1	수급자가 직접 의료기관 방문 횟수	6-1	수급자가 직접 의료기관 방문 횟수	유지
	6-1-1	의료기관 방문 시 동행자	6-1-1	의료기관 방문 시 동행자	유지
	-		6-1-2	의료기관 이동 방법	추가 문항 추가 - 의료기관 방문시 주된 이동방법 추가
	6-2	가족이 대신 의료기관 방문 횟수	6-2	가족이 대신 의료기관 방문 횟수	유지
	7	지난 1년간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한 경험 및 횟수(일수)	7	지난 1년간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한 경험 및	유지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횃수(일수)		
8	지난 1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험 및 횃수(일수)	8	지난 1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험 및 횃수(일수)	유지	
9	지난 1년간 낙상 경험 및 횃수	9	지난 1년간 낙상 경험 및 횃수	수정 일부 문항 삭제 - 낙상 횃수 삭제	- 조사 어려움으로 인턴의 질로 대체하되 일부 삭제 필요
-	-	9-1	낙상으로 인한 병원 치료 여부	추가 문항 추가 - 낙상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손상으로 인한 병원치료 여부 추가	- 정책적 활용도를 위해 설문항목 필요
-	-	10	욕창 발생 여부	추가 문항 추가 - 욕창 발생 여부 추가	- 정책적 활용도를 위해 설문항목 필요
10	거주 공간에서 생활이나 외출 시 이동 방법	11	거주 공간에서 생활이나 외출 시 이동 방법	유지	
-	-	12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 이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	추가 기존 문항 수정 & 해당영역에 신설 - (응답대상) 재가이용자에서 전체 응답자로 확대 - (문항이동) 응답자 확대로 인해 재가이용자 영역에서 공통영역으로 이동	- 응답대상 확대 및 활용도 개선
11	장기요양급여 이용 결정	13	장기요양급여 이용 결정	수정 기존 문항 수정 & 대리응답 대상 축소 - (문항내용) 이용 결정 → 이용결정, 급여 유형, 장기요양기관 선택 등 - (선택지 수정) 기존 ⑧/⑨번 → ⑧로 통합 - (대리응답 대상) 가족&장기요양직원 → 가족으로 축소	- 조사 문항의 이해도 및 정확성을 위해 문항내용 수정 및 대리응답 범위 조정 - 전주기 조사 결과, 응답률 낮은 선택지 통합
-	-	14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 접하는 경로	추가 기존 문항 수정 & 해당영역에 신설 - (선택지 수정) 기존 ⑧/⑨번 → ⑧로 통합 - (선택지 순서 변경) 기존 ⑤/⑥ → ⑥/⑤ - 재가/시설/미이용자의 본인응답 문항(#35, #52, #63)에서 '공통문항' 영역으로 이동	- 조사의 편의성 및 응답률 향상을 위해 공통문항으로 이동 & 해당영역에 신설 - 전주기 조사 결과, 응답률 낮은 선택지 통합
II. 재가급여이용자	12	가구형태	15	가구형태	유지
	13	가구주	16	가구주	유지
	14	가구원수	17	가구원수	유지
	15	가구 내 장기요양인정 등급 받은 사람 수	18	가구 내 장기요양인정 등급 받은 사람 수	유지
	16	주택의 종류	19	주택의 종류	유지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17	주택의 점유형태	20	주택의 점유형태	유지	
18	현재 살고 있는 집 거주 기간	-		삭제	- 정책활용도 낮은 항목으로 삭제
19	주거공간 내 수급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여부(7종)	21	주거공간 내 수급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여부(8종)	수정	선택지 수정 - 방문이나 화장실 등의 휠체어이동장치 설치 가능성, 긴급연락장치 추가
20-1~20-4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지난 1개월) 이용 여부 / 이용 일수 / 1일 평균 이용 시간 (지난 6개월) 장기요양요원 변경여부(횟수) 인지여부 / (지난 1년간) 이용 여부 / 향후 이용 의향	22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지난 1개월) 이용 여부 / 이용 일수 / 1일 평균 이용 시간 (지난 1년간) 이용 여부 / 향후 이용 의향	수정	(세분화) 방문요양 이용여부: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 구분 (삭제) 장기요양요원/기관 변경여부
21	(지난 1년간) 단기보호 이용 여부 / 장기요양급여 적용 이용 횟수(일수) / 장기요양급여 미적용 이용 일수 / 인지 여부 / 향후 이용의향	23	(지난 1년간) 단기보호 이용 여부 / 총 이용 횟수(일수) / 인지 여부 / 향후 이용의향	수정	장기요양급여 미적용 및 총이용일수 삭제
22	(지난 1개월) 본인부담금 총액	24	(지난 1개월) 본인부담금 총액	수정	부연설명 추가 - 본인부담금 및 총비급여 모두 포함
23	(지난 1년) 노인요양시설 이용 여부	-		삭제	- 정책활용도 낮은 항목으로 삭제
24	이용 중인 장기요양급여 중 가장 중요한 급여유형	-		삭제	- 정책활용도 낮은 항목으로 삭제
25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유무 / 개수	25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유무 / 개수	유지	
25-1	복지용구 비용 지불 여부 / 지불 금액	-		삭제	- 정책활용도 낮은 항목으로 삭제
25-1-1	경제적 부담 정도	-		삭제	- 정책활용도 낮은 항목으로 삭제
26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만족도	25-1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만족도	유지	
-		25-2	복지용구 불만족 이유	추가	문항 추가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의 불만족 이유 추가
27	(지난 1개월) 하루 식사 횟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날의 식사 횟수 (지난 1개월) 하루 식사 횟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날의 식사	-		삭제	- 정책활용도가 낮은 항목으로 삭제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28	(지난 1개월) 처방전에 따른 제 시간 약 복용 여부	27	(지난 1개월) 처방전에 따른 제 시간 약 복용 여부	유지	
29	(지난 1개월)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 병의원, 약국 가지 못한 경험/횟수	28	(지난 1개월)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 병의원, 약국 가지 못한 경험/횟수	유지	
30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 이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	12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 이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	삭제	문항 이동에 따른 삭제 -(문항이동) 응답자 확대로 인해 재가이용자 영역에서 공통영역(12번)으로 이동 -응답대상 확대 및 정책활용도 개선
31	평소 집에서의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	29	평소 집에서의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	수정	선택지 용어 수정 및 예시 추가 - 일부 선택지에 대한 예시 추가 - 9번과 10번 위치 변경 -응답자의 이해도 및 조사결과 정확성 제고
32	장기요양급여 이용하지 않는 시간의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일상생활 가능여부	30	장기요양급여 이용하지 않는 시간의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일상생활 가능여부	유지	
32-1	도와주는 사람 여부 및 우선순위(1순위/2순위)	30-1	도와주는 사람 여부 및 우선순위(1순위/2순위)	유지	
33	(지난 1년)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이용 제외한 외출 여부	31	(지난 1년)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이용 제외한 외출 여부	유지	
33-1	(지난 1년) 외출 빈도	31-1	(지난 1년) 외출 빈도	유지	
33-2	(지난 1년) 주된 외출 장소	31-2	(지난 1년) 주된 외출 장소	수정	선택지 용어 수정 -자녀/친구/친지 등 행사 또는 집 방문 -응답자의 이해도 및 조사결과 정확성 제고
34	(지난 1년) 지역사회 지원 여부(7종) / 중복문응답	32	(지난 1년) 지역사회 지원 여부(7종) / 중복문응답	수정	일부 문항 삭제 -활용도가 낮은 일부 문항(빈도, 제공기관) 정리 - 전 주기 조사 결과, 유효수가 매우 적고, 정책활용도가 낮은 문항 삭제
3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 접하는 경로	14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 접하는 경로	삭제	문항 이동에 따른 삭제 -14번으로 이동 -응답대상 확대 및 정책활용도 개선
36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	26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	수정	선택지 수정 -일부 선택지에 대한 예시 추가 -치매/간호/재활 등 전문서비스 제공여부 추가 -응답자의 이해도 및 조사결과 정확성 제고
37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의 본인부담금 감면 제안 경험	-		삭제	- 전 주기 조사 결과, 유효수가 매우 적고, 정책활용도가 낮은 문항 삭제
37-1	해당 장기요양 기관 선택에 영향	-		삭제	- 전 주기 조사 결과, 유효수가 매우 적고,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정책활용도가 낮은 삭제
38	본인부담금 수급자 본인 부담 여부	-		삭제		- 전 주기 결과, 응답자 수가 적고, 정책활용도가 낮은 삭제
38-1	경제적 부담정도	-		삭제		- 전 주기 결과, 응답자 수가 적고, 정책활용도가 낮은 삭제
-		33	지난 1년간 코로나 경험	추가	신규문항 추가 -지난 1년간 코로나 경험(확진, 자가격리, 둘다 아님) 질문	- COVID-19가 장기요양서비스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문항 추가
-		34	코로나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공백 여부(일수)	추가	신규문항 추가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받지 못한 경험 여부	COVID-19가 장기요양서비스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문항 추가
-		34-1	코로나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공백 이유	추가	신규문항 추가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받지 못한 이유	COVID-19가 장기요양서비스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문항 추가
-		35	코로나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받지 못한 경험 여부	추가	신규문항 추가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원칙 중 의료서비스 연계의 원칙 관련)	COVID-19가 장기요양서비스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문항 추가
39	(지난 1개월)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5종) - 장기요양요원 / 이용시간 / 이용일수 / 급여내용 / 전반적 만족도	36	(지난 1개월)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5종) - 장기요양직원 /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 서비스 내용 / 전반적 만족도	수정	선택지 수정 - 이용시간과 이용일수 통합 이용일수 수정 - 장기요양요원을 장기요양직원으로 수정 - 급여내용을 서비스 내용으로 수정	-응답자의 이해도 및 조사결과 정확성 제고
39-1	한가지라도 만족하지 않는 가장 중요 이유	-		삭제		- 전 주기 결과, 응답자 수가 적고 정책활용도가 낮아 삭제
40	(지난 1년) 차별 또는 학대 경험 여부	37	(지난 1년) 차별 및 학대 경험 여부	수정	선택지 추가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 추가	-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개선 요구에 따라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심태파악을 위한 추가
41	건강상태 악화 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의향	38	건강악화 시 거주지 변경 계획	수정	선택지 수정 (기존) '있다, 없다'가 (수정) '자택에서 거주, 자녀 또는 형제자매 집으로 이사, 요양시설 입소, 요양병원 입원으로 세분화	-정책 수요자의 욕구 및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선택지 추가 응답자/조사 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예시 추가
42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거주한 곳	39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거주한 곳	유지		
42-1	입소 전 가구형태	39-1	입소 전 가구형태	유지		
42-2	(요양)병원 / 입원기간	39-2	(요양)병원 / 입원기간	유지		
42-3	(타 요양시설) / 거주기간	39-3	(타 요양시설) / 거주기간	유지		
42-4	(타 생활시설) / 거주기간	-		삭제		- 전 주기 조사 결과, 유효수가 매우 적고, 정책활용도 가 낮아 문항 삭제
43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재가급여 이용여부	40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재가급여 이용여부	유지		
43-1	입소 직전에 이용했던 재가급여(5종)	40-1	입소 직전에 이용했던 재가급여(5종)	유지		
44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기(년/월)	41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기(년/월)	유지		
45	(지난 1개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이용일수	-		삭제		- 정책활용도 가 낮아 삭제 필요
46	현재 생활하고 있는 침실(몇 인실)	42	현재 생활하고 있는 침실(몇 인실)	유지		
47	현재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여부	-		삭제		- 정책활용도 가 낮아 삭제 필요
48	(지난 1개월)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한 서비스(5종) 이용여부 / 이용 횟수(평균)	43	(지난 1개월)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한 서비스(5종) 이용 여부 / 이용 횟수(평균)	수정	선택지 추가 및 용어 수정 - 구강관리 추가 - 일부 문항에 대한 예시 추가	- 정책 수요자의 욕구 및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선택지 추가 응답자/조사 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예시 추가
49	(지난 1년)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한 야외활동(2종) 이용여부 / 이용 횟수	44	(지난 1년)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한 야외활동(2종) 이용여부 / 이용 횟수	유지		
50	(지난 1개월) 노인요양시설에 납부한 금액	45	(지난 1개월) 노인요양시설에 납부한 금액	유지		
51	(지난 1년) 수급자의 가족,	46	(지난 1년)	유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57-3	(타 생활시설) / 거주기간	-	삭제		- 이전 수요자 정책적 활용도도 낮아 필요
58	가구주	54	가구주	유지	
59	가구원 수	55	가구원 수	유지	
-		56	가구내 인정자수	추가 문항 추가 - 가구내 인정자수 문항 추가	- 정책적 활용 및 제도개선을 위한 문항 추가
60	주택의 종류	57	주택의 종류	유지	
61	주거공간 내 편의시설 여부(7종)	58	주거공간 내 편의시설 수급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여부(8종)	수정 선택지 수정 - 방문이나 확장실 등의 이동 가능성, 기동연락장치 설치 추가	- 정책 수요자의 따라 관련 문항 추가
62	(지난 3개월) 수급자의 일상생활 도움자(1순위/2순위)	59	(지난 3개월) 수급자의 일상생활 도움자(1순위/2순 위)	유지	
63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 접하는 경로	14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 접하는 경로	삭제 문항 이동에 따른 삭제 - 14번으로 이동	- 응답대상 확대 및 정책 활용도 개선
64	장기요양등급 인정 후 이용한 장기요양급여(중복응답)	60	장기요양등급 인정 후 이용한 장기요양급여(중복 응답)	유지	
65	이용하지 않는 이유 (1순위/2순위)	61	이용하지 않는 이유 (1순위/2순위)	유지	
66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장기요양급여	62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정 문항 통합 - 기존 66, 66-1, 66-2번을 통합하여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서비스를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	- 응답 및 조사의 수월성 제고
66-1	향후 이용 재가급여 우선순위(1순위/2순위)			삭제 문항 통합에 따른 삭제	
66-2	향후 이용 시설급여 유형			삭제 문항 통합에 따른 삭제	
67	(지난 1년) 차별 또는 학대 경험 여부	63	(지난 1년) 차별 및 학대 경험 여부	수정 선택지 추가 -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추가	-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개선 요구에 따라 실태 파악을 위한 세부 문항 추가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구분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변경여부	변경내용	사유
V. (공통) 장기요양급여이용자가족	68	수급자와의 관계	64	수급자와의 관계	유지		
	69	수급자와 동거 여부	65	수급자와 동거 여부	유지		
	69-1	수급자의 거주지와 같은 행정구역 거주 여부	65-1	수급자의 거주지와 같은 행정구역 거주 여부	수정	선택지 수정 - ④ 다른 시·도 지역에 거주 → 다른 시·도에 거주	- 조사항목의 호선을 기울이기 위해 지 어구 수정
	69-2	수급자의 거주지까지 거리	-	-	삭제		- 유사문항(65-1)을 통해 파악 가능한 정보로 조사 부담을 줄이고자 삭제
	70	노인장기요양보험 최초 인정 신청인	-	-	삭제		- 전주기 조사 결과, 활용도 낮은 문항으로 삭제
	71	노인장기요양보험 최초 신청방법	-	-	삭제		- 전주기 조사 결과, 활용도 낮은 문항으로 삭제
	72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 접하는 경로	-	-	삭제		- 전주기 조사 결과, 활용도 낮은 문항으로 삭제
	73	수급자 대신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경험	-	-	삭제		- 전주기 조사 결과, 활용도 낮은 문항으로 삭제
	73-1	어려운 점	-	-	삭제		- 전주기 조사 결과, 활용도 낮은 문항으로 삭제
	74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	-	-	삭제		- 전주기 조사 결과, 활용도 낮은 문항으로 삭제
	75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의 본인부담금 감면 제안 경험	-	-	삭제		- 전주기 조사 결과, 활용도 낮은 문항으로 삭제
	75-1	해당 장기요양 기관 선택에 영향	-	-	삭제		- 전주기 조사 결과, 활용도 낮은 문항으로 삭제
	76	치매전담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지 여부	66	-치매전담 기관 및 치매가족지원서비스 인지여부	수정	문항 추가 -치매전담기관(치매전담 주야간보호) 및 치매가족지원서비스 항목 추가	-정책 변화 반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세부 문항 추가
	76-1	치매 전담실이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생활 여부	66-1	-치매전담 기관 및 치매가족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수정	문항 추가 - 치매전담기관(치매전담 주야간보호) 및 치매가족지원서비스 항목 추가	-정책 변화 반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세부 문항 추가
	76-1-1	이용하지 않는 이유	-	-	삭제	-	-이용률이 낮아 자체 만족도가 높지 않은 관계로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해당 문항의 활용도가 낮음	
77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필요	-	-	삭제	-	-조사항목의 중요도가 낮은 문항으로 삭제	
77-1	정보제공 및 교육을 받을 의향	-	-	삭제	-	-조사항목의 중요도가 낮은 문항으로 삭제	
-	-	67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은 교육, 정보	추가	문항 추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받은 교육이나 정보에 관한 문항 신설	-제도 개선 및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관련 문항 추가	
-	-	67-1	교육이나 정보에 대한 만족도	추가	문항 추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받은 교육이나 정보에 대한 만족도 문항 신설	-제도 개선 및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관련 문항 추가	
-	-	68	향후 받고 싶은 교육, 정보 내용	추가	문항 추가 -향후 받고 싶은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교육이나 정보 문항 신설	-제도 개선 및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관련 문항 추가	
78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수급자나 가족의 생활에 도움 여부(신체/정신/경제적 측면)	70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수급자나 가족의 생활에 도움 여부(신체/정신/경제 적/사회적 측면)	수정	응답대상 수정 및 세부 항목 추가 -(응답대상 수정) 수급자 및 가족 → 가족 -(세부항목 추가) ④사회참여 활동 향상	-조사목적 분명히 하고자 응답대상 범위 축소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세부 항목 추가	
79	수급자 본인부담금 부담자	69	수급자 본인부담금 부담자	수정	선택지 수정 및 추가 -(선택지 수정) ④자녀 중 한 명이 부담→수급자의 자녀 중 한 명이 단독 부담 ⑤자녀들이 공동부담→수급자의 자녀들이 공동부담 -(선택지 추가) ⑥수급자 본인 및 가족 공동 부담	-선택지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선택지 수정 -전주기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택지 추가	
79-1	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부담 여부	-	-	삭제	-	-유사문항(#69) 을 통해 파악 가능한 정보로, 조사부담을 줄이고자 삭제	
79-1-1	경제적 부담 정도	-	-	삭제	-	-관련문항(#70) 을 통해 파악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조사부담을 줄이고자 삭제	
80	수급자 본인부담금 외	-	-	삭		-전주기 조사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경제적인 도움 주는 사람 여부			제		결과, 활용도 나은 문항으로 삭제	
80-1	경제적으로 도움 주는 사람	-	-	삭제		-전주기 조사 결과, 활용도 나은 문항으로 삭제	
8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유지			
-	-	7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의 부적절한 행위(6개 항목) / 인지경험	추가	문항 추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의 부적절한 행위(6개 항목) / 인지경험 문항 추가	-노인학대 이슈가 심화됨에 따라 실태 파악을 위한 문항 추가	
-	-	73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추가	문항 추가 -코로나19상황에서 수급자 돌봄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경험한 어려움 문항 추가	-COVID-19가 장기요양서비스 영향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문항 추가	
(재가급여) 이용자가족	82	(지난 1년) 수급자에게 제공한 돌봄-지원 횟수 / 부담 정도 - 정서적 / 일상생활 지원 / 가사지원 / 신체수발 지원(4종)	74 (지난 1년) 수급자에게 제공한 돌봄-지원 횟수 / 부담 정도 - 정서적 / 일상생활 지원 / 가사지원 / 신체수발 지원(4종)	수정	선택지 수정 -(선택지 수정: 돌봄 횟수) ⑤년 4~5회 ⑥년 1~3회 →⑤년 5회 이하로 통합 로직 명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급여제공 시간을 제외하고 응답하도록 명시 -⑥최근 1년간 없음으로 체크시, 부담정도에 응답하지 않도록 명시	-전주기 조사 결과, 응답 분포가 높지 않은 선택지 안정화 -응답자의 조사항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응답시 명시	
	83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만족 여부(5종)	75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만족 여부(5종)	수정	응답항목 세분화 -급여유형별 단일만족도→ ①장기요양기관 직원 ②이용시간, 이용일수 ③서비스 내용 ④ 전반적 만족도로 세분화	-정책 수요자의 욕구 및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유형에 만족도 만족도 세분화 필요	
	83-1	만족하지 않는 이유	75-1 만족하지 않는 이유	수정	선택지 수정 -③재가급여 내용이 제한적 →필요한 서비스(전문적인 의료 또는 간호 등)를 제공하지 않음 -④재가급여의 질적 수준이 낮음 →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재가서비스	-선택지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선택지 수정	
	84	수급자의 건강,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1순위/2순위)	-	삭제		-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에 기존 문항 의 한계 존재	
	85	수급자의 건강상태 악화 시 노인요양시설 이용 의향	76 수급자의 건강상태 악화 시 희망 거주 장소	수정	문항 내용 & 선택지 수정 -(문항 내용) 노인요양시설 이용의향 → 건강악화시 거주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장소	
-	-	77 재가거주를 위한 기존 재가급여 개선	추가	문항 추가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재가급여 문항 추가	-재가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안(기존 개선) 관련 문항을 보완하여 필요
-	-	78 재가거주를 위한 신규 재가급여 개발	추가	문항 추가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신규로 마련되어야 할 재가급여 문항 추가	-재가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안(신규 개발) 관련 문항을 보완하여 필요
(시설급여)이용자가족	86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 인정 후 입소한 노인요양시설 총 개소	-	-	-문항 활용도가 높음으로 삭제(전주기 조사 결과 평균 1.5개에 불과하여 실효성 낮은 항목)
	87	(지난 1년) 수급자에게 제공한 돌봄-지원 횟수 / 부담 정도 -정서적 / 일상생활 지원(2종)	79	(지난 1년) 수급자에게 제공한 돌봄-지원 횟수 / 부담 정도 -정서적 / 일상생활 지원(2종)	선택지 수정 -(선택지 수정: 돌봄 횟수) ⑤년 4~5회 ⑥년 1~3회 →⑤년 5회 이하로 통합 로직 명시 -⑥최근 1년간 없음으로 체크시, '부담정도'에 응답하지 않도록 명시
	88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80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정답항목 세분화 -단일만족도→ ①식사 ②목욕 ③신체, 인지기능 증진 서비스 ④간호 및 의료 서비스 ⑤시설의 물리적 환경 ⑥장기요양기관의 직원 ⑦비용 ⑧전반적인 만족도로 세분화
	88-1	만족하지 않는 이유	-	-	-정책 수요자의 욕구 및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시설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 및 기타 물리적 환경 등 만족도의 항목의 세분화 필요
	89	시설급여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1순위/2순위)	-	-	-관련 문항(#80)을 통해 파악 가능함에 따라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삭제
	90	건강 호전 시 집으로 모실 계획 여부	81	건강 호전 시 집으로 모실 계획	-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자의 파악하기 위해 기존 문항의 한계 존재
				유지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여부			
90-1	집으로 모시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사항	-	-	삭제	-	-관련 문항(#81-1)을 통해 파악 가능한 조사를 포함하기 위해 삭제
90-2	노인요양시설 계속 희망 이유	81-1	집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유	수정	문항 내용 및 선택지 수정 - (문항내용) 노인요양시설 계속 희망 이유→ 집에서 모시지 못하는 이유 (선택지 수정) - ②지속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③자택으로 모시는 것이 시설입소 비용보다 많이 들어서→ 수급자 돌봄에 따른 비용 문제 때문에 ④비슷한 연배의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 주기적으로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하기 어려워서 ⑤주기적으로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수급자 돌봄에 따른 보호자의 심리, 정서적 부담 때문에 ⑥기타 → 삭제	-응답자의 조사문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문항 수정 -전주기 조사결과에서 기타 항목에서 다수가 제시한 내용들을 반영
-	-	82	노인요양시설 개선 사항(시설/인력)	추가	문항 추가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인력 측면에서의 개선 문항 추가	-정책 수요자 & 연구 반영 노인요양시설 개선 관련 정책 개선안 도출을 위해 문항 추가
-	-	83	노인요양시설 개선 사항(서비스 질 개선)	추가	문항 추가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문항 추가	-정책 수요자 & 연구 반영 노인요양시설 개선 관련 정책 개선안 도출을 위해 문항 추가
이용자가족일련사항	91	성별	84	성별	유지	
	92	연령	85	연령	유지	
	93	지난 1주일 일 여부 / 직장 / 직위	86	지난 1주일 일 여부	수정	응답항목 간소화 -(기존) 직명/ 직위 → (수정) 직명/직위 삭제 -조사문항 활용도가 낮아, 항목에 대한 응답이 조사 부응이므로 삭제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	-		86-1 종사상 지위	추가	문항 추가 -종사상 지위 확인 문항 추가	-가족의 일반특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등 추가적인 필요사항을 반영한가
94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	삭제		-조사문항 활용도가 낮음 -항목으로 조출 -조사문항 활용도가 낮음 -항목으로 조출
94-1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지 여부	-	-	삭제		-조사문항 활용도가 낮음 -항목으로 조출
95	지난 3개월 동안 월평균 가구소득	87	지난 3개월 동안 월평균 가구소득	유지		
96	수급자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 둔 경험	88	수급자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 둔 경험	유지		

B. 장기요양기관

a. 조사원 확인사항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변경여부	변경내용	사유
-	응답자 성명	-	응답자 성명	유지		
-	급여 유형	-	급여 유형	유지		
-	기관 위치	-	기관 위치	수정	-선택지 수정 ④산지지역→도서산간지역	-도서지역 포함
-	응답자 연락처	-	응답자 연락처	유지		
-	조사표 기입방법	-	조사표 기입방법	수정	-선택지 수정 ②자기기입식→ ②자기기입 조사 ③인터넷 조사로 분리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 확인 필요
-	조사 소요시간	-	조사 소요시간	유지		
-	지방청(사무소)	-	지방청(사무소)	유지		
-	조사원 성명	-	조사원 성명	유지		
-	조사원 연락처	-	조사원 연락처	유지		

b. 세부 문항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변경여부	변경내용	사유
1	운영주체	1	운영주체	수정	-선택지 수정(간소화) ④ 종교법인, ⑤ 학교법인, ⑥ 의료법인 → 기타 법인 ⑨ 기타 →삭제	선택지 간소화 19년 결과에서 제외함
2	단독 및 병설 여부	3	단독 및 병설 여부	유지		
2-1	병설형태	3-1	병설형태	유지		
2-2	급여유형 제공 여부(7종)	3-2	급여유형 제공 여부	수정	-응답방법 수정 개별 급여유형별 응답 → 해당하는 급여유형 모두 고르시오	응답자의 응답 부담 감소를 위해 모두 고르시오로 수정
3	거물 점유형태	2	거물 점유형태	유지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3-1	저당권 금액 비율	-	-	삭제		2019년 조사 결과 보기 별 분포 조사가 유사하여 사결과의 성이 낮음
4	(19.9.1.기준) 이용자 현황 (총계/등급별/성별/치매진단여부별)	4	(22.7.1.기준) 이용자 현황 (총계/등급별/성별/치매진단여부별)	수정	-응답항목 추가 및 삭제 정원수 추가 응답외 대상자 기준에 등 남고, 없음'을 삭제함	-총족를 파악 필요 응답자의 부담 감소 응답
5	(방문요양/목욕/간호) 직원 수 /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직원수	16	(방문요양/목욕/간호) 직원 수 /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직원수	수정	-응답항목 추가 및 삭제 (삭제) 병설기관 대상 임 금 미지급 실인원 (수정) 인력배치기준 변 화에 따라 무응답 항목 수정	-2019년 결과를 고려하여 활용 도가 낮은 항목 으로 구분되어 응답자의 부담 감소를 위 해 삭제 - 인력배치기 변화에 따라 무 응답 항목 수정
6	(공생/시설/주야간/단기) 직원 수 /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 직원 수	19	(공생/시설/주야간/단기) 직원 수 /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 직원 수	수정	-응답항목 추가 및 삭제 (삭제) 병설기관 대상 임 금 미지급 실인원 (수정) 인력배치기준 변 화에 따라 무응답 항목 수정	-2019년 결과를 고려하여 활용 도가 낮은 항목 으로 구분되어 응답자의 부담 감소를 위 해 삭제 - 인력배치기 변화에 따라 무 응답 항목 수정
7	기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채용 직원(4종) 수	20	기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채용 직원(4종) 수	유지		
8	요양보호사 1명이 담당하기 적절한 수급자 수(주간/야간)			삭제		담당하기 적절 한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 는 것이 정확 한 것 으로 활용 도가 높을 것 으로 해당 항목 을 삭제 하고, 주간 과 야 간 에 근 무 하 는 요 양 보 호 사 수 를 추 가 함
		21	주간과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수	추가		요양보호사 1인 이 담당하는 급자 수 산출 을 위해 추가
9	법정 직원배치기준에서 상향조정 필요 직종(1순위~3순위)	22	법정 직원배치기준에서 상향조정 필요 직종(1순위~3순위)	수정	-우선순위 조정 3순위→2순위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 인력이 적용되지 않은 원배치기준을 명시	응답자의 부담 감소 조사내용 명확 화
10	사회보험 가입된 직원 수(보험 4종)	5	사회보험 가입된 직원 수(보험 4종)	유지		
11	지난 6개월 퇴사 및 입사 현황(8종 직종)	6	지난 6개월간 퇴사 현황(7종)	수정	-입사 삭제 -직종 단순화 ④ 물리치료사, ⑤ 작업 치료사→ ④물리(작업)치 료사) ⑦사무원, ⑨위생원, ⑩ 기타→⑦그 외 직군 -총계 추가	응답자의 부담 감소 응답
		7	직종별 평균 근무 기 간	추가		기관 내 종사자 의 평균 근무기 간 확인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8	기관 내 직원 복지 정책	추가		기관 내 직원 복지 수준 파악
12	장기요양인력에 대한 교육 필요성	9	장기요양인력에 대한 교육 필요성	수정	-선택지 수정 그렇다→필요하다로 전체 선택지 수정	문항에 적절한 보기 형태로 재구성
12-1	교육이 필요한 직종(1순위/2순위)	9-1	교육이 필요한 직종(1순위/2순위)	유지		
13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교육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1순위/2순위)	10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교육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1순위/2순위)	수정	-선택지 수정 ② 치매전문교육을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포함 →삭제 (추가) ⑨ 비대면, 온라인 강의 등 강의 방식의 다양화 (추가) ⑩ 대체인력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정책 및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선택지 추가 및 삭제
-	-	11	현재 요양보호사의 양성 및 교육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추가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련 문항 추가
14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여부			삭제		현재까지 보급이 높지 않은 문항으로 해당 실의 운영 중인 전체의 2.6%)
14-1-1	치매전담실 현황(개수/정원/현원)			삭제		
14-1-2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현황(개수/정원/현원)			삭제		
14-2	운영하지 않는 이유			삭제		
14-3	향후 운영 계획			삭제		
15	지난 1년 동안 수급자의 안전사고 유무/건수	12	지난 1년 동안 수급자의 안전사고 유무/건수	수정	-문항내용 수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명시	문항 내용의 명확화
15-1	해당하는 안전사고 항목별 건수(7개 항목)	12-1	해당하는 안전사고 항목별 건수(7개 항목)	수정	-문항내용 수정 ① (시설 안.밖에서의) 낙상→① (시설 및 집안 안.밖에서의) 낙상 ④ 흡인성 폐렴→④ 흡인성 폐렴(일반적 폐렴 제외) ⑤ 감염성 질환(독감, 간염, 결핵, 유행 등)→⑤ 감염성 질환(독감, 간염, 결핵, 유행, 코로나 19 제외) ⑦ 노인학대 신고(보호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⑦ 노인학대 신고 접수(보호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문항 내용의 명확화
16	(지난 1년) 수급자의 상해나 사고로 손해배상 여부/건수	13	(지난 1년) 수급자의 상해나 사고로 손해배상 여부/건수	유지		
16-1	대응 방법별 건수(4종)	13-1	대응 방법별 건수(4종)	수정	-응답방법 수정 및 통합 대응방법별 응답→해당하는 대응방법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문항 일부 통합	2019년 결과에서 빈도수가 낮은 항목은 통합
17	(지난 1년) 직원이 업무 상 질병 상해 여부/건수	14	(지난 1년) 직원이 업무 상 질병 상해 여부/건수	유지		
17-1	대응 방법별 건수(5종)	14-1	대응 방법별 건수(5종)	수정	-응답방법 수정 및 통합 대응방법별 응답→해당하는 대응방법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문항 일부 통합	2019년 결과에서 빈도수가 낮은 항목은 통합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		23	(공생/시설/단기) COVID-19로 인하여 경험한 어려움	추가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는 비스 제공에 큰 영향을 주었으므로 COVID-19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파악 필요
-		24	(공생/시설/단기) COVID-19 대응 방법	추가		생활시설의 경우 COVID-19로 인한 영향을 받은 곳으로 크게 별도의 대응방법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		37	(주야간) COVID-19로 인하여 경험한 어려움	추가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큰 영향을 주었으므로 COVID-19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파악 필요
-		17	(방문요양/목욕/간호) COVID-19로 인하여 경험한 어려움	추가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큰 영향을 주었으므로 COVID-19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파악 필요
18	기관 운영의 어려움(10종) 정도	15	기관 운영의 어려움(10종) 정도	수정	-문항내용 수정, 추가, 삭제 (수정) 1) 인력 채용 및 관리→9) 인력 채용 5) 급여비용 청구업무, 6) 재무회계관리업무→3) 기관운영과 관련된 회계 및 행정 업무 4) 장기요양기관 재정 운영→7)재정 운영상의 어려움 (삭제) 4) 장기요양기관 재정 운영, 7) 장기요양 보험정책 변화에 대응 (추가) 6) 이용자의 병의원 이용 동행	문항 내용의 명확화와 정책의 고 화확화 가능성 활용 가능성 고려
18-1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1순위/2순위))	15-1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1순위/2순위))	수정	-선택지 수정 및 추가 (수정) ③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음→장기요양 급여 이용을 희망하지 않 음 (추가) ⑥가족인 요양보 호사 증가	선택지 내용의 명확화와 활용 가능성 고려
		15-2-1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1순위/2순위)	추가		장기요양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 활용 기초자료로
		15-2-2	인력 채용이 어려운 직종	추가		장기요양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 활용 기초자료로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19	기관의 건물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위한 용도인지 여부	25	기관의 건물 건립 용도	수정	-문항내용 수정 기존 19-1번 문항과 통합	응답자의 응답 부담 감소를 위해 2019년 19-1번 문항과 통합
19-1	사용하고 있는 건물 형태			삭제		24번 문항으로 통합
20	같은 대지 안에 노인요양시설 사용 건물 수			삭제		
21	건물별 전체 층수 / 노인요양시설 사용층수(최저/최고)/ 침상이동 EV 설치여부	26	기관이 위치한 최고 층수/침상이동 엘리베이터 여부	수정	-응답항목 삭제 및 추가 (삭제) 각 건물별 최고 층수, 각 건물별 노인요양시설 사용 층수(최저/최고) (추가) 노인요양시설이 위치한 최고 층수(전체 건물 통합하여) -응답내용 구체화 해당없음 항목의 경우에 대해 구체화하여 제시	응답자의 응답 부담 감소
22	생활실 유형별(1인실-4인실) 개수 및 입소자 수	27	생활실 유형별(1인실-4인실) 개수 및 입소자 수	유지		
23	(지난 1년) 수급자나 가족이 치료 거부 사례 여부/건수			삭제		23번 기관운영의 어려움 내 이용자의 병의행동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통합
24	(지난 6개월) 요양보호사 근무형태	28	(지난 6개월) 요양보호사 근무형태	유지		
25	(지난 1개월) 야간근무 운영 형태	29	(지난 1개월) 야간근무 운영 형태	유지		
26	(지난 1개월) 하루 평균 야간근무 직원 수	30	(지난 1개월) 하루 평균 야간근무 직원 수	유지		
27	요양보호사 외 직종의 야간근무 여부	31	요양보호사 외 직종 야간근무한 직종	수정	-문항내용 수정 요양보호사 외 직종의 야간근무 여부→요양보호사 외 야간근무한 직종 선택	응답자의 응답 부담 감소
27-1	(지난 1개월) 직종별 주당 야간 근무 일수	-		삭제		30번 문항을 수정하면서 내용 통합하여 간소화하여 통합함
28	(지난 3개월) 기관의 비공식 인력 현황(명수 및 횟수)	32	(지난 3개월) 기관의 비공식 인력 현황(명수 및 횟수)	수정	-응답항목 삭제 및 추가 인원 및 횟수→지원여부, 도움정도	정책적 활용 가능성 확보
29	비급여 항목(6종) 제공 여부 및 금액	33	(공생/시설/단기) 비급여 항목(6종) 제공 여부 및 금액	유지		
-		34	(공생/시설/단기) 이용자 개인의 자기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관의 노력	추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마련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함
-		35	(공생/시설/단기)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	추가		
-		36	(공생/시설/단기)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관의 노력	추가		
-		38	(주야간) 비급여 항목(6종) 제공 여부 및 금액	추가		
-		39	(주야간) 주당 운영 일수	추가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		40	(주야간) 주당 운영 시간	추가	
-		41	(주야간) 이용자 개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기관의 노력	추가	
-		42	(주야간)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	추가	
-		43	(주야간)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관의 노력	추가	
-		18	(방문요양/목욕/간호)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추가	
30	성별	44	성별	유지	
31	연령	45	연령	유지	
32	교육수준	46	교육수준	유지	
33	보유 자격증	47	보유 자격증	수정	-선택지 추가 ⑧물리치료사, ⑨작업치료사 추가
34	소속 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시작 일자	48	소속 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시작 일자	유지	
35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총 기간	49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총 기간	수정	-응답항목 추가 현재 소속기관의 근무기간 추가

C. 장기요양요원

a. 조사원 확인사항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변경여부	변경내용
-	응답자 성명	-	응답자 성명	유지	
-	급여 유형	-	급여 유형	유지	
-	소속 기관명	-	소속 기관명	유지	
-	응답자 직종	-	응답자 직종	유지	
-	응답자 연락처	-	응답자 연락처	유지	
-	조사표 기입방법	-	조사표 기입방법	수정	-선택지 수정 ②자기기입식→ ②자기기입 조사 ③인터넷 조사로 분리
-	조사 소요시간	-	조사 소요시간	유지	
-	지방청(사무소)	-	지방청(사무소)	유지	
-	조사원 성명	-	조사원 성명	유지	
-	조사원 연락처	-	조사원 연락처	유지	

b. 세부 문항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구분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변경여부
공동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유지
	1-1	가족인요양보호사로 가족에게 재가급여 제공	1-1	가족인요양보호사로 가족에게	유지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재가급여 제공			
2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을 하는 주된 이유	4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을 하는 주된 이유	수정	선택지 추가 - ⑦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만족과 보람	- 정책 방향 개선을 위한 선택지 추가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	5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	수정	선택지 수정, 삭제 - '③비영리법인'의 시 삽입, ⑤기타' 예 삭제	- 선택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 삭제
4	현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시작	6	현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시작	유지		- 전주기 조사결과, 낮은 항목으로 삭제
5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문서 보관 여부	-		삭제		- 전주기 조사결과, 낮은 항목으로 삭제
6	매 월 급여명세서 받는 여부	-		삭제		
7	직위	7	직위	유지		
8-1	현재 소속기관 고용형태	8-1	현재 소속기관 고용형태	유지		
8-2	주된 근무장소	8-2	주된 근무장소	유지		
9	주된 근무 시간 유형	9	주된 근무 시간 유형	수정	세부설명 추가 - ①주간근무 선택지에 추가 설명 삽입	- 선택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설명 추가
9-1	교대제 형태	9-1	교대제 형태	유지		
10	(지난 3개월) 현재 소속기관 근무한 일수	10	(지난 3개월) 현재 소속기관 근무한 일수	수정	세부설명 추가 - 각 월의 요일별 수에 대한 추가 설명 삽입	- 응답자의 조사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설명 추가
11	(지난 3개월) 현재 유급(정규/초과) & 무급(초과) 근무시간	11	(지난 3개월) 현재 소속기관에서의 총 근무시간	수정	문항 통합 방식으로 수정 - 유급(정규/초과), 무급(초과) 기관을 합쳐 총 근무시간에 대해 조사	- 전주기 조사결과, 낮은 항목으로 통합
11-1	월 60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이유	11-1	월 60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이유	수정	선택지 추가/삭제/수정 - '①가족인요양보호사로 최대 월60시간 일할 수 있어서' 추가 - 기존의 ④, ⑦ 통합 - ⑦(기존의 ⑥)선택지 문구 수정	- 정책 방향 개선을 위한 선택지 추가 - 선택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 삭제
12	(지난 3개월) 수령한 급여	12	(지난 3개월) 수령한 급여	유지		
13-1	법정 근로수당(휴일수당) 인지여부 / 수령방식	13-1	법정 근로수당(휴일수당) 수령방식	수정	기존 세부 문항 구성 변경 - 인지여부 관련 세부 문항 삭제 선택지 수정/순서변경	- 전주기 조사결과, 낮은 항목으로 통합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 문구 수정 및 순서 변경	- 선택지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위하여 순서 변경
13-2	법정 근로수당(주휴수당) 인지 여부 / 수령방식	13-2	법정 근로수당(주휴수당) 수령방식	수정 기존 세부 문항 구성 변경 - 인지 여부 관련 세부 문항 삭제 - 선택지 수정/순서 변경	- 전주기 조사 결과, 낮은 선택지 응답률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선택지 순서를 변경
13-3	법정 근로수당(연차수당) 인지 여부 / 수령방식	13-3	법정 근로수당(연차수당) 수령방식	수정 기존 세부 문항 구성 변경 - 인지 여부 관련 세부 문항 삭제 - 선택지 수정/순서 변경	- 전주기 조사 결과, 낮은 선택지 응답률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선택지 순서를 변경
13-4	법정 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인지 여부 / 수령방식	13-4	법정 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수령방식	수정 기존 세부 문항 구성 변경 - 인지 여부 관련 세부 문항 삭제 - 선택지 수정/순서 변경	- 전주기 조사 결과, 낮은 선택지 응답률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선택지 순서를 변경
14	소속기관에서 받는 추가 수당 수령 여부(2종)	14	소속기관에서 받는 추가 수당 수령 여부(2종)	수정 세부설명 추가 - 세부 설명에 3) 기타 수당의 예시 제시	- 선택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부 설명 추가
-		15	법정휴가제도 자유로운 사용 여부	추가 문항 추가 - 법정휴가제도(연차휴가, 출산휴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지 여부 문항 추가	- 제도 개선 및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문항 추가
-		15-1	자유롭게 법정휴가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1순위/2순위)	추가 문항 추가 - 법정휴가제도(연차휴가, 출산휴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사	- 제도 개선 및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문항 추가
15	2개 이상 장기요양기관 동시에 근무 여부/개소	16	2개 이상 장기요양기관 동시에 근무 여부/개소	유지	
16	(지난 3개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한 근로 시간	17	(지난 3개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한 근로 시간	유지	
17	(지난 3개월)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은 급여	18	(지난 3개월)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은 급여	유지	
18	희망하는 주당 근로 시간	19	희망하는 주당 근로 시간	유지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19	사회보험 가입 여부(3종)	20	사회보험 가입 여부(3종)	수정	세부설명이 추가 - 세부 설명에 각 사회미세 보험의 적용대상, 가입자 등에 대한 세부설명 추가	- 선택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지 설명 추가
20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근로한 전체 기간	3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근로한 전체 기간	수정	문항이동 (20번 → 3번)	- 자격증 등 관련 문항과 연계하여 문항이동
21	(지난 1년) 부당 경험 여부 / 회수 - 모욕적 비난 / 신체적 위협 / 성희롱적 발언 또는 신체접촉 / 업무 이외 활동	21	(지난 1년) 부당 경험 여부 / 회수 - 모욕적 비난 / 신체적 위협 / 성희롱적 발언 또는 신체접촉 / 업무 이외 활동	수정	문항삭제, 선택지 추가 - 각 부당행위 4문항을 유무 관련 경험 빈도에 선택지 추가 ⑦ 해당 경험 없음	- 경험 빈도/여부로 연결된 문항을 보완하여, 동일 주제에 대한 지식을 고지함
22	부당한 대우 대응 방법(1순위/2순위)	22	부당한 대우 대응 방법(1순위/2순위)	수정	선택지 추가/수정 - ④ 노동조합에 신고 및 대응 요구 선택지 추가 및 타 문항의 문구 수정	- 선택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지 수정, 추가
-		22-1	소속 기관의 대응 조치	추가	문항추가 - 소속기관에 부당행위에 대해 보고한 경유에 대해 사후조치가 있었는지 조사	- 제도 개선 및 정책 수요자 의견에 따라 관련 문항 추가
23	장기요양업무 시 질환이나 사고 경험 여부(3종)	23	장기요양업무 시 질환이나 사고 경험 여부(4종)	수정	문항 조사시점 수정 - '최근 1년 이내'와 '시점 무관' 경험에 대해 분리하여 조사 세부 선택범주 수정 - 우울증 등 정신, 심리적 질환 관련 문항 추가 - 기타 문항 삭제	- 제도 개선 및 정책 수요자 의견에 의해 문항 수정
24	장기요양업무 관련 질환, 사고 발생비용 처리방법	24	장기요양업무 관련 질환, 사고 발생비용 처리방법	수정	선택지 수정 - 산재보험 관련 두 문항 통합 - 선택지 순서 변경	- 선택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지 수정, 재배열
25	장기요양기관의 대응 적절성	25	장기요양기관의 대응 적절성	유지		
26	교육수준	2	교육수준	수정	문항이동 (26번 → 2번) 선택지 추가 - ⑤ 대학원 석사 학위 이상	- 자격증 등 관련 문항과 연계하여 문항이동 - 정책 변화 반영을 위해 개선세부 선택지 추가
-		26	(지난1년)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	추가	-	- 제도 개선 및 정책 수요자 의견에 따라 관련 문항 추가
27	장기요양업무 관련 교육 참여 현황(참여 여부 & 교육 만족도 / 미참여 사유) - 치매전문교육 / 관련 기관 실시 교육 / 소속기관 교육	27	외부기관 제공 교육 참여 경험 여부	수정	세부 선택범주 수정 - 치매전문교육, 소속기관 교육 관련 외부 기관 교육 참여 여부만 조사하도록 수정	- 전주기 조사결과, 낮은 교육수준을 반영하여, 교육수준을 높이고, 조사이행률 향상을 위한 조치
		27	교육	추		- 제도 개선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1 내용(중복응답)	가		및 정책 수요자의 관한 추가 관련 요구에 문
			27-2 교육 만족도	유지		
			27-3 교육 미참여 사유	수정	선택지 추가/수정/삭제 - 코로나19 관련 선택지 추가, 일부 선택지 문구 수정 및 삭제	- 선택지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택지 정제 및 변경을 통해 선택지 추가
28	장기요양업무에 추가적인 교육 필요성	28	장기요양업무에 추가적인 교육 필요성	유지		
29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	29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	수정	선택지 추가/수정/삭제 - 인권, 기능회복 훈련 등 다양한 교육 내용 선택지 추가 - ①선택지 문구 수정	- 선택지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택지 정제 및 변경을 통해 선택지 추가
30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11종)	30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11종)	수정	세부 선택지 범주 수정 - 업무시간 조정의 유보 - 연성, 관련 세부 선택지 범주 삭제 - 근무유형, 종사자 복지 후생 수준 관련 세부 선택지 추가	- 전주기 조사결과, 만족도는 낮았으나, 세부 선택지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자 의견에 따라 선택지 추가
31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자긍심	-		삭제		- 전주기 조사결과, 만족도는 낮았으나, 문항 삭제
31-1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		삭제		- 전주기 조사결과, 만족도는 낮았으나, 문항 삭제
32	장기요양업무 수행 시 받는 스트레스 많은지 여부	-		삭제		- 전주기 조사결과, 만족도는 낮았으나, 문항 삭제
33	(지난 1년) 이직 경험	31	(지난 1년) 이직 경험	유지		
33-1	(지난 1년) 이직 횟수	31-1	(지난 1년) 이직 횟수	유지		
33-1-1	이직한 이유	31-1-1	이직한 이유	수정	선택지 순서 변경 - 타 선택지와 관련성을 생각해 ⑦, ⑧ 선택지 순서 변경	- 선택지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택지 재배열
34	앞으로 이직할 의향	32	앞으로 이직할 의향	수정	문항 문구 수정 - '앞으로 1년 이내'로 시점 제시	-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항을 수정
34-	이직하고자 하는 업종	32	이직하고자 하는	유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1		-1	업종	지
	35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1순위/2순위)	33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1순위/2순위)	수정 - 기존 35문항, 선택지 중 선택지만 남기고 34문항 신규 선택지로 이동 - 신규 관련 선택지 추가
			34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1순위/2순위)	추가 - 문항 추가 - 기존 35문항, 선택지 중 선택지만 남기고 34문항 신규 선택지 추가
					- 제도 개선 수거관세 및 요자의 따라 문항 부화
					- 제도 개선 수거관세 및 요자의 따라 문항 부화
	36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수급자와 알게 된 계기	-		삭제
	37	(지난 1개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수급여부/담당 수급자 수/1일 최대 방문 수급자 수	35	(지난 1개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수급여부/담당 수급자 수	수정 - 세부분항 삭제 - 방문요양/목욕/간호 세부분항 삭제
	38	(지난 1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병원 응급의료로 수급자와의 외출 여부	36	(지난 1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병원 응급의료로 수급자와의 외출 여부	유지
	39	(지난 1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1개월 이상 일을 한 경험 여부	37	(지난 1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1개월 이상 일을 한 경험 여부	수정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순서 변경 및 기타 선택지에 대한 예시 추가
	39-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일을 한 이유	37-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일을 한 이유	수정 - 선택지 수정 - 코로나19 관련 여부, 자발성 여부에 따라 선택지 재구성 - 세부분항 삭제 - 중단기간 관련 세부 문항 삭제
					- 정책환경 변화 반영에 따라 선택지응답자의 선택지수정 조사항은
	-		38	(지난1년) 갑작스러운 통보로 일을 그만 둔 경험	추가
					- 제도 개선 및 정책 수요자의 따라 문항 추가
	40	(노인요양시설, 공생, 단기보호) 규정상 휴게시간 인지 여부/ 시간	-		삭제
	41	(노인요양시설, 공생, 단기보호)실제 사용하는 휴게시간	39	(노인요양시설, 공생,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실제 사용하는 휴게시간	수정 - 응답대상 수정 - 주야간보호기관 장기 요양요원 신규 포함
	42	(노인요양시설, 공생, 단기보호)독립된 휴게공간 여부	49	(노인요양시설, 공생, 단기보호, 주야간보호)휴게공간 여부	수정 - 응답대상 수정 - 주야간보호기관 장기 요양요원 신규 포함
					- 해당 문항이 조사범위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2년)			
호(조무)사	43	(노인요양시설, 공생, 단기보호)지난 1개월 야간근무 한 경험 여부	41	(노인요양시설, 공생,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야간근무 경험 여부	수정 응답대상 수정 - 주야간보호기관 장기요양요원 신규 포함	- 해당 문항이 적용 가능한 조사범위 확대
	43-1	(노인요양시설, 공생, 단기보호)야간근무 시 담당 총 수/ 수급자 수	-	삭제		
	43-2	(노인요양시설, 공생, 단기보호)야간근무 시 함께 근무한 요양보호사 인원 수	-	삭제		
	44	(노인요양시설, 공생, 단기보호)지난 1개월 동안 야간근무 경험 여부	-	삭제		- 전 문항(42번)과 통합
	45	(노인요양시설, 공생, 단기보호)지난 1년 동안 근무시간 외 전화 대응 빈도	42	(노인요양시설, 공생, 단기보호, 주야간보호)근무시간 외 전화 대응 빈도	수정 응답대상 수정 - 주야간보호기관 장기요양요원 신규 포함 문항 수정 - 전화 또는 문자 대응으로 문구 수정	- 해당 문항이 적용 가능한 조사 대상 확대 - 제도 개선 및 정책 환경에 따라 문항 수정
	-		43	(노인요양시설, 공생,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수급자에 대한 부당행위(7종) 목격	추가 문항 추가 - 추가 직원 또는 시설장 수급자에게 수행하라는 부당행위를 목격 조무사(욕설, 돌봄요구 신체 부조절, 절대응, 등 부당행위)	- 제도 개선 수요요구에 따라 문항 추가

5. 통계의 작성목적

5-1 통계 작성 목적

☐ 작성목적

-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제공인력의 실태와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변화추이를 예측하여, 현재의 장기요양제도의 질적 제고 및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5-2 주된 통계활용 분야 파악

☐ 활용분야

- 장기요양급여 수급노인,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등에 관한 대표성 있는 데이터 생산 및 구축을 통한 정책설계의 기초자료 활용(예: 노인관련 부처의 자료에 다수 인용)
- 장기요양급여 수급노인,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등에 관한 대표성 있는 데이터 생산 및 구축을 통한 정책설계의 기초자료 활용(예: 노인관련 부처의 자료에 다수 인용)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욕구와 수요특성을 파악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구조에

- 관한 객관적인 양적자료 확보 및 기초자료 산출(예: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개발 등)
- 장기요양보험제도 이해관계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향상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 활용(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파악을 통한 제도개선)
 - 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 수급자의 삶의 질 변화,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등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 관련 연구의 주제로 활용 (예: 노인요양시설 이용실태와 계속 이용 영향요인 분석(2024) 외 다수 논문)
 - 주요 언론사의 보도를 통한 실태조사 결과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관심 유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진(예: 장기요양 수급자 실태조사 결과, 연합뉴스, (2023.9.24.) 외 다수)

5-3 국내·외 관련 통계 또는 유사 사례에 대한 사전 검토 사항

□ 관련 국내·외 통계 간 사전 검토한 사항

- 장기요양실태조사는 기존 국내의 장기요양 관련 조사와 비교시, 장기요양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정책 개선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 단, 기존 조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 기관 및 요원을 모두 포괄하여 진행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며, 대다수의 조사가 단년도 혹은 특정 주제(이용자 만족도 및 보호자의 부양 부담, 종사자의 근로 실태 등)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을 아우르지 못함
 - 국외 장기요양 관련 조사 역시, 각국의 장기요양보험 정책 또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의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본 조사와 유사함. 단, 국가별로 조사주기가 상이하며, 조사범주 및 내용 역시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나아가 장기요양실태조사와 비교시 국내 노인 관련 주요 실태조사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주요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함. 단, 기존 대다수의 조사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실시목적과 차이를 둠

○ 국내 장기요양관련조사

구분	조사(통계)명	수행기관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주기
전반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이용자 제공기관 종사자	장기요양 인정 및 신청 현황 급여 현황 기관 및 인력 현황 / 재정 현황 등	-매년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이용자 (수급자의 보호자) 일반 국민	<이용자 및 보호자> 서비스 현황 및 욕구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 본인 일부부담금 적정 납부 여부 가족 수발 부담 변화 등 <일반 국민>	-매년 (’09년 실시)

구분	조사(통계)명	수행기관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주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실태조사 (2010)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반적 인식 신청자격 및 서비스 종류, 이용의향	-단년도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이용 형태별 부양 실태조사(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급여이용 형태별 인정자 및 가족부양자 특성 급여 만족도 지지체계 / 추가 재가 급여 종류 부양비용 및 부담, 삶의 질 등	-단년도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자	- 인구사회학적 요인 - 건강상태 - 삶의 질 등	-2020년 구축, 23년이후 매년
	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3년간 급여실적이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499개소('19년 기준(5차년도))	장기요양 기관 현황 종사자 근로형태 및 임금현황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장기요양기관 감가상각내역 장기요양기관 비급여 항목	-매년 (15년실 시)
공급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2014)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약 1,500명)	근로환경(급여명세서 수령 여부, 처우개선비 수령 여부, 정규직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및 업무 만족도, 근로 지속 의향	-단년도

○ 외국의 장기요양관련조사

구분	조사(통계)명	수행기관	조사대상	조사내용	비고
미국	National Health and Ageing Trends Study	NIA, 존스홉킨스 대학	65세 이상 메디케이드 가입자 8,500명	신체기능, 인지기능, 장애 및 사회생활 환경 등	-매년
일본	개호급부비 등 실태조사	후생노동성	도도부현 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에서 관할하는 개호 서비스 기관	개호 급부비 명세서 및 개호 예방, 일상생활 지원 종합사업비 명세서 급부 관리표	-3년 주기
	개호서비스 시설, 사업소 조사	후생노동성	개호 서비스 기관(방문재활, 거택 요양 관리지도, 의료 시설, 방문간호 및 통소재활 제외)	기본사항 상세사항(개호보험 시설 운영 주체, 재소자 수, 거실 등 상황, 종사자 수 등) 이용자 조사(요 개호도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 자립도, 장애 노인의 일상 생활 자립도 등)	-매년
	고령자 개호 실태조사	후생노동성	개호보험시설 60개소 및 입소자 3,519명(2006년)	개호시간 조사(1분 타임 스터디 조사) : 조사대상 노인에 대한 48시간 이용 서비스 조사 기능상태 조사	-1995, 2001, 2006년 실시

○ 국내 노인실태 관련 조사

구분	조사(통계)명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내용
시계열	노인실태조사	만65세 이상 노인	3년 (2008년(법정조사)~)	가구형태, 건강상태,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사회참여
패널	고령화연구패널	만45세 이상 중고령자	2년	활동 등 노인의 삶 전반

구분	조사(통계)명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내용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만50세 이상 중고령자	(2006년~) 2년 (2005년~)	

6. 유형별 주요 이용자 관리

□ 통계의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 유형별 용도

-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주요 이용자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관계 기관 등,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조사 방향 및 내용 수정에서 의견수렴 실시(근거서류로 의견수렴 내용 첨부)
 -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 (전문가 및 관계기관) 학계, 장기요양 및 노인관련 기관 : 전문가 및 관계기관 리스트 근거자료에 포함
- 이용자 유형별 용도
 -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 장기요양정책 방향 및 개선의 기초자료 활용(예, 수급자 대상 서비스 개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연구자 및 학계)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제고, 돌봄 자원 활용, 노인의 삶의 질, 장기요양인력의 역량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연구 등
 - (학계) 국내 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 :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돌봄 관련 연구 논문, 학위논문 등(예: 노인요양시설 이용실태와 계속 이용 영향요인 분석 (2024) 외 다수)

7. 이용자 의견수렴

7-1 이용자 의견수렴 실시 내용과 주요 결과

- 통계의 주요 이용자로 예상되는 장기요양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 자문회의, 장기요양제도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실시
 - (주무부처 및 관련기관) 대면회의 및 서면 의견수렴 총 7회 실시
 - 발주처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기관인 국가데이터처(조사수행기관)과의 논의 및 서면 의견 수렴 진행
 - (장기요양제도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서면의견 수렴 1회(총 19명) 실시

□ 주무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 모집단 리스트 확보 및 표본설계 관련 논의(1차)

- (일시) 2022.2.14. 17:00 / (장소) 영상회의
- (참석인원) 보건복지부 담당자(2인), 국가데이터처 담당자(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1인), 보사연 연구진(2인)
- (회의 내용) 모집단 리스트 확보 및 표본설계 관련 논의
- 회의결과(요약)
 - . 2019년 모집단 추출방식 참고하여 2022년 모집단 리스트 확보(발체시점 2022년 1월말 기준)
 - . 2022년 전체 표본 수 조정(2019년 12,000명 -> 2022년 11,000명)
(사유: 2019년 대비 조사 예산삭감 및 조사단가(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전체 표본 규모 축소)
 - . 이용 급여 종류에 따라 중복 수급자가 있을시 처리방안 논의

○ 전체 조사일정 관련 논의(2차)

- (일시) 2022.2.21. 14:00 / (장소) 보건복지부 별관
- (참석인원) 보건복지부 담당자(3인), 국가데이터처 담당자(2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2인), 보사연 연구진(3인)
- (회의 내용) 전체 조사일정 관련 논의
- 회의결과(요약)
 - . 조사내용 변경 : 시계열 조사항목 유지 및 코로나로 인한 변화 문항 추가시 결과 해석에 유념한 문항 발굴 필요
 - . 표본규모 변경 : 국가데이터처 표본과와의 추가 의견 교환 후, 최종 규모 확정
 - . 조사수행 관련 : 기관의 외부인 통제시 대응 시나리오 마련 필요

○ 조사표(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 의견 수렴(3차)

- (일시) 2022.2.22.~3.4 / (방식) 서면의견 수렴
- (조사대상)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 담당자
- (회의 내용) 조사표(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
- 회의결과(요약)
 - . 조사내용 전반 : 응답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전체 항목 조정 필요
 - . 수급자 및 가족 : 가족의 돌봄 부담 관련 현안 및 개선사항 관련 문항 추가 발굴 등
 - . 장기요양기관 : 안전, 감염관리 현황, 노인학대 예방관련 교육 실시 여부 등에 대한 문항, 종사자 처우 및 복리후생 관련 문항 발굴 등

- . 장기요양요원 : 감염병 관련 교육 및 개선사항 등 항목 발굴, 종사자 처우 및 복리후생 관련 문항 발굴 등

○ 조사표(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논의(4차)

- (일시) 2022.3.16. 14:00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회의실
- (참석인원) 보건복지부 담당자(2인), 보사연 연구진(5인)
- (회의 내용) 조사표 수정(안)에 대한 전반적 논의
- 회의결과(요약)
 - . 수급자 : 이용서비스 목록 중 구강관리 서비스 포함
 - . 장기요양기관 : 현행 법(제도) 지침 확인하여 관련 문항 수정 필요
 - . 장기요양요원 : 조사 활용도 제고하여 문항 조정 & 법정 근로수당 추가 항목 제고

○ 표본규모 및 조사방식, 조사표(안)에 대한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 논의(5차)

- (일시) 2022.3.22. 14:00 / (장소) 통계처 영상회의실
- (참석인원) 보건복지부 담당자(1인), 국가데이터처 담당자(2인), 보사연 연구진(5인)
- (회의 내용) 조사표 수정(안)에 대한 전반적 논의
- 회의결과(요약)
 - . 표본규모 확정안에 대한 공유 요청(국가데이터처-> 보사연)
 - . 설문 수정 관련 논의
- 전 영역에 대한 전반적 문항수 축소, 조사내용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선택지에 구체적 예시 기재, 선택지 범주 축소 검토
- 일부 항목의 경우, 사전조사 후 실효성 고려하여 삭제 필요

○ 사전조사 결과 및 설문수정(안) 논의(6차)

- (일시) 2022.5.4. 14:00 / (장소) 영상회의
- (참석인원) 보건복지부 담당자(2인), 국가데이터처 담당자(2인), 보사연 연구진(5인)
- (회의 내용) 사전조사 결과 및 이를 반영한 설문수정(안) 논의
- 회의결과(요약)
 - . 조사표 전반에 대한 용어 통일 필요 (수급자, 이용자 등)
 - . 우선순위 문항, 모두 선택 문항 등 구분한 기준 명확화
 - . 이외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영역별 수정 문항 논의

○ 사전조사 결과 및 설문수정(안) 논의(7차)

- (일시) 2022.5.10. / (방식) 서면의견 수렴
- (참석인원) 보건복지부 관계자
- (회의 내용) 현행화된 제도 내용 반영한 설문내용으로 수정
- 회의결과(요약)
 - . 장기요양요원의 휴가 사용 문항 수정사항 논의

□ 장기요양제도 학계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 대상 의견수렴

- 조사방향 설정 및 조사표(안) 관련 의견 수렴
 - (일시) 2022.2.21.~2.28 / (방식) 서면의견 수렴
 - (조사대상)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총 19명
 - (조사내용) 전반적인 조사방향 설정 및 조사표 구성에 대한 논의
 - 회의결과(요약)
 - . 조사표 영역 구성에 대한 논의
 - . 정책 변화 동향 등을 반영한 조사표(안)의 수정 보완 내용 논의
- 수급자 및 가족 :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욕구 및 정책 반영사항 등에 대한 추가 발굴 / 수급자, 이용자 등 관련 용어의 통일 제고 / 가족 대상 추가문항 발굴
- 장기요양기관 : 노인 인권 증진 측면에서 기관의 노력, 서비스 질 제고 측면에서 기관의 노력 관련 문항 추가 발굴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요원 전문성 강화 및 승급 체계 관련 욕구 파악 문항 추가 발굴

7-2 이용자 요구사항 및 요구반영 결과

□ 이용자 요구사항 및 요구반영 결과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전문가 등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연구진과 조사 발주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반영 여부 결정
- 이용자 요구사항 및 요구반영 결과

	요구사항	반영여부	반영내용
조사규모 관련 요구사항	표본규모 조정	반영	조사예산 삭감에 따른 표본규모 조정 (축소)
조사문항 관련 요구사항	조사문항 추가, 삭제, 수정에 대한 의견	부분 반영	-조사문항 수정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하여 이용자 조사문항에 대한 의견 반영 결정 -기본방향: 시계열 유지, 정책변화 반영, 응답자 부담완화
	정책 수요에 따른 문항 추가 (가족 돌봄 부담,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 교육 관련, 수급자의 구강관리,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및 승급체계 관련 외 다수)	반영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관련 문항 추가
	조사시점의 특수성에 대한 반영 (코로나 영향 문항 등)	반영	코로나 영향 파악을 위한 문항 추가

	요구사항	반영여부	반영내용
	응답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문항 조정 (예, 수급자 현재 집 거주기간, 재가수급자 요양시설이용여부, 중요한 급여유형, 복지용구 비용금액, 부담정도 등)	반영	19년 조사결과 활용도가 낮거나 응답률이 낮은 항목 삭제
	용어 통일 (수급자, 이용자 등)	반영	조사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용어 관련 통일
	문항 문구 또는 선택지 수정 (예, 수급자 이용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횟수, 필요한서비스 추가 등)	반영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수정, 선택지 추가, 수정 등
	문항 추가 요구(예, 노인인권, 장기요양직종별 필요한 교육 세부 질문, 교육개선에 대한 추가 항목, 시설운영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항목 등)	미반영	조사문항 증가로 인한 응답자 부담 증가, 관계응답자 낮거나, 정책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

II. 통계설계

1. 조사항목

1-1 조사항목의 체계 및 조사목적

□ 장기요양실태조사는 수급자와 가족조사, 장기요양기관조사, 장기요양요원 조사의 3종의 조사로 구성

- 조사 유형별 조사항목의 구성은 2019년 1차 조사 항목의 시계열 유지를 통해 장기요양실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기요양수급자의 생활실태, 급여 이용 현황, 만족도 및 정책적 욕구, 미이용자의 서비스 미이용 이유 및 향후 이용 의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족) 장기요양수급자 가족의 돌봄 실태, 급여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정책적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정원 및 현원, 직원 고용 현황 등), 기관 운영의 어려움 및 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근무 현황, 근무 만족도 및 어려움, 정책 개선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문항 번호	조사항목	조사목적
1	(공통) 배우자 유무	가족자원 파악
2	(공통) 생존 자녀수	가족자원 파악
3	(공통) 지난 1개월 동안 식사 형태	건강관리 파악
4	(공통) 만성질환 유병상태	건강상태 파악
5	(공통) 의사 처방 약 복용 여부 및 1일 약 개수	의료이용 파악
6	(공통)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 수급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한 횟수/주동행자, 의료기관 방문 시 주된 이동방법, 가족이 수급자 대신 의료기관에 방문한 횟수(대리 처방)	의료이용 파악
7	(공통) 입원경험(요양병원 제외)	의료이용 파악
8	(공통) 요양병원 입원 경험	의료이용 파악
9	(공통) 낙상 경험, 낙상으로 인한 치료 여부	건강상태 파악
10	(공통) 욕창 발생 여부	건강상태 파악
11	(공통) 보행 및 이동 능력	건강상태 파악
12	(공통) 독립적인 활동 공간 범위	건강상태 파악
13	(공통) 장기요양 급여이용의 결정 주체	서비스 이용 행태 파악
14	(공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 경로	서비스 이용 행태 파악
15	(재가) 가구형태	(재가급여이용자) 가족자 원파악
16	(재가) 가구주	(재가급여이용자) 가족자 원파악
17	(재가) 가구원수	(재가급여이용자) 가족자 원파악
18	(재가) 가구 내 장기요양 인정자수	(재가급여이용자) 가족자 원파악

문항 번호	조사항목	조사목적
19	(재가) 주택의 종류	(재가급여이용자) 주거환경파악
20	(재가) 주택 점유형태	(재가급여이용자) 주거환경파악
21	(재가) 주거공간의 편의시설 설치여부	(재가급여이용자) 주거환경파악
22	(재가) 급여유형별(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이용 실태 및 이용 의향	(재가급여이용자) 서비스 이용실태파악
23	(재가) 단기보호 이용 실태 및 이용의향	(재가급여이용자) 서비스 이용실태파악
24	(재가) 본인이 납부한 비용 총액	(재가급여이용자) 서비스 이용실태파악
25	(재가) 복지용구 이용여부 및 개수, 만족도, 미이용 이유	(재가급여이용자) 서비스 이용실태파악
26	(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한 결정적인 기준	(재가급여이용자) 서비스 이용실태파악
27	(재가) 처방약 제시간 복용여부	(재가급여이용자) 일상생 활실태파악
28	(재가) 보호자가 없어서 병원원, 약국에 못간 경험 여부 및 횟수	(재가급여이용자) 일상생 활실태파악
29	(재가) 집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	(재가급여이용자) 일상생 활실태파악
30	(재가)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시간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가능 여부, 주 수발자	(재가급여이용자) 일상생 활실태파악
31	(재가) 외출 경험(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제외) 빈도, 외출장소	(재가급여이용자) 일상생 활실태파악
32	(재가) 지역사회 지원 여부	(재가급여이용자) 일상생 활실태파악
33	(재가) 코로나19 관련 경험	(재가급여이용자) 코로나 19실태파악
34	(재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중단 경험 여부	(재가급여이용자) 코로나 19실태파악
35	(재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공백 경험	(재가급여이용자) 코로나 19실태파악
36	(재가) 이용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직원,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서비스내 용, 전반적인 만족도	(재가급여이용자) 서비스 이용실태파악
37	(재가) 학대 경험 여부	(재가급여이용자) 학대실태 파악
38	(재가) 건강이 악화될 경우 거주지 변경 의향	(재가급여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파악
39	(시설) 입소 직전 거주형태	(시설급여이용자) 입소전 생활 파악
40	(시설) 입소 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여부, 종류	(시설급여이용자) 입소전 생활 파악
41	(시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입소시점	(시설급여이용자) 입소전 생활 파악
42	(시설) 현재 생활하는 시설의 침실 규모	(시설급여이용자) 생활실태 파악
43	(시설) 지난 1개월 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한 서비스	(시설급여이용자) 생활실태 파악
44	(시설) 지난 1년 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한 야외활동	(시설급여이용자) 생활실태 파악

문항 번호	조사항목	조사목적
45	(시설) 지난 1개월 동안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총액	(시설급여이용자) 생활실태 파악
46	(시설) 가족이나 지인 등 방문횟수	(시설급여이용자) 생활실태 파악
47	(시설) 가족이나 지인 등 통화횟수	(시설급여이용자) 생활실태 파악
48	(시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시 우선적 고려 사항	(시설급여이용자) 급여실태 파악
49	(시설) 장기요양급여이용 만족도	(시설급여이용자) 급여만족도 파악
50	(시설) 다른 수급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이유	(시설급여이용자) 급여만족도 파악
51	(시설) 노인요양시설 계속 거주 의향	(시설급여이용자) 급여만족도 파악
52	(시설) 학대 경험 여부	(시설급여이용자) 학대실태 파악
53	(미이용자) 현재 거주형태	(미이용자) 거주형태파악
54	(미이용자) 가구주와의 관계 : 일반 가정	(미이용자) 거주형태파악
55	(미이용자) 가구원수	(미이용자) 거주형태파악
56	(미이용자) 가구내 장기요양 인정자 수	(미이용자) 거주형태파악
57	(미이용자) 주택종류	(미이용자) 거주형태파악
58	(미이용자) 주거공간의 수급자 편의시설 설치여부	(미이용자) 거주형태파악
59	(미이용자)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수발 주 담당자	(미이용자) 일상생활실태
60	(미이용자)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이후 이용한적 있는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급여이용 실태파악
61	(미이용자)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	(미이용자) 급여이용 실태파악
62	(미이용자) 향후 장기요양급여 이용의향	(미이용자) 급여이용 실태파악
63	(미이용자) 학대 경험 여부	(미이용자) 학대 실태 파악
64	(가족) 수급자와의 관계	(가족) 수급자 관계파악
65	(가족) 수급자와의 동거여부	(가족) 수급자 관계파악
66	(가족) 치매전담 기관 및 치매 가족지원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가족) 급여 실태 파악
67	(가족)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은 정보 및 교육, 만족도	(가족) 급여 관련 교육 실태 파악
68	(가족) 향후 받고 싶은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정보 또는 교육	(가족) 급여 관련 교육 실태 파악
69	(가족)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납부자	(가족) 급여 관련 실태 파악
70	(가족) 장기요양급여이용으로 인한 가족생활 도움정도	(가족) 급여 관련 실태 파악
71	(가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만족도	(가족) 급여 만족도 파악
72	(가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의 부적절한 행위 목격 또는 인지 경험	(가족) 학대 실태 파악
73	(가족) 코로나19 상황에서 수급자 돌봄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경험한 어려움	(가족) 코로나 실태 파악
74	(재가급여 가족) 수급자 돌봄 제공 횟수 및 부담 정도	(재가가족)급여관련 실태 파악
75	(재가급여 가족) 급여별 이용여부/만족도, 불만족사유	(재가가족)급여관련 실태 파악
76	(재가급여 가족) 수급자 건강 악화시 돌봄 장소	(재가가족)돌봄 관련 실태 파악

문항 번호	조사항목	조사목적
77	(재가급여 가족) 재가거주를 위한 기존 재가급여 개선	(재가가족)급여 욕구 파악
78	(재가급여 가족) 재가거주를 위한 신규 재가급여 개발	(재가가족)급여 욕구 파악
79	(시설급여 가족) 수급자 돌봄 제공 횟수 및 부담 정도	(시설가족) 급여 실태 파악
80	(시설급여 가족)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시설가족) 급여 실태 파악
81	(시설급여 가족) 수급자 건강 호전시 집으로 모실 의향, 집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유	(시설가족) 급여 실태 파악
82	(시설급여 가족) 노인요양시설 시설 및 인력 측면에서의 개선사항	(시설가족) 급여 욕구 파악
83	(시설급여 가족)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시설가족) 급여 욕구 파악
84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가족) 응답자의 성별	(가족) 응답자 특성
85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가족) 응답자의 연령	(가족) 응답자 특성
86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가족) 경제활동 유무, 종사상 지위	(가족) 응답자 특성
87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가족) 월 평균 가구 소득	(가족) 응답자 특성
88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가족) 수급자 돌봄으로 인한 직장 퇴사 경험에 있는 사람 유무	(가족) 응답자 특성

○ 장기요양기관

문항 번호	조사항목	조사목적
1	(공통) 운영주체	(기관) 기관 설립 현황 파악
2	(공통) 건물 점유형태	(기관) 기관 설립 현황 파악
3	(공통) 단독/병설운영 여부, 병설 형태, 병설제공 급여유형	(기관) 기관설립형태 파악
4	(공통) 기관 이용자 현황	(기관) 기관 운영현황(이용자, 직원) 파악
5	(공통) 사회보험 가입 직원 수	(기관) 기관 운영현황(이용자, 직원) 파악
6	(공통)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직종별 해당 기관 평균 근무 기간	(기관) 기관 운영현황(이용자, 직원) 파악
7	(공통) 퇴사 누적건수	(기관) 기관 운영현황(이용자, 직원) 파악
8	(공통) 직원의 복지를 위한 기관의 지원	(기관) 기관 운영현황(이용자, 직원) 파악
9	(공통) 장기요양인력 교육 필요성, 교육이 필요한 직종	(기관) 기관 운영현황(이용자, 직원) 파악
10	(공통) 장기요양요원 양성 및 교육 개선 사항	(기관) 기관 운영현황(이용자, 직원) 파악
11	(공통) 장기요양요원 양성 및 교육 우선적 개선 사항	(기관) 기관 운영현황(이용자, 직원) 파악
12	(공통) 수급자의 안전사고 건수	(기관) 안전사고 관리 파악
13	(공통) 이용자 상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건수, 대응방식	(기관) 안전사고 관리 파악

문항 번호	조사항목	조사목적
14	(공통) 직원의 업무관련 질병이나 상해 건수, 대응방식	(기관) 안전사고 관리 파악
15	(공통) 장기요양기관 운영상의 어려움, 이용자 모집 및 인력채용이 어려운 이유, 인력채용이 어려운 직종	(기관) 운영어려움 파악
16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직원 현황	(방문형)기관 운영현황 (이용자, 직원) 파악
17	(방문형) 방문형 기관(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에서 경험한 COVID-19로 인한 어려움	(방문형)코로나-19경험 파악
18	(방문형)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형 기관의 노력	(방문형) 기관 질향상 노력 파악
1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직원 현황	(시설형)기관 운영현황 파악
2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자체예산 추가 채용 직원수	(시설형)기관 운영현황 파악
2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주간과 야간에 각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수	(시설형)기관 운영현황 파악
2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추가 채용 직종	(시설형)기관 운영현황 파악
2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에서 경험한 COVID-19로 인한 어려움	(시설형)코로나-19경험 파악
2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의 COVID-19 대응 방법	(시설형) 코로나-19경험 파악
2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기관 건물의 건립 용도	(입소형) 기관 물리환경 파악
2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사용 건물의 층수 및 침상 이동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입소형) 기관 물리환경 파악
2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침실개수 및 사용 입소자수	(입소형) 기관 물리환경 파악
2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요양보호사의 교대근무 형태	(입소형) 기관 운영현황 (직원) 파악
2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된 야간근무 운영방식	(입소형) 기관 운영현황 (직원) 파악
3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1일 평균 야간근무 인력 수	(입소형) 기관 운영현황 (직원) 파악
3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요양보호사 외의 정기적인 야간근무 직종 현황	(입소형) 기관 운영현황 (직원) 파악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비공식인력 현황	(입소형) 기관 운영현황 (직원) 파악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의 비급여 항목 현황	(입소형) 급여관리 및 질 관리현황 파악
3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이용자 개인의 자기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관의 노력	(입소형) 급여관리 및 질 관리현황 파악
3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전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입소형) 급여관리 및 질 관리현황 파악
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입소형) 급여관리 및 질 관리현황 파악
37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에서 경험한 COVID-19로 인한 어려움	(주야간) 코로나-19 경험 파악
38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의 비급여 항목 현황	(주야간) 급여관리 및 질 관리현황 파악
39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의 주당 운영 일수	(주야간) 급여관리 및 질 관리현황 파악

문항 번호	조사항목	조사목적
40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의 1일 운영 시간	(주야간) 급여관리 및 질 관리현황 파악
41	(주야간보호) 이용자 개인의 자기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야간보호 기관의 노력	(주야간) 급여관리 및 질 관리현황 파악
42	(주야간보호) 전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야간보호 기관의 노력	(주야간) 급여관리 및 질 관리현황 파악
43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야간보호 기관의 노력	(주야간) 급여관리 및 질 관리현황 파악
44	(공통) 성별	응답자 특성 파악
45	(공통) 연령	응답자 특성 파악
46	(공통) 교육수준	응답자 특성 파악
47	(공통) 보유 자격증	응답자 특성 파악
48	(공통) 현 소속기관 시설장으로 근무 시작 년도	응답자 특성 파악
49	(공통) 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장기요양기관 근무기간	응답자 특성 파악

○ 장기요양요원

문항 번호	조사항목	조사목적
1	(공통) 보유 자격증 종류, 가족인 요양보호사 여부	(요원) 자격 특성 파악
2	(공통) 교육수준	(요원) 일반특성 파악
3	(공통) 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총기간	(요원) 업무 현황 파악
4	(공통)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을 하는 주된 이유	(요원) 업무 현황 파악
5	(공통)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	(요원) 업무 현황 파악
6	(공통) 장기요양기관 근무 시작 시기	(요원) 업무 현황 파악
7	(공통) 직위	(요원) 고용형태 파악
8	(공통) 고용형태 및 주된 근무장소	(요원) 고용형태 파악
9	(공통) 주된 근무 시간 유형, 교대제 형태	(요원) 근무실태 파악
10	(공통) 월별 근무 일수	(요원) 근무실태 파악
11	(공통) 월별 근무시간, 월평균 60시간 미만 근무 이유	(요원) 근무실태 파악
12	(공통) 월별 임금수준	(요원) 임금실태 파악
13	(공통) 법정 근로수당의 수령방식	(요원) 임금실태 파악
14	(공통) 추가수당 수령여부	(요원) 임금실태 파악
15	(공통) 법정휴가제도 사용여부, 사용하지 못한 이유	(요원) 근무실태 파악
16	(공통)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동시 근무 여부	(요원) 근무실태 파악
17	(공통)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월별 총 근무시간, 총 임금	(요원) 근무실태 파악
18	(공통) 희망 근로 시간	(요원) 근로 관련 욕구 파악
19	(공통) 장기요양기관 소속 근로자로서의 사회보험 가입현황	(요원) 근로권리 보장 파악
20	(공통) 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총 기간	(요원) 근무실태 파악
21	(공통)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의 부당한 경험유무 및 횡수	(요원) 근로권리 보장 파악
22	(공통) 피해 발생 시 주된 대응방식, 소속기관의 대응 조치	(요원) 근로권리 보장 파악
23	(공통) 장기요양업무 수행 중 질환, 사고 경험유무	(요원) 근로권리 보장 파악
24	(공통) 질환, 사고발생 시 비용처리방법	(요원) 근로권리 보장 파악
25	(공통) 질환, 사고 발생 시 소속 기관의 대응의 적절성	(요원) 근로권리 보장 파악
26	(공통)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업무 시 주된 어려움	(요원) 코로나-19 경험 파악
27	(공통) 장기요양 업무 관련 교육 참여 현황	(요원) 교육 실태 파악
28	(공통) 장기요양업무 수행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 필요성	(요원) 교육 실태 파악

문항 번호	조사항목	조사목적
29	(공통)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	(요원) 교육 실태 파악
30	(공통) 전반적인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만족도	(요원) 근무 만족도 파악
31	(공통) 이직경험여부, 이직 횟수, 이직 이유	(요원) 이직 실태 파악
32	(공통) 향후 1년 이내 이직의향	(요원) 교육 실태 파악
33	(공통)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요원) 처우개선 욕구 파악
34	(공통)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요원) 처우개선 욕구 파악
35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제공 간호조무사) 방문형 장기요양급여 제공 수급자 현황	(방문형)서비스 실태 파악
36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제공 간호조무사) 수급자와의 외출 경험, 주된 이동수단	(방문형)서비스 실태 파악
37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제공 간호조무사)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경험, 쉬었던 이유	(방문형)근로 실태 파악
38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제공 간호조무사) 갑작스러운 미이용 통지 경험	(방문형)근로 실태 파악
39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주야간 보호기관의 장기요양요원) 실제 휴게시간수준	(시설형) 노동권리 보장 현황 파악
40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주야간 보호기관의 장기요양요원) 휴게공간 여부	(시설형) 노동권리 보장 현황 파악
4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주야간 보호기관의 장기요양요원) 야간근무 여부	(시설형) 노동권리 보장 현황 파악
42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주야간 보호기관의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시간 외 시간 업무 대응 횟수	(시설형) 노동권리 보장 현황 파악
43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주야간 보호기관의 장기요양요원) 타 직원 또는 시설장의 부적절한 돌봄 목격	(시설형) 노동권리 보장 현황 파악

1-2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

□ 주요 개념 및 항목별 정의

주요개념			항목별 정의
조사 대상	장기요양수급자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 즉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서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수급자 중에는 현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를 포함함. 복지용구만 이용하거나, 특별현금급여 이용자는 조사대상에 미포함
	장기요양수급자	이용자 미이용자	수급자로 판정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자
			수급자로 판정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자
	장기요양수급자 가족		수급자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의 일상생활, 건강상태, 장기요양급여 이용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직계가족이나 친인척(배우자(사실혼 포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형제자매 등 친인척), 친구나 이웃은 제외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재가급여 제공기관과 시설급여 제공기관으로 구분함
제도 관련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본조사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포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가급여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주요개념			항목별 정의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9명 이하), 노인요양시설(정원 10명 이상)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장기요양 인정신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가 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신청
	장기요양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하기 위해 하는 신청
	장기요양 인정조사		장기요양인정신청이 접수된 어르신의 심신상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조사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수급자의 경우 재가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공단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부담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비급여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에 해당되어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
	단독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1개만 제공하는 재가급여 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 중 하나의 시설만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병설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재가장기요양기관 '병설'의 의미는 동일 대표자가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또는 동일 필지)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
	안전사고		(시설 안밖에서의)낙상, (외출, 병원이송시의)교통사고, 질식, 흡연성폐렴, 감염성질환(독감, 간염, 결핵, 옴 등), 식중독, 노인학대 신고(보호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등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장기요양기관이 의무가입하는 종사자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일반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족인 요양보호사 제외)
	가족인 요양보호사		수급자와 가족관계이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휴일수당		정해진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일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함.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1조의 4에 의하면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
기타	치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통해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분류하고 있음. KCD-7 기준 주요 치매 분류 코드는

주요개념		항목별 정의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 혈관성 치매, F02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 상세불명의 치매 등으로 나누어짐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단위
	가구원	여행, 출장 등으로 국내·외의 다른 곳에 잠시 출타 중인 사람(3개월 미만), 기도원, 병원에 입원(입소) 중인 사람(3개월 미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1개월 미만의 가출자, 미결수, 선박(원양어선 제외), 항공기, 철도 탑승 승무원,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는 3개월 이상 계속 동거 중인 사람(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
	비가구원	따로 사는 미혼·기혼자녀, 직장이나 학업, 군입대,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떨어져 사는 경우, 3개월 미만으로 방문 또는 기거하는 친·인척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① 건물 출입구 및 접근성 기준 ② 내부 이동 편의성 ③ 욕실 및 화장실 편의시설 ④ 주방 및 생활공간 개선 ⑤ 침실 및 거실 설비 ⑥ 조명 및 전기시설 ⑦ 외부 환경 및 기타 안전시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업 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반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직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함(대분류 1~9까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4단계 구조로 직업 분류. 이 중 대분류는 관리자(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사무종사자(3), 서비스 종사자(4), 판매 종사자(5), 농림어업 및 숙련 종사자(6),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8), 단순노무종사자(9)로 분류됨

1-3. 주요 용어의 정의나 개념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기준 비교

☐ 주요 개념, 용어 등에 대한 국제기준 또는 국내기준

○ 국내기준

- 국가데이터처의 가구 및 가구원 개념 활용
 - 일반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뜻함
 - 가구원이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가구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가족이란 용어와는 개념상 구분됨
-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세부항목
- 국가데이터처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치매진단
- 국가데이터처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의한 직업분류

2. 적용 분류체계

2-1 통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 개요 및 내용

☐ 통계의 수집과 집계에 적용하고 있는 분류체계

- 직업분류체계(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관리자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1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및공공단체임원 112 기업고위임원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121 행정및경영지원관리자 122 마케팅및광고·홍보관리자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131 연구·교육및법률관련관리자 132 보험및금융관리자 133 보건및사회복지관련관리자 134 문화·예술관련관리자 135 정보통신관련관리자 139 기타전문서비스관리자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41 건설·전기및생산관련관리자 149 기타건설·전기및생산관련관리자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151 판매및운송관리자 152 고객서비스관리자 153 환경·청소및경비관련관리자 159 기타판매및고객서비스관리자
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1 생명및자연과학관련전문가 212 인문및사회과학전문가 213 생명및자연과학관련시험원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1 컴퓨터하드웨어및통신공학전문가 222 컴퓨터시스템및소프트웨어전문가 223 데이터및네트워크관련전문가 224 정보시스템및웹운영자 225 통신및방송송출장비기사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1 건축·토목공학기술자및시험원 232 화학공학기술자및시험원 233 금속·재료공학기술자및시험원 234 전기·전자공학기술자및시험원 235 기계·로봇공학기술자및시험원 236 소방·방재기술자및안전관리원 237 환경공학·가스·에너지기술자및시험원 238 항공기·선박기관사및관제사 239 기타공학전문가및관련종사자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1 의료진료전문가 242 약사및한약사 243 간호사 244 영양사 245 치료·재활사및의료기사 246 보건의료관련종사자 247 사회복지관련종사자 248 종교관련종사자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1 대학교수및강사 252 학교교사 253 유치원교사 254 문리·기술및예능강사 259 기타교육전문가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61 법률전문가 262 행정전문가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71 인사및경영전문가 272 금융및보험전문가 273 상품기획·홍보및조사전문가 274 감정·기술영업및중개관련종사자
	28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1 작가및언론관련전문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82 학예사·사서및기록물관리사 283 연극·영화및영상전문가 284 시각및공연예술가 285 디자이너 286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관련전문가 287 식문화관련전문가 288 문화·예술관련기획자및매니저
3 사무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11 행정사무원 312 경영관련사무원 313 회계및경리사무원 314 비서및사무보조원
	32 금융 사무직	320 금융사무종사자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30 법률및감사사무종사자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391 통계관련사무원 392 여행·안내및접수사무원 399 고객상담및기타사무원
4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 직	411 경찰·소방및교도관련종사자 412 경호및보안관련종사자
	4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직	421 돌봄및보건서비스종사자 422 미용관련서비스종사자 423 혼례및장례종사자 429 기타돌봄·보건및개인생활서비스종사자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31 운송서비스종사자 432 여가서비스종사자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41 조리사 442 식음료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51 영업직	510 영업종사자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21 매장판매종사자 522 상품대여종사자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531 통신관련판매직 532 방문및노점판매관련직
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611 작물재배종사자 612 원예및조경종사자 613 축산및사육관련종사자
	62 임업 숙련직	620 임업관련종사자
	63 어업 숙련직	630 어업관련종사자
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7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710 식품가공관련기능종사자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1 섬유및가죽관련기능종사자 722 의복제조관련기능종사자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0 목재·가구·악기및간판관련기능종사자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741 금형·주조및단조원 742 제관원및판금원 743 용접원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51 자동차정비원 752 운송장비정비원 753 기계장비설치및정비원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61 전기·전자기기설치및수리원 762 전기공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771 정보통신기기설치및수리원 772 방송·통신장비관련설치및수리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1 건설구조관련기능종사자 782 건설관련기능종사자 783 건축마감관련기능종사자 784 채굴및토목관련기능종사자
	79 기타 기능 관련직	791 공예및귀금속세공원 792 배관공 799 기타기능관련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및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811 식품가공관련기계조작원 812 음료제조관련기계조작원 819 기타식품가공관련기계조작원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821 섬유제조및가공기계조작원 822 직물·신발관련기계조작원및조립원 823 세탁관련기계조작원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831 석유및화학물가공장치조작원 832 화학·고무및플라스틱제품생산기조작원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 직	841 주조및금속가공관련기계조작원 842 도장및도금기조작원 843 비금속제품생산기조작원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851 금속 공작 기계 조작원 852 냉난방관련설비조작원 853 자동조립라인및산업용로봇조작원 854 운송차량및기계관련조립원 855 금속기계부품조립원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861 발전및배전장치조작원 862 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 863 전기·전자부품및제품제조장치조작원 864 전기·전자부품및제품조립원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71 철도및전동차기관사 872 철도운송관련종사자 873 자동차운전원 874 물품이동장비조작원 875 건설및채굴기계운전원 876 선박승무원및관련종사자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881 상하수도처리장치조작원 882 재활용처리및소각로조작원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91 목재및종이관련기계조작원 892 인쇄및사진현상관련기계조작원 899 기타기계조작원
9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0 건설및광업단순종사자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1 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 922 배달원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30 제조관련단순종사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41 청소원및환경미화원 942 건물관리원및검표원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 무직	951 가사및육아도우미 952 음식관련단순종사자 953 판매관련단순종사자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91 농림·어업관련단순종사자 992 계기·자판기및주차관리종사자 999 기타서비스관련단순종사자
A 군인	A0 군인	A01 장교
		A02 부사관
		A09 기타군인

2-2 국내 또는 국제기준의 표준분류체계 사용 여부 또는 미사용 사유

☐ (국내) 국가데이터처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의한 직업분류 활용

3. 조사표 설계 및 구성

3-1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나 방법

☐ 조사항목의 선정 절차

○ 조사표 선정 및 설계의 기본방향

- (기본원칙)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장기요양인정, 수급자의 규모, 급여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방향성) 조사항목의 시계열 유지를 통해 장기요양제도 운영 실태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정책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대표성, 시의성 있는 조사로 운영

- (조사항목의 주요 활용 목적)

① (정책개발 기초자료 제공) 법정 조사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제도 보완 및 자원배분 우선순위 설정의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항목 개발

② (학술연구 지원) 노인복지학 및 노년학 등 학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항목 개발

- (방법) 국내외의 노인관련 유사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조사자료의 활용 정도의 점검 및 정책담당자의 의견 청취, 전문가회의 등을 실시

○ 기존 조사항목 연구 및 자료 수집

- 국내외의 장기요양실태조사 관련 유사 조사내용 검토

- 관계기관 보도자료, 정책자료, 신문기사, 연구발표자료 등에서 조사항목 관련사항을 수집, 분석

○ 전문가 회의 및 정책담당자 의견 청취

-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통해 조사내용의 신뢰도와 조사수행의 효율성 제고

- 분야별로 검토된 자료는 주무부처 및 연구기관 간 수시 협의를 통해 보완

○ 사전조사

- (조사기간) 2022.4.20.~2022.4.26.

- (조사대상) 지역 특성(도시 및 농어촌)과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

· 수급자/가족 : 시설급여, 재가급여 이용자 및 그 가족, 미이용자

· 장기요양기관 :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대상(30명 이상/미만의 시설 구분하여 실시)

- 장기요양요원 :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직종별 장기요양요원 대상
- (조사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대상자 추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국가데이터처 담당자가 실시
- 수급자의 신체적 및 인지 기능을 고려하여 대리응답, 대리응답의 우선순위 선정
- 요원 조사의 경우, 시설장과 분리된 공간에서 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
- 사전조사 개요

	구분	계(명)
수급자(가족)	재가급여 이용자(가족)	3(3)
	시설급여 이용자(가족)	4(4)
	미이용자	1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1
	방문간호	1
	주야간보호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포함)	2
	요양보호사	5
장기요양요원	사회복지사	3
	간호(조무)사	3
	물리(작업)치료사	1
		26(7)

○ 조사항목 확정

- 사전조사를 거쳐 최종 항목(안)을 선정
- 보건복지부와 연구기관 간 최종 협의를 통하여 조사항목 확정
- 조사항목간 논리성 및 배타성 제고를 위한 통계개발원 검토

□ 조사항목 변경절차

- 2019년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수정, 변경, 삭제, 추가를 필요로 하는 조사항목에 대해 전문가 조사, 관련부처(보건복지부), 관련 기관(건강보험공단) 등의 의견수렴 실시
- 또한 국내외의 노인관련 유사 조사내용, 정책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조사자료의 활용 정도의 점검 및 정책담당자의 의견 청취, 전문가회의 등을 실시
-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연구진에서 1차 변경(안) 마련 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실태조사 담당과와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

3-2 조사표 구성 관련 내·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

□ 의견수렴 과정

- 조사의 실효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주처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다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 회의 다회 수행함.
-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 회의와 의견 수렴(7회), 장기요양제도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서면 의견수렴(1회),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 회의(4회) 등의 과정을 통해 진행함.

- 주요 의견 수렴 과정

구분	일시	회의 안건	참석범위
1	22.2.14.	- 조사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	보건복지부, 국가데이터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사연
2	22.2.21.	- 조사일정 및 조사항목 구성 관련 논의 : 시계열 조사 항목 유지 및 코로나로 인한 변화 문항 추가시 결과 해석에 유념	보건복지부, 국가데이터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사연
3	22.2.21~2.28.	- 조사방향 설정 및 조사표 구성 관련 서면의견 수렴 : 조사내용 전반 구성(영역별 구성) 적정성, : 제도 변화를 반영한 문항 추가/삭제/조정 등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서면의견 수렴)
4	22.2.22~3.4	- 조사방향 설정 및 조사표 구성 관련 서면의견 수렴 : 조사내용 전반 구성(영역별 구성) 적정성, : 제도 변화를 반영한 문항 추가/삭제/조정 등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면의견 수렴)
5	22.3.16	- 조사표 수정(안)에 대한 논의 : 현행 법(제도) 지침 확인한 문항 수정 검토 (기관, 요원 영역)	보건복지부, 보사연
6	22.3.17~3.24.	- 조사방향 설정 및 조사표 구성 관련 서면의견 수렴 : 조사내용 전반 구성(영역별 구성) 적정성, : 제도 변화를 반영한 문항 추가/삭제/조정 등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면의견 수렴)
7	3.22	- 조사응답 부담을 고려한 조사항목 수 조정 - 조사내용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선택지에 구체적 예시 기재 & 선택지 범주 축소	보건복지부, 국가데이터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사연
8	5.4	-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한 설문수정(안) 논의 : 조사표 전반의 용어 통일 제고(수급자, 이용자 등) :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한 영역별 수정 문항 논의	보건복지부, 국가데이터처, 보사연
9	5.10	- 현행 제도화된 내용으로 일부 수정요청 사항 수렴	보건복지부(서면의견 수렴)
10	5.13~5.20	- 조사표 전반의 논리적 구성 및 용어 등 제고	통계개발원, 국가데이터처

주: 연구진 회의 및 주무부처, 관계기관과의 유선 논의 등은 미기재

3-3 조사표 구성 관련 내·외부 전문가 회의 결과 반영 여부

□ 의견수렴을 통한 조사표 주요 반영 사항

○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사내용 구성 변경

- 문항별 조사참여자가 상이한 경우에 대해, 응답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내용 구성 변경

(예시)

이용여부	총 이용횟수	총 이용일수	인지 여부	향후 이용의향
① 예	일	일		
② 아니요			① 예 ② 아니요	① 예 ② 아니요

○ 응답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설문내용 구체화 및 추가 설명 기재

-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사의 주요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쓰거나 관련 내용을 구체화(예시 등을 포함)하여 문항 내 명시

(예시)

항목	① 예	② 아니요
① 치매전담실 운영		
② 신체 및 인지 기능회복을 위한 디지털 재활기기 활용 (재활운동기구, 돌봄로봇, 재활로봇 등)		
③ 송영(기관이용을 위한 이동)시 노인 실종 방지를 시스템 마련 (이용자 승하차 정보 문자제공, 보호자에게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전송)		
④ 지역 내 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이용자의 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 건강관리		
⑤ 건강상태에 따른 식사 제공(당뇨식, 저염식, 연하곤란식 등)		

구분	①가입	②미가입	③ 모른다	④ 적용대상 아님
1) 국민연금				
* 만 60세 미만, 월 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임(단,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월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도 적용대상에 포함) * 만 60세~65세 미만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없으므로 '④적용대상 아님'으로 표시 * 장기요양기관 외 다른 사업장 또는 부양가족으로 가입된 경우는 '②미가입'으로 표시				

○ 정책적 욕구 파악을 위한 문항 추가 발굴

-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사의 주요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쓰거나 관련 내용을 구체화(예시 등을 포함)하여 문항 내 명시

77 수급자가 집에서 계속 생활하려면 어떤 장기요양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치매전담기관 확대*

② 1일 다회 서비스*

③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④ 수급자를 잠시 돌봐줄 수 있는 단기보호 확대(가족 휴가, 이사, 입원 등 상황 발생 시)

⑤ 기존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이용 시간/이용 일수 확대

⑥ 기타()

* ① 치매전담기관 확대: 치매전담 주야간보호기관 등 확대
② 1일 다회 서비스: 1일 2회 이상 방문(예: 1일 2시간+1시간, 1일 1시간+1시간+1시간 등)

78 수급자가 집에서 계속 생활하려면 어떤 장기요양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하십니까?

① 식사 및 영양 관리 서비스

② 병원 방문이나 외출에 필요한 차량 지원

③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주택 수리 지원

④ 야간 순회 서비스*

⑤ 방문형 의료 서비스(재활, 구강 관리, 의료 서비스 등)

⑥ 기타()

* ④ 야간 순회 서비스: 야간 시간 대 돌봄이 필요할 경우, 방문하여 위생 관리(배뇨 도움, 배설 도움 등),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한 예방 서비스 제공

○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가치중립적 용어 사용

- 응답자의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가치중립적 용어 활용 (예시)

기존	변경	반영내용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2022. 6. 30.) 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가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2022. 6. 30.) 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부적절한’ 삭제

3-4 조사표에 수록된 사항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문항 번호	조사항목
1	(공통) 배우자 유무
2	(공통) 생존 자녀수
3	(공통) 지난 1개월 동안 식사 형태
4	(공통) 만성질환 유병상태
5	(공통) 의사 처방 약 복용 여부 및 1일 약 개수
6	(공통)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 수급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한 횟수/주동행자, 의료기관 방문 시 주된 이동방법, 가족이 수급자 대신 의료기관에 방문한 횟수(대리 처방)
7	(공통) 입원경험(요양병원 제외)
8	(공통) 요양병원 입원 경험
9	(공통) 낙상 경험, 낙상으로 인한 치료 여부
10	(공통) 욕창 발생 여부
11	(공통) 보행 및 이동 능력
12	(공통) 독립적인 활동 공간 범위
13	(공통) 장기요양 급여이용의 결정 주체
14	(공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 경로
15	(재가) 가구형태
16	(재가) 가구주
17	(재가) 가구원수
18	(재가) 가구 내 장기요양 인정자수
19	(재가) 주택의 종류
20	(재가) 주택 점유형태
21	(재가) 주거공간의 편의시설 설치여부
22	(재가) 급여유형별(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이용 실태 및 이용 의향
23	(재가) 단기보호 이용 실태 및 이용의향
24	(재가) 본인이 납부한 비용 총액
25	(재가) 복지용구 이용여부 및 개수, 만족도, 미이용 이유
26	(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한 결정적인 기준
27	(재가) 처방약 제시간 복용여부
28	(재가) 보호자가 없어서 병의원, 약국에 못간 경험 여부 및 횟수
29	(재가) 집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
30	(재가)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시간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가능 여부, 주수발자
31	(재가) 외출 경험(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제외) 빈도, 외출장소
32	(재가) 지역사회 지원 여부
33	(재가) 코로나19 관련 경험
34	(재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중단 경험 여부
35	(재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공백 경험
36	(재가) 이용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직원,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서비스내용, 전반적인 만족도
37	(재가) 학대 경험 여부

문항 번호	조사항목
38	(재가) 건강이 악화될 경우 거주지 변경 의향
39	(시설) 입소 직전 거주형태
40	(시설) 입소 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여부, 종류
41	(시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입소시점
42	(시설) 현재 생활하는 시설의 침실 규모
43	(시설) 지난 1개월 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한 서비스
44	(시설) 지난 1년 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한 야외활동
45	(시설) 지난 1개월 동안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총액
46	(시설) 가족이나 지인 등 방문횟수
47	(시설) 가족이나 지인 등 통화횟수
48	(시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시 우선적 고려 사항
49	(시설) 장기요양급여이용 만족도
50	(시설) 다른 수급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이유
51	(시설) 노인요양시설 계속 거주 의향
52	(시설) 학대 경험 여부
53	(미이용자) 현재 거주형태
54	(미이용자) 가구주와의 관계 : 일반 가정
55	(미이용자) 가구원수
56	(미이용자) 가구내 장기요양 인정자 수
57	(미이용자) 주택종류
58	(미이용자) 주거공간의 수급자 편의시설 설치여부
59	(미이용자)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수발 주 담당자
60	(미이용자)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이후 이용한적 있는 장기요양급여
61	(미이용자)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
62	(미이용자) 향후 장기요양급여 이용의향
63	(미이용자) 학대 경험 여부
64	(가족) 수급자와의 관계
65	(가족) 수급자와의 동거여부
66	(가족) 치매전담 기관 및 치매 가족지원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67	(가족)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은 정보 및 교육, 만족도
68	(가족) 향후 받고 싶은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정보 또는 교육
69	(가족)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납부자
70	(가족) 장기요양급여이용으로 인한 가족생활 도움정도
71	(가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만족도
72	(가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의 부적절한 행위 목격 또는 인지 경험
73	(가족) 코로나19 상황에서 수급자 돌봄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경험한 어려움
74	(재가급여 가족) 수급자 돌봄 제공 횟수 및 부담 정도
75	(재가급여 가족) 급여별 이용여부/만족도, 불만족사유
76	(재가급여 가족) 수급자 건강 악화시 돌봄 장소
77	(재가급여 가족) 재가거주를 위한 기존 재가급여 개선
78	(재가급여 가족) 재가거주를 위한 신규 재가급여 개발
79	(시설급여 가족) 수급자 돌봄 제공 횟수 및 부담 정도
80	(시설급여 가족)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81	(시설급여 가족) 수급자 건강 호전시 집으로 모실 의향, 집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유
82	(시설급여 가족) 노인요양시설 시설 및 인력 측면에서의 개선사항
83	(시설급여 가족)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84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가족) 응답자의 성별
85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가족) 응답자의 연령
86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가족) 경제활동 유무, 종사상 지위
87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가족) 월 평균 가구 소득
88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가족) 수급자 돌봄으로 인한 직장 퇴사 경험이 있는 사람 유무

○ 장기요양기관

문항 번호	조사항목
1	(공통) 운영주체
2	(공통) 건물 점유형태
3	(공통) 단독/병설운영 여부, 병설 형태, 병설제공 급여유형
4	(공통) 기관 이용자 현황
5	(공통) 사회보험 가입 직원 수
6	(공통)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직종별 해당 기관 평균 근무 기간
7	(공통) 퇴사 누적건수
8	(공통) 직원의 복지를 위한 기관의 지원
9	(공통) 장기요양인력 교육 필요성, 교육이 필요한 직종
10	(공통) 장기요양요원 양성 및 교육 개선 사항
11	(공통) 장기요양요원 양성 및 교육 우선적 개선 사항
12	(공통) 수급자의 안전사고 건수
13	(공통) 이용자 상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건수, 대응방식
14	(공통) 직원의 업무관련 질병이나 상해 건수, 대응방식
15	(공통) 장기요양기관 운영상의 어려움, 이용자 모집 및 인력채용이 어려운 이유, 인력채용이 어려운 직종
16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직원 현황
17	(방문형) 방문형 기관(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에서 경험한 COVID-19로 인한 어려움
18	(방문형)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형 기관의 노력
1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직원 현황
2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자체예산 추가 채용 직원수
2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주간과 야간에 각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수
2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추가 채용 직종
2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에서 경험한 COVID-19로 인한 어려움
2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의 COVID-19 대응 방법
2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기관 건물의 건립 용도
2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사용 건물의 층수 및 침상이동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2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침실개수 및 사용 입소자수
2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요양보호사의 교대근무 형태
2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된 야간근무 운영방식
3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1일 평균 야간근무 인력 수
3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요양보호사 외의 정기적인 야간근무 직종 현황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비공식인력 현황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의 비급여 항목 현황
3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이용자 개인의 자기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관의 노력
3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전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37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에서 경험한 COVID-19로 인한 어려움
38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의 비급여 항목 현황
39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의 주당 운영 일수
40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의 1일 운영 시간

문항 번호	조사항목
41	(주야간보호) 이용자 개인의 자기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야간보호 기관의 노력
42	(주야간보호) 전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야간보호 기관의 노력
43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야간보호 기관의 노력
44	(공통) 성별
45	(공통) 연령
46	(공통) 교육수준
47	(공통) 보유 자격증
48	(공통) 현 소속기관 시설장으로 근무 시작 년도
49	(공통) 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장기요양기관 근무기간

○ 장기요양요원

문항 번호	조사항목
1	(공통) 보유 자격증 종류, 가족인 요양보호사 여부
2	(공통) 교육수준
3	(공통) 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총기간
4	(공통)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을 하는 주된 이유
5	(공통)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
6	(공통) 장기요양기관 근무 시작 시기
7	(공통) 직위
8	(공통) 고용형태 및 주된 근무장소
9	(공통) 주된 근무 시간 유형, 교대제 형태
10	(공통) 월별 근무 일수
11	(공통) 월별 근무시간, 월평균 60시간 미만 근무 이유
12	(공통) 월별 임금수준
13	(공통) 법정 근로수당의 수령방식
14	(공통) 추가수당 수령여부
15	(공통) 법정휴가제도 사용여부, 사용하지 못한 이유
16	(공통)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동시 근무 여부
17	(공통)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월별 총 근무시간, 총 임금
18	(공통) 희망 근로 시간
19	(공통) 장기요양기관 소속 근로자로서의 사회보험 가입현황
20	(공통) 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총 기간
21	(공통)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의 부당한 경험유무 및 횡수
22	(공통) 피해 발생 시 주된 대응방식, 소속기관의 대응 조치
23	(공통) 장기요양업무 수행 중 질환, 사고 경험유무
24	(공통) 질환, 사고발생 시 비용처리방법
25	(공통) 질환, 사고 발생 시 소속 기관의 대응의 적절성
26	(공통)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업무 시 주된 어려움
27	(공통) 장기요양 업무 관련 교육 참여 현황
28	(공통) 장기요양업무 수행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 필요성
29	(공통)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
30	(공통) 전반적인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만족도
31	(공통) 이직경험여부, 이직 횡수, 이직 이유
32	(공통) 향후 1년 이내 이직의향

문항 번호	조사항목
33	(공통)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34	(공통)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35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제공 간호조무사) 방문형 장기요양급여 제공 수급자 현황
36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제공 간호조무사) 수급자와의 외출 경험, 주된 이동수단
37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제공 간호조무사)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경험, 쉬었던 이유
38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제공 간호조무사) 갑작스러운 미이용 통지 경험
39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주야간 보호기관의 장기요양요원) 실제 휴게시간수준
40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주야간 보호기관의 장기요양요원) 휴게공간 여부
4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주야간 보호기관의 장기요양요원) 야간근무 여부
42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주야간 보호기관의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시간 외 시간 업무 대응 횟수
43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주야간 보호기관의 장기요양요원) 타 직원 또는 시설 장의 부적절한 돌봄 목격

3-5 조사방법이 다양한 경우 조사방법별 특성을 고려한 조사표 설계 여부 및 검토 요소

- ☐ 다양한 조사 방식을 고려하여,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항 수정 및 선택지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의 검토 진행
-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항 구성 및 응답 흐름을 조정함
 - 문항 난이도를 조절하여 응답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응답의 명확성을 높임
 - 응답자의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방법(인터넷조사, 전화조사 등)을 적용함으로 인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문구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히 설계
 -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조사문구를 차이를 두어 설계할 경우 응답의 차이를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고려함

3-6 응답 유형별 응답 소요시간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구분		합계	20분 이내	21~30분	31~40분	41분 이상
조사소요 시간	재가	2,369	587	786	791	205
	비율(%)	100.0	24.8	33.2	33.4	8.7
	시설	1,573	482	533	461	97
	비율(%)	100.0	30.6	33.9	29.3	6.2
	미이용자	481	201	147	105	28
	비율(%)	100.0	41.8	30.6	21.8	5.8

☐ 장기요양기관

구분		합계	20분 이내	21~30분	31~40분	41분 이상
조사소요 시간	기관	1,953	412	772	627	142
	비율(%)	100.0	21.1	39.5	32.1	7.3

☐ 장기요양요원

구분		합계	20분 이내	21~30분	31~40분	41분 이상
조사소요 시간	요원(명)	4,302	1,252	1,860	1,026	164
	비율(%)	100.0	29.1	43.2	23.8	3.8

4. 조사표 변경 이력 관리

4-1 조사표 변경 이력 관리

☐ 변경사항에 대한 전후대조표, 변경 이유, 변경 승인일자를 관리하고 있음

* 나라통계>통계정책관리시스템>정책지원서비스>승인통계검색>조정내역 참조

☐ 통계정책관리 시스템 내 전산 관리

4-2 조사표 변경 이유 기록 · 관리

☐ '19년 8월 30일

- 조사내용 변경에 따른 결과표 수정
- 전주기 결과와 시계열 비교를 위 해 기존 결과표 최대 유지
- 기존 조사항목과 신규 조사항목 중 공표 추가 구성

☐ '20년 3월 16일

- 전체 조사 예산을 감안하여 19년도 대비 조사대상 축소 및 조사대상 규모 변경
 - 조사자료의 정책 활용도 측면 고려시, 수급자(미이용자) 규모 축소
 - 조사대상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규모 확대

☐ '22년 7월 1일

- 관련 부처 및 기관, 해당 영역 전문가 의견 수렴
- 활용도가 낮은 조사항목 삭제 및 정책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 추가
- 제도 변화 및 제도 개선을 고려한 문항 추가

4-3 변경승인일자 기록 · 관리

- '19년 8월 30일
- '20년 3월 16일
- '22년 7월 1일

5.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5-1 목표모집단의 정의

- 수급자
 -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
 - 급여유형별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요원
 - 급여유형 및 직종별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 한정

5-2 조사모집단의 정의

- 수급자
 - 2022년 1월말 기준 인정유효기간이 유효한 자로 이용자와 미이용자는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급여청구 이력유무로 구분함(주소 불분명 및 도서지역 제외)
- 장기요양기관
 - 2022년 1월에 장기요양 급여청구 실적이 있는 장기요양기관(통합재가급여 및 도서지역 제외)
- 장기요양요원
 - 2022년 1월 기준으로 급여유형 및 직종별 장기요양 급여청구 실적이 있는 장기요양요원(일부 직종 및 도서지역 제외)

6. 조사모집단(전수조사) 또는 표본추출틀(표본조사)

6-1 조사모집단 또는 표본추출틀로 사용되는 자료의 출처

☐ 표본추출틀로 사용되는 자료의 출처

- 수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 수급자 목록 및 급여청구 실적(2022년 1월 기준) / 이용자 및 미이용자는 급여청구 이력유무로 구분
 - 추출단위 : 급여유형별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청구 실적(2022년 1월 기준)
 - 추출단위 : 급여유형별 기관
- 장기요양요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청구 실적(2022년 1월 기준)

6-2 조사모집단 또는 표본추출틀로 선정한 이유

☐ 표본추출틀로 선정한 이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수급자 목록 및 급여청구 실적은 실질적으로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정보를 포함
 - 수급자의 성별, 연령대, 지역, 이용급여, 인정등급 등의 정보를 포함
 -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유형, 지역, 제공급여 유형, 시설 규모(정원) 등의 정보를 포함
 - 장기요양요원의 성별, 소속기관 정보, 지역, 직종 등의 정보를 포함

6-3 조사모집단 또는 표본추출틀의 구축(갱신) 주기, 방법 및 절차, 결과 등

☐ 표본추출틀 갱신의 절차, 방법, 내용, 주기, 일정, 결과 등

- 주관/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용: 장기요양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등

○ 주기: 매월

- 3년마다 조사시점에 해당되는 표본추출틀을 갱신하고, 그 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 의뢰하고, 의뢰받은 공단은 표본추출틀 생성 가이드에 따라 구축

6-4 분류별, 지역별 기타 하위모집단별 추출단위 분포, 관련 통계량, 상관관계 등 기록 및 관리

○ (수급자)

1) 표본추출틀 분포

(단위: 명)

특성		실인원	급여유형별 수급자										미이용*
			합계	재가					시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간 보호	단 기 보 호	공동 생활 가정	30명 미만	30~ 49명	50명 이상	
전체		932,563	1,022,455	415,635	71,724	10,750	115,475	592	13,549	45,134	32,702	82,289	234,605
성별	남성	257,159	282,460	117,081	22,034	3,451	29,271	117	2,163	9,686	7,438	18,265	72,954
	여성	675,404	739,995	298,554	49,690	7,299	86,204	475	11,386	35,448	25,264	64,024	161,651
연령 층	65세미만	26,501	28,422	11,811	1,276	342	1,962	11	387	1,472	1,033	2,150	7,978
	65~69세	40,497	43,750	21,013	2,263	578	3,121	18	423	1,465	1,067	2,429	11,373
	70~74세	72,488	78,675	36,660	4,603	1,021	6,939	28	681	2,419	1,790	4,389	20,145
	75~79세	130,864	142,211	60,550	8,973	1,697	15,955	64	1,203	4,439	3,335	8,897	37,098
	80~84세	240,849	263,790	106,095	18,971	2,708	33,325	131	2,862	9,937	7,373	18,646	63,742
	85~89세	249,659	275,661	109,083	21,052	2,547	34,696	151	3,907	12,857	9,286	23,542	58,540
	90세이상	171,705	189,946	70,423	14,586	1,857	19,477	189	4,086	12,545	8,818	22,236	35,729
	장기 요양 인정 등급	1등급	45,494	49,044	11,454	2,115	1,649	319	22	1,356	3,794	2,935	7,759
2등급	88,566	95,167	27,057	4,831	1,512	2,404	77	2,932	9,122	6,509	17,209	23,514	
3등급	255,076	280,847	114,074	18,716	2,938	23,636	233	4,851	16,745	12,247	30,773	56,634	
4등급	416,322	462,863	225,585	38,822	4,086	53,413	209	4,127	14,558	10,347	25,019	86,697	
5등급	104,943	112,372	37,460	7,239	565	31,450	51	282	915	661	1,528	32,221	
인지지원	22,162	22,162	5	1	0	4,253	0	1	0	3	1	17,898	
지역 **	대도시	325,579	349,501	158,242	13,284	4,466	39,021	391	4,468	9,805	7,858	23,187	88,779
	중소도시	310,180	333,787	127,929	14,490	3,628	45,453	124	4,366	16,274	13,248	27,924	80,351
	농어촌	296,804	339,167	129,464	43,950	2,656	31,001	77	4,715	19,055	11,596	31,178	65,475
시도	서울	118,305	123,955	60,895	2,221	1,388	11,850	357	2,219	2,064	1,823	7,752	33,386
	부산	61,291	64,493	31,241	1,516	513	6,528	1	155	606	848	3,329	19,756
	대구	43,054	45,515	18,100	0	182	6,836	22	1,025	1,415	969	3,951	11,299
	인천	51,622	57,355	22,986	3,875	1,263	5,248	12	777	4,239	2,944	5,316	10,695
	광주	25,855	30,216	12,973	2,893	532	3,952	0	111	987	579	1,150	7,039
	대전	25,719	27,850	11,420	874	530	3,807	0	335	838	987	3,041	6,018
	울산	14,190	15,567	6,175	975	237	2,279	0	111	248	372	1,088	4,082
	세종	3,375	3,670	1,464	132	69	667	1	25	142	100	190	880
	경기	211,279	221,859	82,180	4,554	2,067	24,606	133	4,206	15,352	12,442	25,112	51,207
	강원	35,785	38,816	15,282	2,243	571	3,680	35	845	2,871	1,576	4,051	7,662
	충북	35,907	38,595	13,944	2,364	237	5,537	2	741	2,679	1,198	4,042	7,851
	충남	52,088	58,895	23,334	6,510	510	6,525	5	702	2,806	1,620	4,366	12,517

전북	52,068	62,873	22,374	10,272	1,176	8,611	0	453	1,956	1,569	2,845	13,617
전남	50,951	60,342	23,874	9,360	595	6,062	5	545	3,089	1,619	2,703	12,490
경북	69,861	78,697	32,027	9,018	343	9,673	18	875	3,528	2,503	5,049	15,663
경남	71,213	82,602	34,587	11,947	375	8,333	1	377	1,931	1,346	5,752	17,953
제주	10,000	11,155	2,779	1,254	162	1,281	0	47	383	207	2,552	2,490

* 미이용: 단순 미이용, 요양병원 입원, 장기요양기관 외 시설 입소 등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미이용은 실거주지 주소, 그 외 기관주소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동부, 중소도시: 세종 및 그 외 도시의 동부, 농어촌: 읍면부

2) 층화 및 분류지표

○ 층화: 급여유형(총 10개 층, 미이용층 포함)

○ 분류지표

-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주요 문항을 이용하여 변수를 선정하고 분류지표로 활용
- 수급자의 만성질환개수와 전주기 분류지표인 장기요양 인정등급, 연령층, 성별, 지역, 시도의 분산분석 실시
- 실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5개의 변수를 분류지표로 선정

<표>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Levels	F Value	Pr > F
수급자의 만성질환개수	장기요양 인정등급	5	9.64	<.0001
	연령층	6	16.48	<.0001
	성별	1	4.24	0.0394
	지역	2	4.23	0.0146
	시도	16	3.74	<.0001

- 장기요양 인정등급 및 연령층의 경우 사후분석(Duncan) 결과와 갯수, 분포, 내용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그룹화함

<표> 분석분석 사후분석 결과(장기요양 인정등급 및 연령층)

Duncan Grouping	평균	갯수	장기요양 인정등급
A	4.0	1,812	3등급
A	3.9	2,175	4등급
A	3.9	743	2등급
B	3.8	451	5등급
B	3.7	352	1등급
C	3.5	73	인지지원

Duncan Grouping	평균	갯수	연령층
A	4.0	904	75~79세
A	4.0	1,465	80~84세
A	4.0	1,364	85~89세
B	3.9	234	65~69세
B	3.9	422	70~74세
C	3.7	1,015	90세 이상

D	3.6	202	65세 미만
---	-----	-----	--------

-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여, Type I 의 F Value의 크기에 따라 순서를 적용

< 표 > 분류지표 순서 결과

순서	변수 분류	F Value	Pr > F
1차	연령층	42.5	<.0001
2차	장기요양 인정등급	15	<.0001
3차	지역	5.5	0.046
4차	성별	4	0.004
5차	시도	3.5	<.0001

< 표 > 분류지표(수급자)

정렬 순서	지표	분류지표		
①	연령층	만 75세와 90세 기준으로 구간화		
		1구간	2구간	3구간
		만 75세 미만	만 75세 이상 ~ 90세 미만	90세 이상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인정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음		
		1구간	2구간	3구간
		1~2등급	3~4등급	5~인지지원
③	지역	7대 광역시 및 동부 읍면부 고려		
		1구간	2구간	3구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④	성별	성별		
		1구간	2구간	
		남성	여성	
⑤	시도	17개 시도		

		17개 구간
		서울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 (장기요양기관)

1) 표본추출틀 분포

특성		실기관	급여유형별 기관									
			합계	재가					시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 간 보호	단기 보호	공동 생활 가정	30명 미만	30 ~49명	50명 이상
전체		21,796	27,173	12,937	3,362	474	4,534	59	1,744	2,203	826	1,034
설립 유형	개인	18,215	22,807	11,553	2,985	420	3,422	53	1,608	1,769	592	405
	법인	3,277	4,029	1,327	357	52	980	5	126	399	221	562
	지방 자치단체	237	251	16	5	1	118	1	5	26	12	67
	기타	67	86	41	15	1	14	0	5	9	1	0
지역*	대도시	7,825	9,700	5,288	1,168	197	1,510	38	567	471	201	260
	중소도시	8,006	10,039	4,729	1,302	187	1,726	13	570	821	336	355
	농어촌	5,965	7,434	2,920	892	90	1,298	8	607	911	289	419
시도	서울	2,878	3,515	1,919	525	67	472	33	279	96	45	79
	부산	1,125	1,371	914	105	22	217	0	20	32	22	39
	대구	1,108	1,306	680	56	16	294	2	128	64	25	41
	인천	1,407	1,797	826	274	43	196	3	101	211	77	66
	광주	669	852	504	89	21	144	0	15	48	15	16
	대전	650	828	405	106	26	149	0	44	39	25	34
	울산	299	394	193	37	9	106	0	14	12	9	14
	세종	67	88	41	9	4	19	0	3	6	3	3
	경기	5,409	6,588	2,704	792	115	975	13	557	792	320	320
	강원	808	997	386	107	24	149	4	105	131	38	53
	충북	862	988	387	58	11	224	0	96	130	29	53
	충남	1,154	1,478	660	196	19	278	1	93	134	39	58
	전북	1,097	1,480	648	269	32	295	0	58	100	38	40
	전남	1,077	1,383	644	196	17	242	1	65	143	38	37
	경북	1,545	1,937	894	209	22	397	2	113	163	65	72
	경남	1,462	1,929	1,054	294	21	320	0	46	86	33	75
	제주	179	242	78	40	5	57	0	7	16	5	34

2) 층화 및 분류 지표

○ 층화: 급여유형(총 9개 층)

○ 분류지표

-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주요 문항을 이용하여 변수를 선정하고 분류지표로 활용
- 기관의 운영형태와 전주기 분류지표인 설립유형, 지역, 시도의 분석분석 실시
- 실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3개의 변수를 분류지표로 선정

<표>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Levels	F Value	Pr > F
기관의 운영형태*	설립유형	3	5.67	0.0007
	지역	2	6.08	0.0023
	시도	16	3.36	<.0001

* 단독 : 0, 병설 : 1

- 설립유형의 경우 사후분석(Duncan) 결과와 갯수, 분포, 내용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그룹화함(기타를 개인과 통합함)

<표> 분석분석 사후분석 결과(설립유형)

Duncan Grouping	평균	갯수	설립유형
A	0.55	31	지자체
A	0.45	386	법인
A	0.36	1,532	개인
B	0.00	5	기타

-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여, Type I의 F Value의 크기에 따라 순서를 적용

< 표 > 분류지표 순서 결과

순서	변수 분류	F Value	Pr > F
1차	설립유형	7.25	0.0007
2차	지역	6.36	0.0018
3차	시도	2.52	0.0008

< 표 > 분류지표(기관)

정렬 순서	지표	분류지표						
①	설립유형	설립유형 <table> <tr> <td>1구간</td><td>2구간</td><td>3구간</td></tr> <tr> <td>개인 및 기타</td><td>법인</td><td>지자체</td></tr> </table>	1구간	2구간	3구간	개인 및 기타	법인	지자체
1구간	2구간	3구간						
개인 및 기타	법인	지자체						
②	지역	7대 광역시 및 동부 읍면부 고려 <table> <tr> <td>1구간</td><td>2구간</td><td>3구간</td></tr> <tr> <td>대도시</td><td>중소도시</td><td>농어촌</td></tr> </table>	1구간	2구간	3구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구간	2구간	3구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③	시도	17개 시도 <table> <tr> <td align="center" colspan="3">17개 구간</td></tr> <tr> <td align="center" colspan="3">서울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td></tr> </table>	17개 구간			서울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17개 구간								
서울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 (장기요양요원)

1) 표본추출틀 분포

급여유형 및 직종		전체	설립유형(소속기관)				지역*			시도			
			개인	법인	지방 자치 단체	기타	대 도시	중소 도시	농 어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실인원		437,013	348,353	81,912	5,501	1,247	171,470	160,048	105,495	66,269	29,047	20,847	27,747
합계		451,962	361,274	83,783	5,610	1,295	176,929	166,231	108,802	68,741	29,490	21,177	29,327
급여유형	방문요양	292,272	254,912	36,159	257	944	129,984	106,653	55,635	52,930	24,101	14,129	17,688
	방문목욕	16,115	14,268	1,761	18	68	5,775	6,588	3,752	2,505	485	270	1,714
	방문간호	1,312	1,114	194	2	2	611	501	200	230	60	35	122
	주야간보호	36,757	27,987	7,649	1,001	120	12,688	14,325	9,739	4,333	1,906	2,213	1,626
	단기보호	306	282	17	7	.	209	54	43	195	.	7	7
	공동생활가정	8,584	7,905	626	29	24	2,809	2,846	2,929	1,397	92	649	484
	30명미만	28,099	22,670	4,995	320	114	6,114	10,460	11,525	1,281	370	865	2,665
	30~49명	20,138	14,354	5,467	294	23	4,911	8,164	7,063	1,113	504	628	1,866
	50명이상	48,379	17,782	26,915	3,682	.	13,823	16,640	17,916	4,757	1,972	2,381	3,145
직종	간호(조무)사	12,845	8,002	4,267	542	34	4,169	4,523	4,153	1,675	373	674	836
	물리·작업치료사	2,039	863	1,043	128	5	606	708	725	206	97	87	129
	사회복지사	11,979	7,901	3,627	404	47	3,754	4,466	3,759	1,423	427	597	674
	요양보호사	274,135	211,739	57,569	3,815	1,012	107,743	96,519	69,873	43,074	16,926	12,513	18,71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2,098	1,685	403	4	6	681	874	543	315	79	99	77
	요양보호사	180,415	154,177	25,199	286	753	78,702	62,704	39,009	31,900	13,949	8,502	11,784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6,562	14,569	1,925	13	55	6,517	6,730	3,315	3,095	536	374	1,700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708	600	106	2	.	323	294	91	125	27	18	96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3,292	2,173	934	169	16	1,283	1,139	870	591	107	216	112
	물리·작업치료사	244	86	130	28	.	102	88	54	42	25	13	3
	사회복지사	4,073	2,734	1,143	168	28	1,550	1,522	1,001	633	182	250	160
	요양보호사	11,692	7,891	3,240	499	62	4,416	4,438	2,838	1,874	468	719	483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107	95	7	5	.	65	31	11	46	.	12	7
	사회복지사	42	35	3	4	.	22	12	8	21	.	1	.
	요양보호사	306	278	13	15	.	200	79	27	164	.	24	12
공동 생활가정	간호(조무)사	1,777	1,620	146	8	3	600	591	586	299	19	140	108
	사회복지사	406	374	28	4	.	138	140	128	58	4	34	31
	요양보호사	5,608	5,110	463	26	9	1,872	1,869	1,867	949	59	432	338
노인 요양시설 (30명미만)	간호(조무)사	1,713	1,358	338	14	3	350	650	713	83	26	42	131
	물리·작업치료사	45	32	12	1	.	10	17	18	3	2	1	1
	사회복지사	1,916	1,497	397	17	5	390	718	808	91	33	45	147
노인 요양시설 (30~49명)	요양보호사	14,226	11,131	2,928	143	24	2,922	5,334	5,970	709	214	348	1,080
	간호(조무)사	1,321	896	395	22	8	327	498	496	90	29	40	106
	물리·작업치료사	566	365	189	9	3	134	210	222	36	14	14	43
	사회복지사	1,211	844	341	20	6	320	437	454	79	33	43	103
노인 요양시설 (50명이상)	요양보호사	11,600	7,902	3,424	213	61	2,857	4,265	4,478	815	240	361	924
	간호(조무)사	3,923	1,256	2,341	322	4	1,219	1,318	1,386	440	165	205	276
	물리·작업치료사	1,180	377	712	89	2	358	392	430	123	56	59	82
	사회복지사	2,230	731	1,310	187	2	653	763	814	226	96	125	156
	요양보호사	33,726	10,681	20,377	2,620	48	10,257	11,100	12,369	3,568	1,460	1,753	2,393

2) 층화 및 분류지표

○ 층화: 급여유형 및 직종(총 26개 층)

○ 분류지표

-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주요 문항을 이용하여 변수를 선정하고 분류지표로 활용
- 요원의 월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수준(종속변수)과 전주기 분류지표인 설립유형, 지역, 시도(독립변수)의 정준 상관분석을 실시
- 실시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 분류지표 순서를 적용
- 설립유형의 경우 기관 설립유형의 그룹화와 동일하게 함(기타를 개인과 통합함)

<표> 정준 상관분석 결과(표준화된 정준상관계수)

순서	변수 분류	v1	v2
1차	설립유형	0.82	-0.47
2차	지역	0.53	0.16
3차	시도	-0.02	0.77

< 표 >
분류지표(기관)

정렬 순서	지표	분류지표		
①	설립유형	설립유형		
		1구간	2구간	3구간
		개인 및 기타	법인	지자체
②	지역	7대 광역시 및 동부 읍면부 고려		
		1구간	2구간	3구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③	시도	17개 시도		
		17개 구간		
		서울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6-5 조사모집단 또는 표본추출틀의 한계의 내용과 보완 등의 검토 또는 조치 결과

□ 표본추출틀에 한계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보완 등의 검토 또는 조치결과

- 표본추출틀에서 수급자의 상태(사망, 병원이동 등), 이용급여유형의 변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급여유형의 변화 또는 운영상태 변화(폐업, 휴업 등), 장기요양요원이 이직 및 퇴사 등의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급여청구 이력이 있는 수급자, 기관, 요원에 대하여 2022년 5월에 표본추출틀의 현황을 재검토하고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함
- 표본 조정 : 표본 추출시 동일 수급자, 기관 및 요원이 2번 이상 추출된 경우 표본 대체
- 표본 관리 : 부적격이나 불응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하여 조사 진행(대체명부 제공), 표본가구의 가중값 조정을 위해 표본관리 정보 입수
- 장기요양수급자,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추출과정에서 층별 규모의 차이가 커서 규모가 작은 층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근 비례배분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단과 특성의 차이는 사후 가중치로 조정하였음

7.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표본조사)

7-1 표본추출방법

□ 표본설계방법 및 과정

- 표본설계 개요

구분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목표모집단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미이용자 포함)	급여유형별 장기요양기관	급여유형 및 직종별 장기요양요원
조사모집단	22.1월까지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1월 급여청구 유형별 수급자	급여유형별 22.1월 장기요양 급여청구 실적이 있는 기관(복지용구 제외)	급여유형, 직종별 22.1월 장기요양 급여청구 실적이 있는 장기요양요원
표 본 추 출 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 수급자 목록 및 급여청구 실적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청구 실적 (시설: 시설규모)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청구 실적
추출단위	급여유형별 수급자	급여유형별 기관	급여유형별 및 직종별 요원
보조단위 (분류지표)	성별, 연령대,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인정등급	설립유형,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설립유형,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추출방법	층화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층화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층화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 추정효율을 높이고 세부 통계의 생산을 위해서 층화계통추출(Stratified System Sampling)방법 적용
- 표본추출단위 및 보조단위(분류지표)
 - 수급자: 추출단위는 급여유형이며, 보조단위(분류지표)로서 인정등급(1등급~인지 지원등급), 성별, 연령대, 지역별 분포를 반영하였음. 지역구분에서 사용된

수급자의 주소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수급자는 수급자의 거주지 주소를 활용하였으며, 주야간보호 및 시설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제공기관의 주소를 사용하였음

- 장기요양기관: 추출단위는 급여유형이며, 보조단위(분류지표)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유형,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분포를 반영하였음
- 장기요양요원: 추출단위는 급여유형 및 직종별 장기요양요원이며, 보조단위(분류지표)로서 소속기관의 지역을 행정구역(행정동)을 기준으로 추출하였음

7-2 표본크기 결정

☐ 수급자/가족조사

- 표본규모 및 표본 추출: 4,500명 / 층화계통추출
 - 예산 및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4,500명 설정
 - 표본 불능 사유 발생 시, 대체표본을 추가 제공

☐ 장기요양기관 조사

- 표본규모 및 표본 추출: 2,000개 / 층화계통추출
 - 예산 및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2,000개 설정
 - 표본 불능 사유 발생 시, 대체표본을 추가 제공

☐ 장기요양요원 조사

- 표본규모 및 표본 추출: 4,500명 / 층화계통추출
 - 예산 및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4,500명 설정
 - 표본 불능 사유 발생 시, 대체표본을 추가 제공

7-3 표본배분 방법

☐ 표본배분은 각 조사의 설계층으로 세부층화하고 각 층의 유효표본 확보를 위해 제공근비례배분을 활용하여 표본을 배분함

☐ 장기요양수급자

- 설계층의 유효표본 확보를 위해 최소 배분 후 수급자수 기준 역등배분($p=0.4$)
 - * 미이용은 500명으로 고정
 - ** 미이용을 제외한 층에 50명씩 최소 배분

< 표 > 표본 규모(수급자)

(단위: 명)

급여유형(설계층)		모집단	비례배분	제공근	전체 제공근 배분	먹등 배분1) (p=0.4)	최소 배분12)	최소 배분23) (최종 표본)	설계 가중값
합계		1,031,570	4,501	2,674	4,506	4,504	4,500	4,500	229.2
재가	방문요양	418,298	1,825	647	1,089	1,012	1,101	948	441.2
	방문목욕	72,672	317	270	455	504	486	497	146.2
	방문간호	10,784	47	104	176	236	217	259	41.6
	주야간보호	116,380	508	341	576	608	604	589	197.6
	단기보호	593	3	24	41	72	89	114	5.2
시설	공동생활가정	13,780	60	117	198	260	242	280	49.2
	30명미만	45,751	200	214	360	416	398	419	109.2
	30~49명	33,149	145	182	306	368	345	376	88.2
	50명이상	82,852	361	288	486	528	518	518	159.9
미이용		237,311	1,035	487	819	500	500	500	474.6

1)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의 먹등 배분(p=0.4)

2) 미이용 500명 고정 후 50명 최소배분 후 제공근 배분

3) 미이용 500명 고정 후 50명 최소배분 후 먹등 배분(p=0.4)(최종표본)

□ 장기요양기관

- 설계층의 유효표본 확보를 위해 최소 배분 후 기관수 기준 제공근 비례배분

* 27명씩 최소 배분

< 표 > 표본 규모(기관)

(단위: 명)

급여유형(설계층)		모집단	비례배분	제공근	제공근 배분	초기 표본	최종 표본	설계 가중값
합계		27,298*	2,000	419	2,000	1,757	2,000	13.6
재가	방문요양	12,980	951	114	544	478	505	25.7
	방문목욕	3,373	247	58	278	244	271	12.4
	방문간호	475	35	22	104	91	118	4.0
	주야간보호	4,552	334	67	322	283	310	14.7
	단기보호	59	4	8	36	32	59	1.0
시설	공동생활가정	1,756	129	42	200	176	203	8.7
	30명미만	2,220	163	47	224	197	224	9.9
	30~49명	832	61	29	138	121	148	5.6
	50명이상	1,040	76	32	154	135	162	6.4

* 모집단에서 통합재가급여(11명) 제외함

□ 장기요양요원

- 설계층의 유효표본 확보를 위해 최소 배분 후 요원수 기준 제공근 비례배분

* 40명씩 최소 배분

< 표 > 표본 규모(기관)

(단위: 명)

급여유형(설계층)		모집단	비례 배분	제공근	제공근 배분	초기 표본	최종 표본	설계 가중값
합계		453,289*	4,499	2,108	4,502	3,500	4,500	100.7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504	5	22	48	37	77	6.5
	요양보호사	292,328	2,902	541	1,154	893	933	313.3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6,150	160	127	271	210	250	64.6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1,316	13	36	77	60	100	13.2
	간호(조무)사	5,441	54	74	158	122	162	33.6
주야간보호	물리(작업)치료사	424	4	21	44	34	74	5.7
	사회복지사	7,884	78	89	189	147	187	42.2
	요양보호사	23,157	230	152	325	252	292	79.3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70	1	8	18	14	54	1.3
	사회복지사	25	0	5	11	25	25	1.0
	요양보호사	211	2	15	31	24	64	3.3
공동 생활가정	간호(조무)사	1,882	19	43	93	72	112	16.8
	사회복지사	564	6	24	51	39	79	7.1
	요양보호사	6,193	61	79	168	130	170	36.4
노인 요양시설 (30명미만)	간호(조무)사	2,772	28	53	113	87	127	21.8
	물리(작업)치료사	160	2	13	27	21	61	2.6
	사회복지사	3,324	33	58	123	95	135	24.6
노인 요양시설 (30~49명)	요양보호사	22,003	218	148	317	245	285	77.2
	간호(조무)사	1,927	19	44	94	73	113	17.1
	물리(작업)치료사	888	9	30	63	49	89	10.0
노인 요양시설 (50명이상)	사회복지사	1,747	17	42	89	69	109	16.0
	요양보호사	15,724	156	125	268	207	247	63.7
	간호(조무)사	4,981	49	71	151	117	157	31.7
노인 요양시설 (50명이상)	물리(작업)치료사	1,415	14	38	80	62	102	13.9
	사회복지사	2,925	29	54	116	89	129	22.7
	요양보호사	39,274	390	198	423	327	367	107.0

* 모집단에서 통합재가급여(11명) 제외함

7-4 표본추출 결과

☐ 표본 추출 : 층화계통추출

☐ 장기요양수급자

급여유형(설계층)		모집단	최종표본
합계		1,031,570	4,500
재가	방문요양	418,298	948
	방문목욕	72,672	497
	방문간호	10,784	259
	주야간보호	116,380	589
	단기보호	593	114
시설	공동생활가정	13,780	280
	30명미만	45,751	419
	30~49명	33,149	376
	50명이상	82,852	518
미이용		237,311	500

□ 장기요양기관

급여유형(설계층)		모집단	최종 표본
합계		27,298*	2,000
재가	방문요양	12,980	505
	방문목욕	3,373	271
	방문간호	475	118
	주야간보호	4,552	310
	단기보호	59	59
시설	공동생활가정	1,756	203
	30명미만	2,220	224
	30~49명	832	148
	50명이상	1,040	162

□ 장기요양요원

급여유형(설계층)		모집단	최종 표본
합계		453,289*	4,500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504	77
	요양보호사	292,328	933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6,150	250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1,316	100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5,441	162
	물리(작업)치료사	424	74
	사회복지사	7,884	187
	요양보호사	23,157	292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70	54
	사회복지사	25	25
	요양보호사	211	64
공동 생활가정	간호(조무)사	1,882	112
	사회복지사	564	79
	요양보호사	6,193	170
노인 요양시설 (30명미만)	간호(조무)사	2,772	127
	물리(작업)치료사	160	61
	사회복지사	3,324	135
	요양보호사	22,003	285
노인 요양시설 (30~49명)	간호(조무)사	1,927	113
	물리(작업)치료사	888	89
	사회복지사	1,747	109
	요양보호사	15,724	247
노인 요양시설 (50명이상)	간호(조무)사	4,981	157
	물리(작업)치료사	1,415	102
	사회복지사	2,925	129
	요양보호사	39,274	367

7-5 표본설계보고서에 모수 및 분산 추정방법

□ 평균 추정

$$\bar{y}_G = \frac{\sum_{h=1}^H \sum_{i=1}^{n_h} w_{hi} y_{hi} I[c_{hi} \in G]}{\sum_{h=1}^H \sum_{i=1}^{n_h} w_{hi} I[c_{hi} \in G]}$$

- $h = 1, 2, \dots, H$: 설계층을 나타내는 첨자
- $i = 1, 2, \dots, n_h$: h 층 내 표본
- w_{hi} : h 층 i 번째 표본의 가중값
- y_{hi} : h 층 i 번째 표본의 관측값
- $I[c_{hi}] = \begin{cases} 1 & \text{if } I[c_{hi} \in G] \\ 0 & \text{otherwise} \end{cases}$
- G : 분류 (급여유형, 지역 등)

□ 분산 추정

$$\widehat{Var}(\hat{\bar{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 \in h}^{n_h} (y_{hi} - \bar{y}_h)^2, \quad \bar{y}_h = \frac{\sum_{i \in h}^{n_h} w_i y_i}{n_h}$$

□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RSE)

$$\widehat{SE}(\bar{y}_G) = \sqrt{\widehat{Var}(\bar{y}_G)}$$

$$\widehat{RSE} = \frac{\widehat{SE}(\bar{y}_G)}{\bar{y}_G} \times 100$$

Ⅲ. 자료수집

1. 조사방법

1-1 조사방법 선택에 대한 검토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필요시 자기기입식 병행)
 - 수급자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 상태에 따라 본인, 가족대리, 요원 대리응답
 - 재가·시설 이용 수급자는 가족조사 항목 추가조사하고 전화조사 가능
 - 기관 및 요원 조사는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조사
-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비용 및 조사 기간, 응답자의 조사 부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수급자(가족)의 경우 원거리 거주 등으로 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전화조사 활용
 - 기관과 요원조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조사 한계(감염위험이 높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 제한) 극복을 위해 대체 조사방법 병행하는 것으로 주무부처 및 조사를 주관한 국가데이터처 등과 논의

1-2 선택한 조사방법에 대한 조사과정

□ 조사과정

- 준비조사 및 본조사

업 무	담당자	기 간	수 행 사 항
준비조사	국가데이터처 지방청.사무 소	7.11(1일)	- 명부 대상 확인 - 명부상 변경사항 보완 및 대체 - 조사대상처에 협조 안내 및 조사안내문 배부 등
본조사	국가데이터처 지방청.사무 소	7. 12.~7. 25.	- 조사대상처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 조사완료 응답자에 조사필수품(상품권) 지급 - 조사과정자료(파라데이터) 작성 - 조사표 내용 검토 및 입력 병행(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조사표 제출	국가데이터처 지방청.사무 소	8.11~8.19.	- 조사표 편철 및 완료조사표 제출 - 조사표, 조사필수품 지급대장 등 각종 서류를 확인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 입력·내검

주요 업무	담당자	기 간	수 행 사 항
입력 내검 및 정리, 사후검증(전화)	국가데이터처 지방청.사무 소	7.26.~8.1	- 내검오류 확인 후 수정 보완: 이동 항목 누락 등 기본 적인 오류사항 수정 보완, 시스템 내검(타당성 및 일관 성 에디팅)으로 수정 보완 등
현장실사 및 입력, 내검지도	국가데이터처 통계대행과,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7.12.~8.1.	- 합동 현장 실사지도: 입력오류 보완조치, 질의에 대한 추가지침 시달
자료 보완	국가데이터처 지방청.사무소 국가데이터처 통계대행과	8.2~8.19.	- 지방청 현장조사결과 보고서 검토 및 시스템 입력자료 대조 - 입력시스템 종합 내검으로 오류사항 보완 - DB 상태에서 내검규칙을 적용하여 재확인

○ 종합내검 관리

주요 업무	담당자	기 간	수 행 사 항
심층내검	국가데이터처 통계대행과	8.22~10.31	- 각 조사표별 연관 항목 타당성 확인: 이용 대상별 연관 항목 오류 분석 - 데이터 심층 확인: 일반적 특징과 상반되는 데이터, 이상 수치 등 - 보건사회연구원 추가 내검 검토 및 전분기 대비 비교 검토
집계 및 분석	국가데이터처 통계대행과	11.1.~11.25.	- 자료집계: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집계표 작성 - 보건복지부 및 연구기관과 수시 협의체계 유지

2. 조사원 채용 및 처우

2-1 조사원 채용 방법 및 과정

□ 조사원 채용방법 및 과정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2018.10.1.)」 및 「국가데이터처 도급조사원 모집 업무편람(2019.7.)」에 준하여, 국가데이터처 지방청별 자체 실정에 따라 단기간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를 통해 채용
 - 1차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평점(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2-2 조사원 자격요건, 지위, 급여수준, 지급방법, 부가혜택 등

□ 조사원 자격요건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국가데이터처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종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조사원 지위

- 도급조사원 : 조사원은 정해진 조사기간 동안 배정 받은 업무량을 수행하는 방식의 도급계약으로 체결

□ 조사원 급여수준 및 지급방법

구 분	교육 (1일)	준비조사 (1일)	완료 조사표 (대상처, 주소지 기준)		불응, 부재 등 (1명·기관)
			20km 이내	20km 초과	
조사원	73,280원	73,280원	24,430원	원거리 수당 산정표 참조	10,800원

- 원거리 수당 산정표
 - 기준단가 산정방법 : 73,280원(단가) / 3명·기관(1일 업무량)

단 가 \ 거 리	20km~40km	40km~60km	60km~
기준단가 (24,430원)	29,320원 (기준단가*1.2)	34,200원 (기준단가*1.4)	39,100원 (기준단가*1.6)

- 거리 산정기준 : 조사원 거주지 ~ 조사대상처 편도 거리

□ 부가혜택

- 불능(불응) 수당 : 조사원이 대상처를 평균 3회 이상 방문 후 결정하므로 방문수당 (교통비 등 보상)은 현실을 반영하여 지급
 - 산정근거 : 1,350원*2회(왕복)×4회(방문횟수) = 10,800원
 - * 전국 7대 광역시 시내버스 요금 편도 평균금액
- 수급자 조사표는 수급자 항목만 완료해도 완료수당 지급
- 수급자 가족* 항목 조사 인센티브 지급 : 수급자 조사표 완료하고 가족 항목 조사 완료 시 5,000원 추가 지급
 - * 가족은 수급자 조사 시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 병행

2-3 우수 조사원 채용을 위하여 적용한 방법이나 조치

□ 우수 조사원 채용을 위하여 적용한 방법이나 조치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미흡”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국가데이터처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 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금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국가데이터처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3. 조사원 교육

3-1 조사원 교육에 대한 일정

□ 조사원(조사관리자 포함) 교육훈련

- 교육 방법: 교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방청별 집합교육 실시
 -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 실시
 - (국가데이터처) 조사개요, 현장조사요령, 명부관리, 조사용품 관리, 내용검토, 직업분류, 조사시스템 사용법 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표별 조사항목 기입요령, 유의사항 등
 - 조사원의 조사내용 이해도 및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응답유형별 조사내용 이행도 제고
-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원 교육 개요
 - 교육대상: 지방청 공무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도급조사원, 예비조사원
 - 교육기간: 2022.7.1.~7.7.(지방청별 1일)
 - 교육일자 및 장소

지방청	지역	장 소	일자	교 관	
				국가데이터처	연구기관
호남청	제주	제주사무소 회의실	7.1.(금)	김 00	이 00
	광주	호남청 1층 다목적실	7.6.(수)	김 00	이 00
동북청	대구	동북지방 국가데이터처 대회의실	7.4.(월)	홍 00	이 00
충청청	청주	청주사무소 회의실	7.4.(월)	김 00	강00, 최00
	대전	통계교육원 1층 국제회의실	7.5.(화)	김 00	김00, 남궁00
동남청	부산	동남청 대강당	7.6.(수)	홍 00	이 00
	진주	진주사무소 회의실	7.5.(화)	홍 00	이 00
경인청	서울	서울사무소 회의실	7.6.(수)	김 00	김 00
	과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	7.7.(목)	김 00	남궁00
강원지청	원주	강원지청 회의실	7.7.(목)	김 00	김00, 이00

3-2 조사원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의 적절성

○ 교육일정

시 간	교육내용	비 고
09:30~10:00	등록	-
10:00~11:00	조사개요, 조사요원의 역할, 현장조사요령, 인터넷조사 방법 및 가구명부 설명	국가데이터처
11:00~12:00	조사항목 설명 및 조사표 작성(수급자)	보건사회연구원
12:00~13:00	점심시간	
13:00~13:50	조사항목 설명 및 조사표 작성(수급자)	보건사회연구원
14:00~15:30	조사항목 설명 및 조사표 작성(기관)	보건사회연구원
15:40~17:00	조사항목 설명 및 조사표 작성(요원)	보건사회연구원
17:10~17:30	질의 응답, 입력시스템, 내용검토 및 기타 행정사항	국가데이터처

3-3 조사기간 중 교체된 조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

☐ 조사기간 중 교체된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 조사기간 중 중도포기 등을 대비하여 각 지방청 사정에 따라 예비조사원을 채용하고, 조사원 교육시 예비조사원도 함께 교육 실시
- 도급조사원이 중도포기로 교체될 경우 반드시 조사지침서 교육 실시 후 조사에 투입되도록 조치(중도포기자 발생시 조사원 확보시까지 조사관리자·담당공무원이 조사 수행)

3-4 조사원 대상 비밀보호 의무 교육 또는 서약서 작성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사원 대상 비밀보호 의무 교육 및 서약서 작성여부

- 대 상 자 : 담당공무원, 조사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 보안유지 서약서 작성(조사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 보안교육 수시 실시
 - 입력내검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철저
 - 조사표 보관 및 관리 철저

4. 조사원 업무량

4-1 조사원 업무량 배정시 고려사항

- (조사인원)
 - 1) 도급조사원 1인당 42개 대상처 내외 조사(1일 3개 대상처)
 - 2) 조사관리자는 도급조사원 3명당 1명 기준(* 조사관리자가 1명도 배정되지 않은 사무소(분소)는 입력내검원 1명 배정)
- (총 대상처) 11,000개
- (최소방문횟수) 3회 이상
- (조사기간) 14일
- (응답소요시간) 조사표 별 20~30분 내외 소요

5. 조사업무 흐름도

5-1 조사실시에 대한 조사업무 흐름도

- 통계대행 계약(추진기간 : 2022.1.12.~2022.2.18.)
 - 계약 전 사업예산, 조사모집단, 표본설계, 조사시기, 조사대상, 양기관(보건복지부, 국가데이터처) 역할부담 등 사전 협의 실시
 - 공문에 의한 계약 체결(통계대행과-297, 2.18. 시행)
 -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에 의거 협조요청
 -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국가계약법 제49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하며, 계약서는 본 공문으로 갈음

○ 기본계획 수립

- 조사대상 및 규모,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체계, 추진일정, 사업예산 배정, 업무추진 분담 내역 등 기본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내부보고 및 보건복지부에 통보(통계대행과-297, 2.18)

○ 기관별 수행 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통계대행과	· 조사기본계획 수립, 세부 실시계획 수립 · 조사표 설계 · 조사지침서 및 교육자료 작성 · 입력·내검 프로그램 설계(나라통계시스템 기반) · 조사안내문, 조사원증 등 인쇄 · 조사용품류(필기구, 안전용품 등) 구입 · 조사필수품(상품권) 구입 · 조사지역 검토 · 표본명부 확보 · 조사홍보 · 조사원 교육 · 지방청(사무소) 현장조사 및 내검 실사지도 · 조사결과물 내용 검토 및 종합내검 · 조사결과물 제출(원자료, 조사표, 표본설계보고서, 집계표 등)
조사시스템관리과	· 나라통계 기반 시스템 구축환경 지원
표본과	· 표본설계 및 사후가중값, RSE 작성
지방청 (사무소)	· 조사관리자, 조사원, 업무보조원 채용 · 교육장소 확보 · 조사관리자 내검 장소 확보 및 조사원 관리 · 현장조사 실시 · 조사표 입력 및 현장 내검 · 조사결과물에 대한 전화 검증 · 현장조사결과 완료보고서 작성·제출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 모집단(표본추출틀) 구축 · 조사항목 작성 · 조사지침서 및 교육자료 작성(항목) · 조사홍보(국가데이터처와 공동) · 조사원 교육(국가데이터처와 공동) · 조사원 실사지도(국가데이터처와 공동) · 심층분석, 시사점 도출, 분석보고서 작성 · 통계표 작성 및 결과 공표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지방청 및 사무소에 알림(통계대행과-903, 6.7) 통계대행과-903
- 지방청 및 사무소의 협조를 위한 의견 수렴(2022.5.27.)
 - 조사인력, 조사원채용 및 교육, 조사용품 등 현장조사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조사표 사전 설명

- 모집단 구축 및 표본 설계
- 통계 변경승인
 - 국가통계 작성 변경 승인(2022. 7. 1., 제 117104호)
- 조사표 설계 및 지침서 작성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국가데이터처가 문항 검토 후 현장 사전테스트를 통하여 조사표 구성 및 조사항목의 응답 용이성, 현장 적합성 등을 반영
 - 조사지침서는 국가데이터처(안)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연구원이 보완
 - 조사항목의 개념 및 조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수록
 - 현장조사에서의 주의사항, 조사표 작성 방법, 내용검토 방법 등
- 조사인력채용
 - 도급조사원 : 1인당 42명(기관) 내외 조사(1일당 3×14일)
 - 조사관리자 : 1인당 도급조사원 3명 내외
 - 업무보조원 : 지방청(지청) 업무량 고려, 지방청(지청) 당 1명 배분
- 조사인력교육
 - 대상 : 도급조사원(예비포함),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담당공무원
 - 기간 : 2022. 7. 1. ~ 7. 7.(10개 권역별 각 1일)
 - 교관 : 국가데이터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인 1조 합동교육
 - 국가데이터처 : 조사개요, 조사요령, 조사용품 관리, 내용검토, 입력프로그램 사용법 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표 3종의 조사항목
- 실사지도 및 결과
 -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한 지침 전달 및 완료 조사표 모니터링
 - 현장조사 진척사항 파악 및 조사 중 문제점 해결방안 공유
 -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전산 입력·내검 진행사항 지도
 - 기간
 - 순회·실사 지도 : 2022. 7.12. ~ 7.25.
 - 입력·내검 지도 : 2022. 7.26. ~ 8.1.
 - 인원 : (국가데이터처) 통계대행과장 등 4명, (복지부) 2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명
- 통계조사 검증
 - 사후 검증 실시로 통계의 정확성 제고
 - 조사원의 조사내용 부실 방지 및 책임성 확보
 - 기 간 : 7. 26.~ 8. 1.(5일간)
 - 검증 대상 : 조사원별로 완료 대상처 2군데(명부의 5% 내외)
 - 검증 내용 : 방문사실, 조사필수품 지급여부, 주요 조사내용 등
- 자료 처리
 - 현장조사 및 입력·내검 완료 조사표에 대한 심층 내검을 통한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

- 현장조사(7.12.~7.25. 지방청 · 사무소)
 - 조사대상별 조사항목 확인, 조사원·조사관리자 조사현장 내용검토(eye-checking), 완료된 명부에 대한 파라데이터(방문기록부) 내용 검토
- 입력·내검 및 정리 (7.26.~8.1. 지방청 · 무소)
 - 내검오류 확인 후 수정 보완
 - 점핑 항목 누락 등 기본적인 오류사항 수정 보완
 - 시스템 내검(타당성 및 일관성 에디팅)으로 수정 보완
 - 특이사항 처리방법 질의·응답
 - 파라데이터(방문기록부) 검토
 - 대상 가구방문 여부, 방문결과 유형 등
 - 조사표 수량, 조사필수품 잔량 및 각종 서류 확인
- 현장실사 및 입력·내검지도 (7.12.~8.1. 대행과·위탁기관·연구기관)
 - 통계대행과, 위탁기관, 연구기관 합동 현장 실사지도
 - 입력오류 보완조치, 질의에 대한 추가지침 시달로 정확성 향상
 - 위탁기관 및 연구기관 통계작성 역량 강화
 - 입력시스템 이용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즉각 보완
- 자료보완 (8.19.~9.30. 지방청 · 사무소·통계대행과)
 - 지방청 현장조사결과 보고서 검토 및 시스템 입력자료 대조
 - 입력시스템 종합 내검으로 오류사항 보완
 - 조사필수품 지급 현황 집계 및 오류사항 점검
 - DB 상태에서 내검규칙을 적용하여 재확인
- 심층내검 (10.1.~11.8. 통계대행과)
 - 각 조사표별 연관 항목 타당성 확인
 - 각 조사표 내 연관 항목 종합 검토
 - 명부와 조사표 간 연관 항목 오류 분석
 - 일반적 특징과 상반되는 데이터, 이상 수치 등 검토
- 집계·분석 (11.11.~11.28. 통계대행과)
 -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집계표 작성
 - 보건복지부 및 연구기관과 수시 협의체계 유지
 - 자료 재검토 및 집계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이사항, 이상 수치 처리
 - 집계표 작성방법, 제공방법 및 추진일정
 - 2025년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 논의 등

6.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6-1 조사실시 홍보 내용과 방법

□ 조사홍보

- (방법) 보건복지부 및 국가데이터처·지방청(사무소)에서 체계적으로 추진
- (홍보기간) 2022. 6. 21. ~ 7. 10.
- 홍보방법
 - (보도자료) 조사개요,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보도(7월 초)
 - (인터넷) 기관 홈페이지 등에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안내 및 국가통계대행 연결 배너 게재
 - (정부광고) LED 전광판 활용
 - (현수막) 지방청 사무소 자체제작 후 활용
 - (인사장) 통계대행과 제작 및 응답자 배부, 조사원 현장조사 시 활용
 - (어플) 장기요양 어플을 통해 수급자, 기관, 요원에게 푸시알림 발송
 - (협조공문) 통계대행과 협조공문 작성 및 조사시스템 등재, 조사원 현장조사 시 활용

6-2 응답자(조사대상) 사전 통지

□ 응답자 사전통지

- 인사장을 제작하여 대상처에 우편 발송 및 조사원들이 준비조사 기간 동안 조사안내문 배부

6-3 조사구 확인 또는 조사명부 보완

□ 조사명부 보완

- 명부 수정 가능 항목
 - 수급자 : 명부와 동일인인 경우만 구분, 급여유형, 등급, 주소 수정 가능
 - ※ 급여유형이 단기보호인 경우에는 명부 대상자가 최근 1개월 동안(2022년 6월) 단기보호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명부 대상자가 이용했던 단기보호 기관에 유사한 조건*의 수급자가 있으면 명부의 나이, 성명, 주소를 수정하여(구분, 급여유형, 등급, 성별 수정 불가) 새로운 수급자를 조사(단, 비급여로 이용하는 단기보호 수급자는 제외)
 - * 유사한 조건의 수급자: 구분, 급여유형, 등급, 성별, 연령대(5세 기준) 동일
 - 장기요양기관: 명부와 동일 기관인 경우만 급여유형, 설립형태, 주소, 연락처 수정 가능
 - 장기요양요원: 명부와 동일인인 경우만 급여유형, 직종, 주소, 요원 연락처 수정 가능

7.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7-1 주요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수급자 및 가족

○ 생존자녀수

- 수급자 본인의 생존해 있는 자녀수를 실수로 기입하며, 생존하는 자녀가 없거나 비혼으로 생존자녀가 없는 경우 0으로 기록

○ 만성질환개수

- 현재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을 조사
- 의사진단을 받은 모든 만성질환은 질환에 의한 활동제한 유무, 치료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기입
- 목록에 있는 질환 및 목록에 없는 만성질환 모두 하나도 앓고 있지 않은 경우, 이전에 질환이 있었으나 재발하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지 않고, 완치되었다고 진단받은 경우 없다고 체크

○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질병개수 및 알약 개수

- 만성질환이 아니어도 현재 섭취하고 있는 약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복용하는 약이 없으면 0으로 기입
- 약은 정, 캡슐, 가루약, 흡입용 캡슐, 시럽을 모두 포함하며, 단, 건강을 위한 비타민, 무기질이나 보약과 같은 건강보조식품, 안약 등은 제외
- 가루약의 경우 1포를 1개로 기재, 시럽은 1회 복용을 1개로 기재함. 1회에 2점을 마셔도 1개로 기입

○ 보행 및 이동능력

- 일상생활에서의 보행 또는 이동 능력에 대한 질문으로 교통수단 이용이 아닌 독립적인 보행이나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질문으로 이동방법이 두 가지 이상 활용될 경우 더 독립적인 신체기능이 가능한 경우를 중심으로 기입

○ 가구형태

-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가구 형태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질문
-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의 본거주지가 다른 곳에 있고 시어른의 병간호를 위해 잠시 노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수급자의 배우자가 수급자의 가구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도 손자 돌봄, 타 지역 병원 치료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고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왕래 횟수가 월 1회 미만이면 별개의 가구
- 단기보호 이용자의 경우, 단기보호 입소 직전 자택에서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응답

○ 가구원수

-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가구 내 3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 수(수급자 포함)를

가입하며,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도 가구원

- 수급자의 배우자가 손자 돌봄, 타 지역 병원 치료 등의 이유로 수급자의 가구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도 함께 거주하고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왕래 횟수가 월 1회 미만이면 가구원에 불포함

○ 주거 편의시설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이중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현관 폭의 경우 수급자가 휠체어를 실제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동이 가능한가를(너비 85cm 이상) 파악하도록 함. 또한 실외 휠체어용 경사로가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설치된 실외 경사로를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함

○ 주거 편의시설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이중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현관 폭의 경우 수급자가 휠체어를 실제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동이 가능한가를(너비 85cm 이상) 파악하도록 함. 또한 실외 휠체어용 경사로가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설치된 실외 경사로를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함

○ 가족인 요양보호사

- 수급자와 가족인 관계이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1일 1회(60분)에 한하여 월 20회까지 이용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가 문제행동이나 치매상병이 있는 경우 등에는 1일 90분, 월 20회 이상 인정 가능
-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본인부담금 총액

- 2개 이상의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급여별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총액을 조사
- 지난 한달간 1주일만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했다면, 1주일 동안 이용한 본인부담금을 기입
- 단기보호의 경우, 100% 비급여로 이용하면서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한 비용은 제외
-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재

○ 복지용구 사용여부

-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 구입 또는 대여하여 사용하는 복지용구를 모두 포함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이용일수

- 이용횟수는 누적횟수로 기재하고, 이용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총 일 수를 개월로 산출한 뒤 반올림하여 기재(월평균 일수는 30일로 산출)
- 합산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기재

- (요양)병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원, 거주기간
 - 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총 일수를 개월로 산출한 후 반올림하여 기재(월평균 일수는 30일로 산출)
 - 합산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기재
 -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 정신보건시설 등
- 노인요양시설에 납부한 금액
 -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총액
 - 본인부담금 : 재가(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시설급여 비용의 20%) 이용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 비급여 : 식사재료비(간식비, 경관유동식),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서비스 비용 등
 - 납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0원으로 기입
- 장기요양기관 계약체결시 고려사항
 - 비용: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장기요양급여이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장기요양기관의 물리적 환경: 기관 내부 인테리어, 시설의 청결도, 침실 면적 등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주변환경 포함
 - 기관의 규모: 시설의 물리적 규모, 서비스 이용자 수, 직원 수 등을 의미
 - 장기요양기관과의 거리: 수급자 자택 또는 수급자 가족과 장기요양기관과의 거리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노인요양시설 내 별도 공간인 치매전담실을 두어 치매어르신을 전문적으로 수발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어르신을 전문적으로 수발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수급자 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치매수급자 전용 주야간보호 기관(1실당 25명 이하)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납부자
 - 본인부담금은 재가 및 시설급여 이용에 따라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
 - 수급자나 수급자의 배우자의 계좌에서 본인부담금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체되고 있더라도 그 비용이 자녀의 경제적 지원으로 이루어진다면 자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입
 -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가족원'이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
- 수급자 돌봄 제공 횟수 및 부담 정도
 - 수급자의 가족(응답자)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여 급여를 제공받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응답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1개월 근무시간은 월 20~30시간 이내임

- 수급자의 재가생활 유지를 위해 도입해야 할 신규 서비스
 - 수급자가 현재와 같이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할 장기요양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임
 - 식사 및 영양관리서비스는 치료식, 유동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식사의 제공과 영양상태 점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의미함. 차량지원은 병원 진료 등 외출이 어려운 경우 공공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서비스를 의미하며, 야간순회서비스는 야간시간에 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를 위해 위생관리, 위기상황을 대비한 예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을 뜻함
- 종사상 지위
 -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 상태를 뜻함
 - 상용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소정의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의미함.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일정 사업(1년 미만)의 필요에 따라 고용된 경우를 의미함. 일용근로자는 고용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일당제를 받는 경우를 의미함. 무급가족 종사자는 동일 가구 내 가족원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으로 조사대상 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임
- 가구소득
 - 월평균 가구소득은 세금을 공제한 후 금액으로 상여금,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초수급비,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을 포함
 - 소득이 없다고 하는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임을 재차 상기시키고, 그래도 '없다'고 하는 경우 '① 100만원 미만'에 표시
 - 수입원이 있는 배우자가 타지에서 생활하더라도 배우자 수입을 포함하여 작성

□ 장기요양기관

- 운영주체
 - 비영리법인에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이 포함
 - 조사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설립유형과 운영주체는 다를 수 있음. 즉, 설립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나 운영주체는 위탁운영으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이 될 수 있음
- 건물 점유형태
 - 조사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점유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요양시설은 전세나 월세가 불가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자가와 전세까지 가능함. 이외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모든 점유형태(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전세, 월세 등)가 가능
- 단독/병설 운영여부

- 단독: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1개만 제공하는 재가급여 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 중 하나의 시설만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 병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재가장기요양기관 ‘병설’의 의미는 동일 대표자가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또는 동일 필지)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 시설장의 겸직은 최대 3개 급여유형까지 가능하므로 기관 병설 역시 최대 3개까지 가능
 -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다른 기관(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과 시설이나 설비, 인력을 공용하는지를 기준으로 응답
- 기관 이용자 현황
- 표지(조사명부)에 기재된 급여유형의 이용자만 조사
 - 정원은 기관 설립 시 설립 기준(시설 및 인력)에 따라 신고한 인원수로 기재하며, 정원수는 현원수와 같거나 작아야 함
 - 방문형 기관은 정원의 개념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아야 함
 - 이용자는 100% 본인이 부담을 하는 비급여 이용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았지만 100% 정부지원금으로 입소해 있는 이용자 등을 포함하여 조사
 - 치매진단 여부는 반드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치매진단을 받은 자의 총수를 기재
- 기관 직원 현황 및 평균 근무기간
- 표지(조사명부)에 기재된 급여유형의 직원만 조사하되, 등록만 되어있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제외함. 해당 직종의 현재 기관 종사 유무 기재 및 해당 기관 내 평균 근무기간을 작성
 - 직원은 직함상이 아닌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직종을 기준으로 조사함. 예를 들어 직원배치기준상의 사회복지사로 채용을 하였지만,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한 경우 사무국장이 아닌 사회복지사에 기입
- (방문형 기관)
- 월 60시간 미만인 직원 수는 지난 한 달간 0.1시간 이상 59.9시간 이하로 근무한 직원수를 의미
 - 기관 내 겸직 실인원은 동일 장기요양기관(조사명부에 기재된 기관)에서 겸직 인원을 의미함. 예를 들어 조사명부에 방문요양 급여로 체크된 경우, 시설장과 사회복지사의 겸직이 가능함. 실제 조사기관에서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겸직일 경우 겸직인원을 1명으로 기재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
- 월 160시간 미만인 직원 수는 지난 한 달간 0.1시간 이상 159.9시간 이하로 근무한 직원수를 의미
 - 해당 직종의 직원이 없을 경우, 또는 외부에 위탁(급식, 세탁물)하는 경우는 0으로

기재

- 장기요양기관 규모에 따라 인력배치 기준이 달라지므로 유념하여 기재
- 해당 직종에 다수의 종사자가 있다면, 해당 직종 근무자 전체의 평균 근무기간을 작성하도록 함
- 퇴사 누적건수
 - 퇴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처리한 경우로 기관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자를 의미하며, 지난 6개월 간의 누적 건수로 기재
- 수급자의 안전사고
 - (시설 안밖에서의)낙상, (외출, 병원이송시의)교통사고, 질식, 흡인성폐렴, 감염성질환(독감, 간염, 결핵, 옴 등), 식중독, 노인학대 신고(보호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등
 - 노인학대: 응답자가 학대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 신고까지 이어진 사례에 대한 총 건수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자기방임까지를 포함함
- 수급자 상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대응방식
 - 반드시 개별 건에 대한 처리방식을 확인하여 기재
 - 참고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추가 가입한 민간보험은 기관에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외에 추가로 가입한 민간보험을 의미
 - 기타에는 위 네 가지 방식 이외의 처리 방식을 기재함. 만약 한 건의 수급자 상해에 대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별도의 시설장 개인비용 즉,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면, 기타에 체크하고 처리방식을 상세하게 기재
- 직원의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
 -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의 예시로는 근골격계 질환(인대 손상, 어깨 결림 등), 업무 중 교통사고, 급여 제공 과정 중 일어난 사고(전도, 추락, 끼임, 화상, 감염 등), 수급자로부터의 상해 등
- 장기요양기관 운영상의 어려움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선택하는 문항으로, 보기 중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 안전설비 및 시설관리는 기관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인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 이용자의 병의원 동행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 자체예산 추가 채용 직원 수
 - 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청구가 아닌 기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채용하고 있는 직원 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인력추가배치로 인해 가산을 받은 인원은 제외하고 기재

- 주간과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수
 - 야간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를, 주간 시간은 24시간 중 야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
- 장기요양기관 건물의 건립용도
 - 건축 당시에 자신 또는 타인이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건립되었다고 응답
 - 타용도 건물: 공공기관, 복지기관, 호텔, 상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숙박업소 등 타용도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 건물의 층수 및 침상이동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 지하와 옥상을 제외하고, 최저 층수는 지상 1층을 기준으로 기재
 - 노인요양시설 사용 층수에는 입소노인(수급자)의 생활공간, 사무실 등 모든 층을 포함하되, 지하와 옥상 층은 제외
 - 노인요양시설이 사용하는 층수가 떨어져 있다면 떨어진 공간을 포함하여 최고 층수와 최저층수를 기재
 - 침상이동 엘리베이터 설치여부: 사용하는 건물이 1층 건물이거나 노인생활공간이 아닌 사무공간일 경우, 복층이지만 생활실이 1층인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 침실 개수 및 사용 입소자 수
 - 침실은 최소 1인실에서 최대 4인실이 법정기준으로 5인실 이상 침실은 없음
 - 사용 입소자 수는 침실의 정원이 아닌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현원(실인원) 기재
- 요양보호사의 교대 근무 형태
 - 노인요양시설 내 다양한 근무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중 가장 주된 근무형태로 응답
 - 24시간 근무 및 2일 휴무제는 1일 24시간동안 근무 후 연속 2일 휴무한 후에 다시 1일 24시간 근무 및 2일 휴무형태의 반복
 - 24시간 격일제는 1일 24시간 동안 근무 후 1일 휴무 형태 반복
 - 2~4교대는 1일 24시간 근무를 2명~4명의 근무자가 나누어 교대하여 근무하는 형태
- 비공식 인력 현황
 - 해당기관의 소속이 아닌 인력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유급 또는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자원봉사자나 단체, 병역의무를 대체하여 복무하는 자, 프로그램 강사 등을 포함
- 비급여 항목 현황
 - 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을 파악하는 것으로 식사재료비, 경관유동식은 1식을 기준으로, 간식비 및 이미용비는 1회를 기준으로, 1인실 및 2인실 사용료는 1일을 기준으로 응답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전체 기간

-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 7월 이후 응답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총 기간으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제공기관 등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근무한 총 기간
- 계약직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한 기간만을 합산하며,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일용직(대체인력) 형태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경력도 포함하며, 중간에 직장을 다니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

○ 장기요양기관 근무 시작 시기

- 조사명부에 기재된 직종을 기준으로 조사하며, 입사 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시기를 기준으로 조사

○ 직위

- 사원(직위없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직위가 없는 형태를 의미하며, 조장, 방장 등의 경우도 사원으로 기재
- 주임, 대리: 선임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 중간관리자: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모아 별도의 팀, 부, 과를 조직하여 해당팀이나 과 등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부장급(복지지원부장, 간호부장 등), 팀장급(복지재활팀장, 생활간호팀장, 생활복지팀장 등), 과장급(복지과장, 운영과장, 간호과장 등)을 포함
- 사무국장: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사무국장

○ 고용형태

- 정규직: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본 조사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포함
- 계약직(전일제) : 고용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주5일제, 일8시간을 근무할 경우
- 계약직(시간제) : 고용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근로시간에 따라서 급여수준이 결정될 경우

○ 주된 근무시간 유형

- 근무시간 유형이 2가지 이상일지라도 주된 근무시간에 대해 응답해야 하며,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불규칙적으로 하는 경우 이중 가장 많이 응답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조사

○ 월별 근무일수

- 근무일수는 유급휴가, 휴무일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를 적용하며, 비급여 근무일수(장기요양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 개인적 아르바이트 등)은 제외하고 조사

- 방문형 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시급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월별 근무일수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월별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유급, 무급)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단 1일이라도 근무했다면 근무시간에 포함함. 갑작스러운 대체가 필요하여 하루, 이틀 정도 파트타임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제외함.
 - 응답자가 가족인요양보호사로만 근무하거나, 일반 요양보호사와 가족인요양보호사를 병행할 경우 정규 근무시간(소정 근로시간)의 상한이 있음에 유의
 - 정규 근무시간(소정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 근로시간
 - 유급 초과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를 보상받은 시간
 - 무급 초과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나, 급여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임. 방문요양의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가 근로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일이 끝나지 않아 연장근무를 한 경우, 근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문요청을 요청하여 출근한 경우 등을 포함.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당직근무 시간, 야간근무시 대기시간, 교대시 인수인계 시간 등을 포함
- 월별 임금수준
 -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받은 급여만을 의미하며,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근로활동을 통한 수입은 제외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지출된 것을 합쳐서 기입 필요
- 법정근로수당
 - 휴일수당: 정해진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일을 한 경우, 1.5배에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
 - 주휴수당: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 연차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
 - 연장근로수당(초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 추가 수당
 - 장기근속장려금: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대상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가산대상자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 직책수당: 보직을 부여받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추가 수당
- 기타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법정 휴가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 제공되어야 함.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제공되어야 함(단, 15시간 미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 부여. 근로계약 형태, 근속기간, 주당 근로시간 등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

○ 2개 이상 기관에서 동시 근무 여부

- 복수기관에서 근무가능 직종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 조사명부에 기재된 직종에 유념하여 조사 필요
- 병원, 가사간병 바우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에서 동시에 근무한 경우는 제외

○ 업무이외의 활동(급여외 행위) 제공요구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포함

○ 장기요양업무 수행 중 질환, 사고 경험

- 감염성 질환은 독감, 호흡기 질환, 간염, 결핵 등이 해당하며 코로나19 감염은 제외
- 다치거나 사고 경험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골절, 출퇴근 또는 수급자의 외출 동행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등을 포함
- 우울증 등 정신, 심리적 질환은 서비스 제공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질환에 한정하며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로 한정

○ 장기요양업무 관련 교육

- 장기요양관련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대상의 직무교육 및 그 외 교육, 노인장기요양관련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종별 보수교육, 장기요양기관 평가대비 교육, 요양보호사 대상의 스트레스 관리, 자기돌봄교육, 치매대응 프로그램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종별 업무교육, 직무향상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실무역량강화 등을 포함

○ 이직 횟수

- 응답자의 이직횟수는 타 업종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이직한 횟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직한 횟수를 응답함. 이 경우, 타업종은 사회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자영업, 일반회사 등을 모두 포함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필요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시간, 임금, 고용안정성, 교육 및 훈련 등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며, 이중 법정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주휴,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과 관련된 것을 의미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 수급자 수 및 횟수

- 응답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해 가정에 방문하고 있는 수급자의 실 인원을 기재하며, 여러기관에서 동시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관계없이 담당하고 있는 수급자 총 명수를 기입
- 응답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일반요양보호사를 병행하여 근로하고 있을 경우, 가족인 수급자를 포함한 숫자 및 방문 횟수 기재

○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경험

-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중단한 총 개월수를 기재하므로 중단횟수가 여러 번일 경우, 중단기간을 총 합산하여 기재
- 중단기간 중에 타인 또는 기관의 요청으로 갑작스러운 대체가 필요하여 하루, 이틀정도 파트타임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근무 중단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1개월 이하로 일을 쉬었던 경우는 근로중단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규정상 휴게시간 인지여부 및 시간수준

- 응답자가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응답을 하더라도 응답내용대로 기재함.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응답자가 하루 5시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이 0시간이라고 응답한다면 응답내용 그대로 0시간이라고 기재

○ 휴게공간 여부

- 휴게공간은 반드시 '독립된 휴게공간'임을 확인하여 응답 기재하며, 독립된 휴게공간이란 요양보호사실, 휴게실 등과 같이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휴게 공간 내에 사무 또는 근무공간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휴게공간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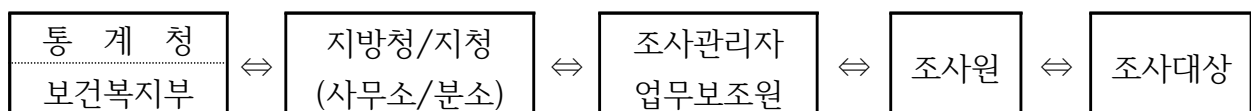
○ 야간근무 여부

- 야간근무는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로하는 형태를 의미

8. 조사 관리

8-1 조사 관리 체계

○ 조사관리체계



8-2 조사 관리 방법

□ 현장조사 관리 체계 및 방법 : 파라데이터 수집

- 현장 조사 기간 중 현장조사 전반에 대한 파라데이터를 수집
- 방문횟수, 방문시각, 응답자의 응답현황(유고사유 등)
- 조사대상자별로 방문기록부를 작성 후 입력시스템(나라통계시스템)에 입력

8-3 조사 관리자 1인당 조사원수 등 관리

- 조사관리자 1인당 도급조사원 3명 내외

8-4 조사 관리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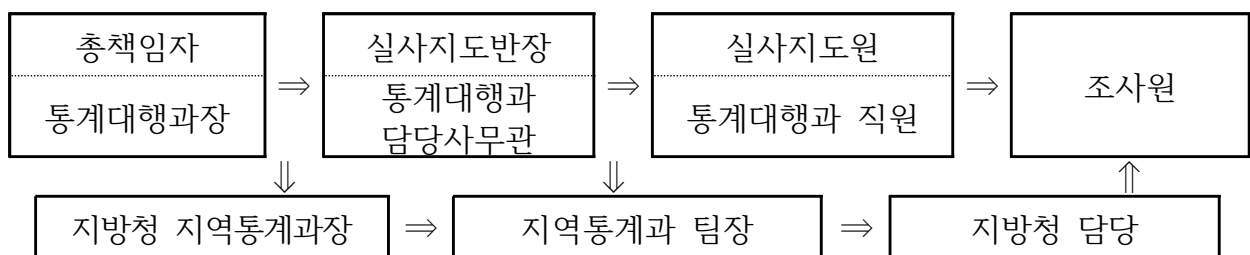
□ 현장조사관리자의 역할

- 조사관리자는 도급조사원 현장조사 지도, 지원
- 매일 자신이 관리하는 조사원이 조사완료한 조사표를 입력·내검하고 미비점은 도급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지시
- 담당 조사원의 일일 조사 진도 파악 및 조사부진 독려
- 조사 불응 및 애로 대상처 설득·지원
- 조사원 업무분장 및 명부정리, 조사용품 관리
- 완료 조사표 사후검증
- 조사표 편철·인계 및 정리 제출
- 입력 및 내용검토가 완료된 조사표를 취합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8-5 조사기간 중 조사원을 대상으로 실사지도(지도점검) 실시

□ 실사지도 및 입력·내검 지도 실시내용

- 실사지도 체계



- 실사지도 담당자의 역할

- 총 책임자(통계대행과장) : 조사관련 업무 총지휘, 조사업무 제반사항 점검
- 실사지도 반장(담당 사무관)·실사지도 업무총괄·조사전반에 관한 지침 시달·조사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순회지도
- 실사지도원(통계대행과): ·현장지도 총괄,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조사표 입력·내용 검토 점검, ·기타 조사관련 행정사항 확인 점검

- 지방청 지역통계과장: · 조사관련 관내 업무 총지휘, · 조사업무 제반사항 점검, · 조사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 강구
 - 지방청 팀장: 현장지도(지방청, 관할 사무소) 총괄, 조사업무 진척도 파악 및 정기보고,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현장 조사 모니터링
 - 지방청 담당자: 현장지도, · 조사 불응 대상처를 설득하는 등 조사원 업무수행 지원, ·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조사실적 정기보고
- 실사지도 및 입력·내검 지도 세부추진 사항

구 분	수 행 내 용
현장 실사 지도	- 현장조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 - 담당공무원 및 조사요원 노고 격려 등 - 조사지침에 따른 정확한 현장조사 수행 지도 - 조사 불응·불응 유형 파악 - 방문일지 기록상태 점검
입력·내검 지도	- 입력시스템 사용환경 설정 및 사용법 교육 - 내검 오류코드별 내검사항 설명 - 조사표 내용 검토 - 입력·내검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 해결

- 현장 실사 및 입력·내검 지도 일정
- 대상 : 20개소
 - 실사지도원 : 보건복지부, 연구기관, (국가데이터처) 통계대행과장 등 4명
- 대상(20개소) - 표본규모가 큰 지방청(사무소) 및 강원지청
- 일정
- 실사지도

출장자	일수	7.12. (화)	7.13. (수)	7.14. (목)	7.15. (금)	7.18. (월)	7.19. (화)	7.20. (수)	7.21. (목)	7.22. (금)	7.25. (월)
통계대행 과장	4			청주	제주		호남	군산			
홍○○	7	포항		청주	제주		호남	군산	동북	동남	
김○○	7	성남	서울		인천	경인	고양			충청	세종
김○○	6		강원	원주		창원		수원	의정부		전주
공○○*	1										세종
양○○*	2			청주							세종
이○○*	2			청주							세종

* 유관기관(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담당자는 자체 출장계획에 따라 실사 지도에 참여

- 내검지도

출장자	일 수	7.27.(수)	7.28.(목)	7.29.(금)
홍○○	1		충청청	
김○○	2	호남청		경인청
김○○	2		동북청	동남청

○ 실사지도 업무수행 점검사항 및 질의내용

1) 조사 준비 단계

-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채용 : 채용 시 애로사항, 개선 및 건의사항
- 업무량 배정 : 업무량 배정 애로사항, 인쇄물 등 조사용품 관련 애로사항

2) 조사원 교육

- 교육에 대한 조사원의 이해 정도 파악 : 교육시간 적절성, 조사항목 및 조사용어 이해정도

3) 준비조사

- 대상자 위치 파악, 일정계획 등 애로사항 : 명부, 협조문 등 관련, 대상자 방문 시, 문제점, 본 조사에 대한 응답자 반응 등

4) 현장조사

- 현장조사 시 애로사항 파악 : 불명확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조사항목, 평균 조사표 작성시간 및 작성방법, 응답 방해 요소, 응답 거부 유형, 응답 거부 주요 사례, 응답자에게 민감하고 어려운 항목
- 방문결과 기록상황 파악 : 방문결과 작성 시 문제점 등
- 결과검증 상황 파악 : 결과검증 시 문제점, 결과검증 입력 시 문제점
- 기타 조사 상 애로사항 파악

5) 입력/내검

- 입력·내검 관련 문제점 및 내검사항 검토 : 입력 속도·편리성·시스템다운 등 문제점, 오류코드 설정 적정성, 1일 입력 및 내검 업무량 적정성 여부, 조사필수품 지급현황 입력 시 문제점 등

6) 기타

-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 : 지방청별 가입률 파악 및 사고현황
- 조사용품 부족 또는 추가 필요물품 : 필기류·조사용 가방·조사필수품, 조사표류·지침서·인사장 등

9. 조사 질의응답 체계

9-1 조사 질의 및 응답체계 운영 방법

□ 조사원, 응답자 등의 조사관련 질의, 응답체계 및 운영방법

-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답변하고 통일된 지침이 전국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하고 상담요원을 배치

- 정확하고 통일된 답변이 가능하도록 상담원에 대한 사전교육 집중 실시
- 사전교육 내용: 지침서, 세부실시계획, 각종 계획서 등의 주요 추진사항과 행정사항
- 조사원 교육시 참석하여 지침서 등 관련업무 숙지 및 친절교육 실시
- 콜센터 운영기간/시간: 7.11.~8.1. / 09:00~18:00(월~금)

9-2 주요 질의 응답·오류사례 수집 및 관리

□ 주요 질의 응답·오류사례 추적 및 관리 방법

- 콜센터 상담요원이 전화상담 일지 작성하여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집계분석 등에 활용
- 나라통계시스템 질의응답 메뉴를 이용하여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들이 질문을 게시하고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등록

10. 조사(또는 응답) 대상

10-1 적격 조사(또는 응답) 대상의 지정 이유

□ 적격 응답자의 지위 및 지정 이유

- 수급자 및 가족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재가/시설)와 미이용자로 구분
 - ※ 복지용구만 이용자, 특별현금급여 이용자는 조사 대상 아님
 - 수급자 본인이 신체적, 인지적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응답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응답자 우선순위(1순위: 가족, 2순위: 요원)에 따라 대리응답 가능
 - 수급자 가족은 수급자(이용자만) 조사 완료 후 수급자의 주 보호자 1명을 대상으로 조사(전화조사도 가능), 명부 상 보호자에 구애받지 않고 응답 우선순위에 따라 파악
 - 우선순위가 앞선 응답자가 조사 불응인 경우에만 다음 순위 응답자로 넘어가며, 단순 불응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설득을 통해 응답 요청하고 3회 이상 불응시 최종 불응 처리

* 수급자(이용자) 항목 응답자 우선순위

재가급여 이용자	시설급여 이용자
1) 수급자 본인(의사소통 가능) 2) 수급자의 동거 가족 3) 수급자의 비동거가족(근거리) 4)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1) 수급자 본인(의사소통 가능) 2) 수급자의 동거 가족 3)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 수급자(미이용자) 항목 응답자 우선순위

재가 거주 미이용자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외 시설 거주 미이용자
1) 수급자 본인(의사소통 가능) 2) 수급자의 동거 가족 3) 수급자의 비동거가족(근거리)	1) 수급자 본인(의사소통 가능) 2) 수급자의 가족

○ 장기요양기관

- 기관 조사표 응답자는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로 한정
- 재가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 방문형 재가급여(방문 ○ ○)는 한 기관이 여러 급여유형 제공 가능
 - * 복지용구만 제공 기관은 조사 대상 아님
- 시설 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 치과위생사 조사 대상 아님

□ 대리응답 허용여부와 허용하는 경우 사유

○ 대리응답 허용 여부

- 수급자 조사에서만 대리응답 허용

○ 대리응답 허용하는 경우 사유

- 수급자 본인이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불능), 수급자에 대한 객관적 정보(생활·건강 상태, 장기요양급여이용 등)를 묻는 항목에 한하여(조사표에 표시) 응답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리응답 가능

○ 대리응답 대표적 사례

1.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2.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3. 언어장애나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4. 치매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인지기능 저하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5. 와병(병으로 자리에 누움) 상태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6. 기타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으로 수급자가 사실상 응답 불능인 경우
 - 단, 대리응답자는 만 18세 이상(성인)이면서 수급자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수급자의 가족, 장기요양요원(친구나 이웃 등은 대리응답 불가능)

* 대리응답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지침서 pp.20~22 참고

10-2 기억응답과 관련된 검토 결과

□ 응답자 기억응답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처리방안

- 조사실시기간과 조사대상기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기억응답을 최소화

- 서비스 이용 횟수 및 본인부담금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DB에서 확인 가능하나, 현재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공단DB와의 연계방안 등 검토 필요

11. 무응답 대처

11-1 항목무응답 대처 방법

□ 항목무응답에 대처하는 방법

- 조사표의 흐름에 따라 문항 간 연계 항목이 다수이므로, 무응답을 허용할 시 이후 연계 항목을 응답할 수 없으므로 항목무응답은 허용하지 않음

11-2 단위무응답 대처 방법

□ 단위무응답에 대처하는 방법

-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조사 대상처의 특성에 따라 방문 시간대를 정하여, 대상자와 약손 방문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준수
- 조사대상처를 3회(1일 1회 기준) 이상 방문하여 설득하고, 그래도 응답을 거부할 경우 조사관리자 또는 담당공무원을 동행하여 설득
-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응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원은 지체없이 조사관리자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조사관리자나 담당공무원은 사실 확인 후 방문기록부에 사유를 기입하고 불응 또는 불능 처리

12. 표본대체

12-1 표본대체 허용 기준

- 표본대체 허용 여부
 - 허용
 - 조사대상이 부적격이나 불응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하여 조사 진행(대체명부 제공)

12-2 표본대체 절차 및 방법

- 표본의 조사 불능 상태로 판단(조사대상 사망, 퇴직, 불응 등) → (조사원) 표본대체 요구 → 국가데이터처 담당공무원(나라통계시스템에서 대체 명부 선정) → 조사원에게 전달

12-3 표본대체 기준, 절차 및 방법

- 조사 불능시 대체할 경우는 조사명부의 급여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함.
 - 조사명부의 대상자 급여유형에 변동이 있을 경우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해 대체하고, 대체 방법은 동일 그룹내에서 대체 하여야 함

13. 조사 실시 결과

13-1 조사방법별 응답비율

○ 조사방법별 응답비율

	면접조사	자기기입	전화조사	인터넷
수급자(가족)	94.4%(37.9%)	5.6%(4.0%)	-(33.1%)	-
기관조사	25.7%	41.3%	-	33.1%
요원조사	67.3%	18.4%	-	14.3%

13-2 조사방법별 응답 결과 차이 분석 · 검토

○ 조사방법별 응답결과에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수급자

	면접조사	자기기입	인터넷
성별(남성비율)	27.7%	27.7%	-
유배우율	31.4%	31.3%	
자가비율	64.2%	66.0%	
대도시 거주비율	35.3%	36.9%	

○ 기관조사

	면접조사	자기기입	인터넷
급여유형(방문요양비율)	29.9%	22.7%	25.2%
대도시 비율	32.7%	31.3%	39.6%
평균이용자수	30.7명	32.6명	36.1명

○ 요원조사

	면접조사	자기기입	인터넷
성별(남성비율)	5.2%	7.1%	9.5%
직종(요양보호사비율)	94.1%	81.2%	74.3%
평균 종사기간	4.94년	4.46년	4.09년

13-3 조사 파라미터 기록 · 관리 여부

□ 수급자

○ (응답유형 및 대리응답) 응답자 4,423명 중 본인응답은 42.8%(1,895명), 대리응답 57.2%(2,528명)임

- 가족 대리응답은 딸 14.1%(624명), 아들 11.3%(501명)순이며, 장기요양요원 대리응답은 19.3%(855명)임

응답유형		응답완료(명)	구성비(%)
계		4,423	100.0
본인응답		1,895	42.8
대리 응답	수급자의 배우자	272	6.1
	수급자의 아들	501	11.3
	수급자의 며느리	195	4.4
	수급자의 딸	624	14.1
	수급자의 사위	15	0.3
	수급자의 손자녀(배우자)	13	0.3
	수급자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	53	1.2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855	19.3

- (방문횟수) 완료 가구의 방문횟수는 1회 방문 83.6%, 2회 방문 13.2%, 3회 방문 3.2% 순으로 평균 방문횟수는 1.2회임

구 분		합계 (a)	1회	2회	3회	방문일수 (b)	평균 방문횟수 (b/a)
완 료	가구	4,423	3,696	584	143	5,293	1.2
	비율(%)	100.0	83.6	13.2	3.2		

- (조사소요시간) 재가급여 31~40분 33.4%, 시설급여 21~30분 33.9%, 미이용자 20분 이내 41.8%가 가장 높음

구분		합계	20분이내	21~30분	31~40분	41분이상
조사소요 시간	재가	2,369	587	786	791	205
	비율(%)	100.0	24.8	33.2	33.4	8.7
	시설	1,573	482	533	461	97
	비율(%)	100.0	30.6	33.9	29.3	6.2
	미이용자	481	201	147	105	28
	비율(%)	100.0	41.8	30.6	21.8	5.8

□ 장기요양기관

- (방문횟수) 완료 기관의 방문횟수는 1회 방문 67.4%, 2회 방문 25.2%, 3회 방문 7.4% 순으로 평균 방문횟수는 1.4회임

구 분		합계 (a)	1회	2회	3회	방문일수 (b)	평균 방문횟수 (b/a)
완 료	기관	1,953	1,316	493	144	2,734	1.4
	비율(%)	100.0	67.4	25.2	7.4		

○ (조사소요시간) 21~30분 39.5%, 31~40분 32.1%, 20분 이내 21.1% 순임

구분		합계	20분 이내	21~30분	31~40분	41분 이상
조사소요시간	기관	1,953	412	772	627	142
	비율	100.0	21.1	39.5	32.1	7.3

□ 장기요양요원

○ (방문횟수) 완료 요원의 방문횟수는 1회 방문 74.7%, 2회 방문 20.5%, 3회 방문 4.7%이며, 평균 방문횟수는 1.3회임

구분		합계 (a)	1회	2회	3회	방문일수 (b)	평균 방문횟수 (b/a)
완 료	요원	4,302	3,215	884	203	5,592	1.3
	비율(%)	100.0	74.7	20.5	4.7		

○ (조사소요시간) 21~30분 43.2%, 20분 이내 29.1%, 31~40분 23.8% 순임

구분		합계	20분 이내	21~30분	31~40분	41분 이상
조사소요시간	요원	4,302	1,252	1,860	1,026	164
	비율(%)	100.0	29.1	43.2	23.8	3.8

14. 행정자료의 수집 및 관리

14-1 행정자료 입수주기 또는 갱신주기 및 정시성 [통계작성기관 기준]

□ 행정자료의 입수방법 및 경로, 입수주기, 법적 근거

○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현황과 보완적 활용을 위해 관리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로 입수하였고, 해당 실태조사가 법 제6조의2에 의거 3년마다 진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주기로 입수할 예정임

Ⅳ. 통계처리 및 분석

1. 자료코딩

1-1 자료 코드체계 및 코딩(부호화) 방법

☐ 매칭(행정자료와 조사자료 매칭)에 사용하는 변수

- 매칭에 사용하는 변수 : 수급자, 기관 및 요원의 관리번호
- 매칭방법 : EXCEL 프로그램을 활용
- 매칭한계 : 행정자료가 모집단 자료이므로 매칭의 한계는 없음
- 매칭비율 : 행정자료가 모집단 자료이므로 100% 매칭

☐ 방법 및 내용

- 항목변수 : 조사표 보기 문항번호 입력
- 연속(금액, 기간)변수 : 응답값을 그대로 입력

☐ 코드체계

- 조사결과는 조사표상의 부호값 대로 코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데이터처 표준 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

2. 자료입력

☐ 전산입력 방법

- 지방청(사무소)에서 조사관리자가 나라통계시스템에 전산 입력
- 전산입력오류 최소화를 위해 나라통계시스템에 입력범위 설정에 의한 자동 내검 실시

2-1 조사결과 자료의 전산입력 방법

☐ 전산입력 방법

- 지방청(사무소)에서 조사관리자가 나라통계시스템에 전산 입력

2-2 입력 시 오류 검출을 위한 방법

- 전산입력오류 최소화를 위해 나라통계시스템에 입력범위 설정에 의한 자동 내검 실시

2-3 입력매뉴얼(지침서) 첨부

- 입력 매뉴얼 (지침서) 첨부

2-4 자료입력 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 일정 및 방법

○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 일정 및 방법 근거서류 첨부

3. 자료내검

3-1 조사현장 내검 내용 및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

○ 통계조사 검증

- 검증기간 : 2022. 7. 26. ~ 8. 1.(5일간)
- 검증방법 : 조사표(양식 별첨)에 의한 전화검증(전화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대상처 방문)
- 담 당 자 : 지방청/사무소 담당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 검증대상 : 조사원별로 완료 2개 대상처(명부의 10%내외)
조사원별로 조사대상 수급자 명부 일련번호 순으로 1번째, 10번째
※ 해당자 검증 불능 시 그 다음 순(2번째, 11번째)으로 순차적 진행
- 검증 사항(검증 조사표 구성내용) : 공통문항(조사원 및 응답 여부, 조사필수품 수령 여부), 조사표 검증 문항(수급자 조사표 3번/5번 문항)
- 결과 처리 : 허위·부실 사례 발생 시 지방청/사무소 담당자는 해당 조사원이 담당한 전체 대상처에 대해 직접 대상처를 재방문하여 검증 실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사원에게 재조사 조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도급금액 미지급 또는 감액 지급 조치

3-2 입력결과 내검 내용 및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

○ 입력·내검 프로그램(나라통계시스템)

- 기 간 : 6. 13. ~ 11. 30.(개발 및 운영)
- 내 용 : 업무분장, 명부관리, 조사표 입력 및 내용검토, 추진현황 집계, 조사과정 자료(파라데이터) 입력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내용검토 방법

- 대상처별 조사현황과 입력상태, 조사표 작성현황 점검
- 응답유형과 작성된 영역의 일치성, 영역간/문항간 이동경로 점검
- 누락항목 보완, 소득항목 등의 이상치 점검
- 조사항목간 연관성 검토
- 조사표를 참고로 하되 조사표 내용이 미비한 경우 조사관리자 및 업무보조원을 통해 대상처에 직접 질의하여 내용보완 및 수정

○ 내용검토 실시사항

1) 공통사항

- 지시문에 따라 기입되어야 할 문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건너뛰어야 할 항목을 조사하였는지 확인한다.
- 단일선택인데 복수응답을 하였는지 확인한다.
- 조사표 일련번호가 결번이나 중복이 없이 차례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순위로 응답하는 항목은 번호순이 아닌 우선순위로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 숫자를 기입하는 문항의 경우, 단위에 맞게 조사되었는지 어떤 숫자인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기타에 표시된 경우 구체적인 사유가 기입되었는지, 또한 기입된 내용이 다른 응답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포함될 경우, 수정하여 해당보기에 표시하도록 한다.
- 응답내용이 변경된 경우 확실하게 수정하고, 마지막 수정된 값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지 확인하여 자료 입력 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한다.
- 지정된 항목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 없는 항목은 사선 처리한다.
- 조사항목 간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잘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구분, 급여유형 및 직종에 맞게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2) 표지사항

- 조사표 표지에 기입된 “주소, 관리사항”이 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조사표 표지에 기입된 “수급자 성명, 구분, 급여유형”(수급자 및 가족), “응답자 성명, 급여유형”(기관), “응답자 성명, 급여유형, 응답자 직종”(요원)이 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 및 가족 조사표를 대리응답한 경우 “대리응답자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연락처”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행정구역분류코드가 해당 지역에 맞게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원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3) 조사표 사항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조사표>

- 이용 급여유형에 맞게 수급자 항목과 가족 항목을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 가구형태와 가구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예-독거가구는 수급자 본인이 가구주)
- 본인부담금이 “0”원이면 본인부담금 면제를 선택했는지 확인한다.
- 기타 조사항목 간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잘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장기요양기관 조사표>

- 제공 급여유형에 맞게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 기타 조사항목 간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잘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장기요양요원 조사표>

- 제공 급여유형에 맞게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 응답자 직종에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 자격증 항목에 선택했는지 확인한다.
- 기타 조사항목 간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잘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4.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4-1 주요 항목에 대하여 항목무응답률 수치

- 조사표의 흐름에 따라 문항 간 연계 항목이 다수이므로, 무응답을 허용할 시 이후 연계 항목을 응답할 수 없으므로 항목무응답은 허용하지 않음

5. 단위무응답 실태

5-1 단위무응답률 수치

☐ 조사 응답률 현황

(단위: 명, 기관, %)

지방청	응답자 유형				완 료				미 완 료				완료율 (완료/대상처×100)			
	소계	수급자	기관	요원	소계	수급자	기관	요원	소계	수급자	기관	요원	소계	수급자	기관	요원
계	11,000	4,500	2,000	4,500	10,678	4,423	1,953	4,302	322	77	47	198	97.1	98.3	97.7	95.6
경 인	4,935	1,865	931	2,139	4,749	1,827	905	2,017	186	38	26	122	96.2	98.0	97.2	94.3
동 북	1,299	533	226	540	1,282	531	225	526	17	2	1	14	98.7	99.6	99.6	97.4
호 남	1,564	732	278	554	1,521	718	274	529	43	14	4	25	97.3	98.1	98.6	95.5
동 남	1,334	601	230	503	1,327	600	227	500	7	1	3	3	99.5	99.8	98.7	99.4
충 청	1,380	574	249	557	1,345	566	240	539	35	8	9	18	97.5	98.6	96.4	96.8
강 원	488	195	86	207	454	181	82	191	34	14	4	16	93.0	92.8	95.3	92.3

5-2 단위무응답률 산출식

☐ 조사유형별 조사미완료/조사대상 * 100

5-3 주요 하위그룹 및 무응답 사유별 무응답률

☐ 불응 사유별 현황

(단위: 명, 기관, %)

구분	계	사생활·사업상 비밀 노출 기피				바쁘거나 귀찮아서				정부불신				기타			
		소계	수급자	기관	요원	소계	수급자	기관	요원	소계	수급자	기관	요원	소계	수급자	기관	요원
계	155	54	13	8	33	57	10	20	27	13	2	6	5	31	3	8	20

□ 불능 사유별 현황

(단위: 명, 기관, %)

구분	계	장기출타 및 이사로 접촉 불가				빈집				기타			
		소계	수급 자	기관	요원	소계	수급 자	기관	요원	소계	수급 자	기관	요원
계	167	12	5	0	7	2	2	0	0	153	42	5	106

5-4 항목 또는 단위 무응답 발생 시, 응답자와 무응답자의 성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

- 불응/불능 등 단위무응답 발생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후 가중치 조정을 통해 보완

6. 가중치 조정

6-1 설계가중치 산출과정 및 방법

□ 설계가중값 작성

- 본 조사는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장기요양수급자,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을 추출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22년 7월에 이루어졌음. 2022년 1월의 모집단 특성과 2022년 7월의 표본 특성 차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사후 가중값을 산출하였음
- 설계가중값은 표본설계 시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의 역수로 계산하였음

$$w_h^0 = \frac{N_h}{n_h}$$

- $h = 1, 2, \dots, H$: 설계층을 나타내는 첨자
- N_h : h 층의 전체 수급자/기관/요원 수
- w_h^0 : h 층의 설계 가중값
- n_h : h 층의 표본 수급자/기관/요원 수

6-2 무응답 가중치 조정과정 및 방법

□ 무응답 보정

- 조사 항목별 무응답 조정
 - ① (장기요양 수급자 무응답 조정) 설계시 층(급여유형, 10개)과는 별도로 무응답 조정용 층(6개)을 구성함
 - 단기요양에서만 응답율이 낮아 단기요양 여부로 2개층을 구성하고, 2단계 내재적 층화변수(인정등급) 3개층과 결합하여 6개 무응답층 구성
 - ② (장기요양 기관 무응답 조정)
 - 목표 기관수(2,000개)를 달성하지 못한 무응답 기관수(47개)는 약 2.3%로 비율이 낮으며, 특성별 무응답률 차이가 크지 않아 무응답 조정하지 않음

- ③ (장기요양 요원 무응답 조정) 설계시 층(급여유형*직종, 26개)과는 별도로 무응답 조정용 층(16개)을 구성함
- 방문요양 및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30명 미만)에서 응답율이 낮아 방문요양 및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 여부로 4개층을 구성하고, 2단계 내재적 층화변수(직종) 4개층과 결합하여 16개 무응답층 구성
- (무응답 조정방법) 무응답층을 구성하여 무응답 보정 계수를 계산한 후 설계가중값에 적용하여 무응답 조정 실시

$$w_h^1 = w_h^0 \times \frac{1}{\rho_h}$$

- w_h^0 : 설계 가중값
- ρ_h : h층의 응답 확률
- $\frac{1}{\rho_h}$: 무응답 조정 계수
- w_h^1 : 무응답 조정 가중값

6-3 사후가중치 조정과정 및 방법

□ 사후조정(벤치마크 조정)

- 특정 변수에 대한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분포를 일치시켜, 추정값의 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가중값 조정
- 벤치마크 자료원 : 22년 5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청구 내역
-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비포함 차이(Coverage Error)를 보정
- (레이킹 조정) 장기요양실태조사 공표단위와 집계 또는 추정이 가능한 특성의 공표상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레이킹비 조정

- 레이킹 기준변수(수급자)

① 급여유형	: 10개 급여유형(미이용 포함)
② 성별	: 남자/ 여자
③ 연령대	: 65세미만 / 65~69세 / 70~74세 / 75~79세 / 80~84세/85~89세/90세이상
④ 인정등급	: 1급/ 2급/ 3급/ 4급/ 5급/ 인지지원
⑤ 지역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레이킹 기준변수(기관)

① 급여유형	: 9개 급여유형
② 설립유형	: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③ 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레이킹 기준변수(요원)

- ① 급여유형 : 9개 급여유형
 ② 직종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③ 설립유형 :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④ 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표> 표본 및 벤치마크 모집단 분포(수급자)

(단위: %, %p)

구분			설계 가중표본	무응답조정 가중표본(A)	벤치마크(B)	B-A
합계			100.0	100.0	100.0	
급여유형	재가	방문요양	40.8	40.8	41.2	0.4
		방문목욕	7.2	7.2	7.1	0.0
		방문간호	1.1	1.1	1.0	0.0
		주야간보호	11.4	11.3	11.3	0.0
		단기보호	0.1	0.1	0.1	0.0
	시설	공동생활가정	1.4	1.4	1.3	-0.1
		30명미만	4.5	4.5	4.5	0.0
		30~49명	3.3	3.3	3.4	0.2
		50명이상	8.0	8.0	7.5	-0.5
	미이용		22.5	22.5	22.5	0.0
성별	남자		28.1	28.1	27.7	-0.4
	여자		71.9	71.9	72.3	0.4
연령층	65세미만		2.8	2.8	2.8	0.0
	65~69세		4.3	4.3	4.5	0.2
	70~74세		7.7	7.7	7.9	0.2
	75~79세		14.0	14.0	14.3	0.4
	80~84세		24.1	24.0	26.3	2.2
	85~89세		28.7	28.7	26.7	-2.0
	90세이상		18.5	18.5	17.5	-1.1
인정등급	1등급		4.7	4.8	4.7	-0.1
	2등급		9.7	9.8	9.2	-0.6
	3등급		27.9	28.0	27.4	-0.6
	4등급		44.7	44.8	45.7	1.0
	5등급		10.5	10.3	10.9	0.6
	인지지원		2.4	2.4	2.1	-0.3
지역	대도시		34.3	34.3	35.4	1.1
	중소도시		32.7	32.7	32.7	0.0
	농어촌		33.0	32.9	31.9	-1.1

<표> 표본 및 벤치마크 모집단 분포(기관)

(단위: %, %p)

구분			설계 가중표본(A)	벤치마크(B)	B-A
합계			100.0	100.0	
급여성	재가	방문요양	47.8	47.7	0.0
		방문목욕	12.2	12.4	0.2
		방문간호	1.7	1.7	0.0
		주야간보호	16.7	16.7	0.0
		단기보호	0.2	0.2	0.0
	시설	공동생활가정	6.5	6.2	-0.3
		30명미만	8.1	8.2	0.1
		30~49명	3.0	3.2	0.2
		50명이상	3.8	3.6	-0.2
설립유형		개인	84.5	84.0	-0.5
		법인	14.4	14.8	0.4
		지방자치단체	0.9	0.9	0.0
		기타	0.2	0.3	0.1
지역		대도시	36.1	36.7	0.6
		중소도시	36.9	37.1	0.2
		농어촌	27.0	26.2	-0.8

<표> 표본 및 벤치마크 모집단 분포(요원)

(단위: %, %p)

구분			설계 가중표본	무응답조정 가중표본(A)	벤치마크(B)	B-A
합계			100.0	100.0	100.0	
급여성	재가	방문요양	64.6	64.6	67.1	2.5
		방문목욕	3.5	3.5	3.4	-0.1
		방문간호	0.3	0.3	0.3	0.0
		주야간보호	8.1	8.1	7.6	-0.6
		단기보호	0.1	0.1	0.1	0.0
	시설	공동생활가정	1.9	1.9	1.7	-0.2
		30명미만	6.2	6.2	6.1	-0.2
		30~49명	4.5	4.5	4.4	-0.1
		50명이상	10.7	10.7	9.4	-1.4
직종	간호(조무)사		4.0	4.1	3.8	-0.3
	물리(작업)치료사		0.6	0.6	0.6	0.0
	사회복지사		3.8	3.7	6.7	3.0
	요양보호사		91.6	91.6	88.9	-2.6
설립유형	개인		79.7	79.7	80.5	0.9
	법인		18.8	18.8	18.0	-0.8
	지방자치단체		1.3	1.3	1.2	-0.2
	기타		0.2	0.2	0.3	0.1
지역	대도시		38.7	38.7	40.0	1.4
	중소도시		36.7	36.7	37.1	0.4
	농어촌		24.6	24.6	22.9	-1.7

※ 레이킹비(갈퀴비) 조정

최종 가중값 $w_i^F = w_i^{(T)}$

· w_i^F : 표본 i 의 최종 가중값

· $w_i^{(T)}$: 표본 i 의 T 번째 반복비례 가중값(제약식과 수렴 조건 충족)

제약식(벤치마크 목표) - 3차원 분포인 경우

$$N_{a..} = \hat{N}_{a..} \left(= \sum_{b=1}^B \sum_{c=1}^C \hat{N}_{abc} = \sum_{i \in a} w_i \right)$$

$$N_{.b.} = \hat{N}_{.b.} \left(= \sum_{a=1}^A \sum_{c=1}^C \hat{N}_{abc} = \sum_{i \in b} w_i \right)$$

$$N_{..c} = \hat{N}_{..c} \left(= \sum_{a=1}^A \sum_{b=1}^B \hat{N}_{abc} = \sum_{i \in c} w_i \right)$$

· a, b, c : 벤치마크 차원(변수), $a = 1, \dots, A, b = 1, \dots, B, c = 1, \dots, C$

· N_{abc} : 벤치마크 그룹(a, b, c)의 모수

· $\hat{N}_{abc}$: 벤치마크 그룹(a, b, c)의 모수에 대한 추정값

· w_i : 표본 i 의 가중값

수렴 조건 - 수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수행

절대
차이

$$\sum_{a=1}^A \left| \hat{N}_{a..}^{(t)} - N_{a..} \right| + \sum_{b=1}^B \left| \hat{N}_{.b.}^{(t)} - N_{.b.} \right| + \sum_{c=1}^C \left| \hat{N}_{..c}^{(t)} - N_{..c} \right| < \varepsilon \quad \text{또는}$$

$$\sum_{a=1}^A \left| \hat{N}_{a..}^{(t)} - N_{a..} \right| < \varepsilon \quad \& \quad \sum_{b=1}^B \left| \hat{N}_{.b.}^{(t)} - N_{.b.} \right| < \varepsilon \quad \& \quad \sum_{c=1}^C \left| \hat{N}_{..c}^{(t)} - N_{..c} \right| < \varepsilon$$

※ 임계값($\varepsilon=0.0001 \sim 0.000001$)과 조건식(절대 차이, 상대비율, 상대비 등)은 제약식을 충족시키는 형태로 분석자가 설정 가능

7. 통계추정 산출식 및 내용

7-1 [표본조사]추정하고자 하는 주요 모수

☐ 평균 추정

7-2 [표본조사]추정치를 계산하는 산출식

☐ 평균 추정

$$\bar{y}_G = \frac{\sum_{h=1}^H \sum_{i=1}^{n_h} w_{hi} y_{hi} I[c_{hi} \in G]}{\sum_{h=1}^H \sum_{i=1}^{n_h} w_{hi} I[c_{hi} \in G]}$$

- $h = 1, 2, \dots, H$: 설계층을 나타내는 첨자
- $i = 1, 2, \dots, n_h$: h 층 내 표본
- w_{hi} : h 층 i 번째 표본의 가중값
- y_{hi} : h 층 i 번째 표본의 관측값
- $I[c_{hi}] = \begin{cases} 1 & \text{if } I[c_{hi} \in G] \\ 0 & \text{otherwise} \end{cases}$
- G : 분류 (급여유형, 지역 등)

8. 표본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표본조사)

☐ 분산 추정

$$\widehat{Var}(\hat{Y}) = \frac{\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w_{hiG}(\bar{y}_{hiG} - \bar{y}_G) - \frac{1}{n_h} \sum_{s=1}^{n_{hi}} w_{hsG}(\bar{y}_{hsG} - \bar{y}_G)]^2}{(\sum_{h=1}^H \sum_{i=1}^{n_h} w_{hiG})^2}$$

☐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RSE)

$$\widehat{SE}(\bar{y}_G) = \sqrt{\widehat{Var}(\bar{y}_G)}$$
$$\widehat{RSE} = \frac{\widehat{SE}(\bar{y}_G)}{\bar{y}_G} \times 100$$

9-1 주요 항목에 대한 분산, 표준오차 등의 추정 방법

1. 평균 추정

$$\bar{y}_G = \frac{\sum_{h=1}^H \sum_{i=1}^{n_h} w_{hi} y_{hi} I[c_{hi} \in G]}{\sum_{h=1}^H \sum_{i=1}^{n_h} w_{hi} I[c_{hi} \in G]}$$

- $h = 1, 2, \dots, H$: 설계층을 나타내는 첨자
- $i = 1, 2, \dots, n_h$: h 층 내 표본
- w_{hi} : h 층 i 번째 표본의 가중값
- y_{hi} : h 층 i 번째 표본의 관측값
- $I[c_{hi}] = \begin{cases} 1 & \text{if } I[c_{hi} \in G] \\ 0 & \text{otherwise} \end{cases}$
- G : 분류 (급여유형, 지역 등)

2. 분산 추정

$$\widehat{Var}(\bar{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 \in h}^{n_h} (y_{hi} - \bar{y}_h)^2, \quad \bar{y}_h = \frac{\sum_{i \in h}^{n_h} w_i y_i}{n_h}$$

3.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RSE)

$$\widehat{SE}(\bar{y}_G) = \sqrt{\widehat{Var}(\bar{y}_G)}$$
$$\widehat{RSE} = \frac{\widehat{SE}(\bar{y}_G)}{\bar{y}_G} \times 100$$

※ 표본오차란 표본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로,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 및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RSE) 등으로 표현 가능하다.

9-2 주요 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등

(예) (의사진단) 만성질환개수

구분	상대표준오차(RSE)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없음	21.2	0.5	1.2
1개	5.2	9.6	11.8
2개	3.5	19.9	22.8
3개	3.1	23.9	27.0
4개 이상	2.2	39.9	43.5

(예) (지난 1개월간)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평균 횟수

구분	상대표준오차(RSE)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없음	2.3	36.4	39.8
있음	1.4	60.2	63.6
평균(회)	3.0	1.9	2.1

9-3 주요 항목의 오차 특성과 이용 시 고려사항

- 2022년 조사 문항 중 대표적인 문항의 상대표준오차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대표준오차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항의 특성별(예, 연령, 급여유형별 등) 분석의 경우 해당 응답대상자의 수가 적거나 상대표준오차의 범위가 25% 이상으로 나타나 해석의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급자 조사의 만성질환개수(없음, 1개, 2개, 3개, 4개 이상) 문항에 대한 결과 공표
 - 전체, 성별(남,녀),연령별(65세 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 이상),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장기요양인정등급(1등급, 2,3,4,5, 인지지원등급), 급여유형(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10~29인, 노인요양시설 30~49인, 노인요양시설 50인 이상), 치매진단여부(예, 아니오)의 총 30개의 그룹별 결과값을 갖게 됨
 - 따라서 만성질환 개수에 대한 결과 값은 30개 특성별 그룹별 만성질환개수범주(없음, 1개, 2개, 3개, 4개 이상)의 값을 갖게 되어 총 150개 값이 산출,
 - 그에 대한 상대표준 오차와 해당 조사응답자수를 기준으로 결과의 신뢰도를 판단. 해당 항목은 150개 항목 중 121개인 80.7%는 “신뢰도 높음”이며, 8.7%는 “신뢰도 다소 낮음”, 7.3%는 신뢰도 낮음에 해당하며, 해당되는 표본이 없는 항목은 3.3%
- 이와같은 결과는 본 조사 결과 해석에 있어서 해당 응답자 규모가 10인 미만의 경우 조사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함을 의미. 따라서 본 조사 결과를 활용할때는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표〉 조사항목의 상대표준오차를 기준으로 신뢰수준 평가

구분		항 목 (개, %)									
		합계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낮음		신뢰도 낮음		표본없음	
수 급 자	(의사진단) 만성질환개수	150	100	121	80.7	13	8.7	11	7.3	5	3.3
	(재가급여)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수 (중복이용 포함)	100	100	85	85.0	13	13.0	2	2.0	0	0.0
	(시설급여)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총액	144	100	130	90.3	13	9.0	1	0.7	0	0.0
	(미이용자)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	189	100	67	35.4	65	34.4	44	23.3	13	6.9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장기요양급여의 도움 정도: 신체적 부양부담 완화	150	100	84	56.0	27	18.0	27	18.0	12	8.0
기 관	운영형태(단독 또는 병설)	34	100	31	91.2	2	5.9	1	2.9	0	0.0
	(재가급여) 수급자 현황	78	100	51	65.4	15	19.2	4	5.1	8	10.3
	(시설급여) 수급자 현황	72	100	36	50.0	11	15.3	11	15.3	14	19.4
요 원	월평균 근로시간	116	100	89	76.7	13	11.2	14	12.1	0	0.0
	월평균 근로일수	116	100	85	73.3	21	18.1	10	8.6	0	0.0
	업무내용 만족도	145	100	111	76.6	23	15.9	10	6.9	1	0.7

주: 표본조사 정확도 평가 기준(가구통계기준)

(참고)

구분	RSE<25%		25%≤RSE<50%	RSE≥50%
	n≥10	n<10		
신뢰도수준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v.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해석방법

1-1 주요 분류 수준별 세분화된 공표통계

☐ 수급자 및 가족 조사 공표통계 세분화 기준

- 개별 문항별 ①장기요양급여이용유무별(이용자, 미이용자), ② 성별(남성, 여성), ③연령별(5세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이상), ④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⑤ 장기요양인정등급별(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⑥급여유형별(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10-29명), 노인요양시설(30-49명),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미이용), ⑦치매여부별(예, 아니오) 세분화하여 공표됨

☐ 장기요양기관 조사 공표통계 세분화 기준

- 개별 문항별 ①급여유형별(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10-29명), 노인요양시설(30-49명),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② 운영주체별(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③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세분화하여 공표됨

☐ 장기요양요원 조사 공표통계 세분화 기준

- 개별 문항별 ①성별(남성, 여성), ②연령별(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③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④직종별(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⑤급여유형별(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10-29명), 노인요양시설(30-49명),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⑥소속기관운영주체별(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세분화하여 공표됨

1-2 통계 공표범위의 적정성

□ 장기요양실태조사보고서(p. 87) 상대표준오차 제시

〈표〉 조사항목의 상대표준오차를 기준으로 신뢰수준 평가

구분		항 목 (개, %)									
		합계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낮음		신뢰도 낮음		표본없음	
수 급 자	(의사진단) 만성질환개수	150	100	121	80.7	13	8.7	11	7.3	5	3.3
	(재가급여)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수 (중복이용 포함)	100	100	85	85.0	13	13.0	2	2.0	0	0.0
	(시설급여)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총액	144	100	130	90.3	13	9.0	1	0.7	0	0.0
	(미이용자)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	189	100	67	35.4	65	34.4	44	23.3	13	6.9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장기요양급여의 도움 정도:신체적 부양부담 완화	150	100	84	56.0	27	18.0	27	18.0	12	8.0
기 관	운영형태(단독 또는 병설)	34	100	31	91.2	2	5.9	1	2.9	0	0.0
	(재가급여) 수급자 현황	78	100	51	65.4	15	19.2	4	5.1	8	10.3
	(시설급여) 수급자 현황	72	100	36	50.0	11	15.3	11	15.3	14	19.4
요 원	월평균 근로시간	116	100	89	76.7	13	11.2	14	12.1	0	0.0
	월평균 근로일수	116	100	85	73.3	21	18.1	10	8.6	0	0.0
	업무내용 만족도	145	100	111	76.6	23	15.9	10	6.9	1	0.7

주: 표본조사 정확도 평가 기준(가구통계기준)

(참고)

구분	RSE<25%		25%≤RSE<50%	RSE≥50%
	n≥10	n<10		
신뢰도수준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1-3 주요 통계표, 그래프

○ 공표되는 주요통계표 현황

- 수급자 및 가족(34개)

- A1. 수급자 및 가족 일반특성
- A2. (수급자) 만성질환개수
- A3. (수급자) 의료기관 이용여부 및 평균횟수
- A4. (수급자) 보행·이동능력
- A5. (수급자) 장기요양 급여유형 결정주체
- A6. (재가급여 이용자) 가구형태
- A7. (재가급여 이용자) 현 주거공간 내 편의시설 설치 현황
- A8. (재가급여 이용자)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수(중복이용 포함)
- A9. (재가급여 이용자)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1일 평균 이용시간(중복이용 포함)
- A10. (재가급여 이용자) 복지용구 이용 여부 및 평균 개수
- A11. (재가급여 이용자) 월평균 본인부담금
- A12. (재가급여 이용자) 재가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A13. (재가급여 이용자)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 습득 경로
- A14. (재가급여 이용자) 장기요양기관 계약시 우선 고려사항
- A15. (재가급여 이용자) 급여유형별 전반적인 만족도

- A16. (시설급여 이용자) 현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전 거주형태
- A17. (시설급여 이용자) 현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기간
- A18. (시설급여 이용자)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총액
- A19. (시설급여 이용자)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 습득 경로
- A21. (시설급여 이용자) 장기요양기관 계약시 우선 고려사항
- A22. (시설급여 이용자) 전반적인 만족도
- A23. (미이용자) 현재 거주형태
- A24. (미이용자) 일상생활이나 신체수발 주 도움자(1순위)
- A25. (미이용자)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이유(1순위)
- A26. (미이용자) 향후 장기요양급여 이용의향
- A27.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수급자와의 관계
- A28.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수급자와 동거 여부
- A29.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 습득 경로
- A30.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장기요양기관 계약시 우선 고려사항
- A3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납부자
- A32.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장기요양급여의 도움 정도
- A33.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A34.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 습득 경로

- 장기요양기관(15개)

- B1. 장기요양기관 일반특성
- B2. 운영형태(단독 또는 병설)
- B3. (전체) 수급자 모집의 어려움
- B4. (전체) 인력채용의 어려움
- B5. (전체) 장기요양기관 재정 운영의 어려움
- B6. (전체) 장기요양보험 정책변화 대응의 어려움
- B7. (전체) 수급자 상담 및 사례관리 어려움
- B8. (전체) 인력채용이 어려운 이유
- B9. (재가급여 기관) 수급자 현황
- B10. (재가급여 기관) 직원 현황
- B11. (시설급여 기관) 수급자 현황
- B12. (시설급여 기관) 직원 현황
- B13. (시설, 단기보호) 야간근무 현황
- B14. (시설, 단기보호) 전문돌봄 제공현황 : 특별침실(임종, 감염병 등) 마련 여부
- B15. (시설, 단기보호) 전문돌봄 제공현황:소단위 돌봄(유닛케어) 운영 여부
- B16. (방문형)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수시 또는 야간 방문 서비스 운영

- 장기요양요원(18개)

- C1. 장기요양요원 일반특성
- C2. 월평균 근로시간
- C3. 월평균 근무일수
- C4. 장기요양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사회보험 가입률
- C5. 장기요양업무 수행 관련 질환이나 사고 경험률

- C6. 장기요양업무 관련 교육참여율
- C7. 근로시간 만족도
- C8. 임금수준 만족도
- C9. 업무내용 만족도
- C10. 지난 1년간 이직 경험 및 이직 횟수
- C11. 이직의향
- C12. 경력개발 및 승진기회 만족도
- C13.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도
- C14. 업무전반에 대한 만족도
- C15.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 근무기간(경력기간)
- C16. 고용형태
- C17.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지난 1개월 동안 담당 수급자수
- C18.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지난 1개월 동안 담당수급자수

1-4 공표되는 통계의 해석방법 및 이용 시 유의사항

□ 주요 통계표, 그래프, 해석방법 및 이용시 유의사항

- 주요 통계표: 모든 조사항목에 대해 빈도분석 통계표를 일반특성별로 제시
- 예시 : (수급자) 수급자의 일반특성

(단위: %, 명)

특성1	특성2	빈도	비율
전체		1,059,394	100.0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820,882	77.5
이용유무	미이용자	238,512	22.5
성별	남성	293,215	27.7
	여성	766,179	72.3
연령대	65세 미만	29,954	2.8
	65-69세	47,736	4.5
	70-74세	83,908	7.9
	75-79세	151,556	14.3
	80-84세	278,080	26.3
	85-89세	283,142	26.7
	90세 이상	185,018	17.5
지역	대도시	375,081	35.4
	중소도시	346,547	32.7
	농어촌	337,766	31.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9,560	4.7
	2등급	97,125	9.2
	3등급	290,239	27.4
	4등급	484,423	45.7
	5등급	115,723	10.9
	인지지원등급	22,324	2.1
급여유형	방문요양	436,678	41.2
	방문목욕	75,609	7.1
	방문간호	11,046	1.0
	주야간보호	119,740	11.3
	단기보호	613	0.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742	1.3
	노인요양시설(10-29명)	47,921	4.5
	노인요양시설(30-49명)	35,968	3.4

특성1	특성2	빈도	비율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79,565	7.5
	미이용	238,512	22.5
치매 여부	예	576,808	54.5
	아니오	482,586	45.6

○ 예시 :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기관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특성1	특성2	기관수 (개소)	9명 이하(%)	10-29명(%)	30-49명(%)	50-69명(%)	70-99명(%)	100명이상(%)
전체		21,824	15.4	36.8	25.8	11.4	7.1	3.6
급여유형	방문요양	13,228	12.4	36.4	25.1	13.7	8.7	3.7
	방문목욕	3,425	31.2	18.8	23	11.8	8.8	6.5
	방문간호	483	20	34.2	17.6	13.2	7.9	7.1
	주야간보호	4,630	11.2	51.4	30.8	4.6	1.3	0.6
	단기보호	58	68.5	28.1	3.4	0	0	0
운영주체	개인	18,709	15.9	36.4	26.6	11.1	7.1	2.9
	영리법인	1,002	11.4	23.8	26.8	22.6	8.3	7.3
	비영리법인 ¹⁾	2,080	13.1	45.5	18.1	9.1	6.2	7.9
	기타	33	0	100	0	0	0	0
지역	대도시	8,604	17.8	34.8	26.3	10.4	8.2	2.5
	중소도시	7,988	14.8	38.6	25.6	11.8	5.6	3.5
	농어촌	5,232	12.2	37.1	25.2	12.6	7.6	5.3

주: 1)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 예시 : (장기요양요원) 업무내용만족도

(단위: %, 명)

특성1	특성2	빈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478,556	8	42	37.1	10.4	2.5
성별	남성	29,360	9.4	42.1	36.7	9.5	2.4
	여성	449,196	7.9	42	37.1	10.4	2.5
연령대	29세 이하	5,136	14.9	31.5	49.4	3.5	0.7
	30-39세 이하	10,286	16.7	39.5	29.9	10.1	3.8
	40-49세 이하	33,947	12.9	43.5	35.7	6.2	1.6
	50-59세 이하	128,150	7	43.5	37.8	8.9	2.9
	60-69세 이하	231,031	7.4	41.2	36.6	12.2	2.5
	70세 이상	70,005	7.6	42.4	38.2	9.8	1.9
지역	대도시	191,446	6.2	37.1	43.2	11.6	2
	중소도시	177,561	10.1	44	31.9	11	3.1
	농어촌	109,549	7.8	47.6	35	7.3	2.3
직종	요양보호사	425,581	7.8	41.7	37.5	10.5	2.6
	사회복지사	32,107	11	44.5	32.8	9.6	2.1
	간호(조무)사	18,015	7.8	44.8	36.8	9.1	1.6
	물리(작업)치료사	2,853	11	51.4	33.1	4	0.6
급여 유형	방문요양	321,012	8	42.3	36.2	10.6	2.9
	방문목욕	16,444	8.3	36.4	39.9	14	1.3
	방문간호	1,384	12.1	53.1	27.2	5.4	2.2

특성1	특성2	빈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36,167 279	10.9 5.9	44.9 35.1	35.5 48.1	7.4 5.2	1.3 5.8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정	8,108	7	43.9	36.7	11.6	1
	노인요양시설(10-29 명)	29,119	7.6	43	38.4	9.2	1.9
	노인요양시설(30-49 명)	21,256	7.3	41.6	40.2	9.5	1.4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44,787	6.4	38.7	42	10.8	2.1
소속기 관 운영주 체	개인	368,506	7.9	42.1	37.6	9.7	2.8
	영리법인	37,259	10.2	37.6	38.3	12.4	1.5
	비영리법인	68,212	7.9	44	33.2	13.2	1.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580	3.8	42.8	48.4	4.9	0

○ 해석방법 및 이용시 유의사항

-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여 전체 합계가 소계와 차이를 보이거나 해당 행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응답유형에 대한 정확한 기술: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모두 포함한 분석인지를 명시하여, 이용자가 분석 시 대리응답을 포함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 노인의 건강·기능상태 파악에 있어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리응답을 받음
 - 대리응답에도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조사표 구성시 장기요양요원 대리응답, 가족 대리응답가능 문항등을 제시하였음
 - 단, 만족도 등의 주관적인 응답을 필요로 하는 문항은 본인응답만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
- 분석표 별로 조사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이용자가 이용시 혼동하지 않도록 함
 - 예: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여부 및 평균 개수, (본인응답)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시 우선 고려사항 등
- 빈도분석 통계표는 ‘%’ 를 기본으로 하고 전체 응답자수는 별도 표기하여 어느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함
- 통계표마다 단위를 표기하여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용시 유의사항은 ‘주석’으로 제시하여 해석상 착오를 방지하였음

1-5 연도별(시계열) 통계결과 및 분석결과 관리

□ 3년 주기 실태조사로 조사문항별 조사년도별 결과 비교 제시

- 해당년도의 조사결과보고서(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발간 및 국가통계포털 게재

-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19년 조사결과와 2022년 조사결과를 동시에 제시하여 장기요양실태의 변화를 점검

1-6 성인지 관련 공표 통계 항목

□ 성인지(성별 관련)와 관련하여 공표하는 관련 통계 항목

- 개인이 응답자인 수급자 및 가족조사, 장기요양요원조사는 공표되는 모든 항목은 응답자의 성별 통계를 공표함(실태조사 보고서 및 국가통계포털 참조)
- 특히 조사결과를 정리하면서 주요 특성에 ‘성’을 포함하여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음
- 예시: (수급자) 보행 및 이동능력

(단위: %, 명)

특성1	특성2	빈도	독립적 이동가능	보장구 착용	보조기구, 타인도움	이동 불가능
전체		1,059,394	17.6	7.8	58.1	16.6
성별	남성	293,215	20.6	6.5	56.9	15.9
	여성	766,179	16.4	8.3	58.5	16.8
연령대	65세 미만	29,954	18.8	6.2	49.4	25.5
	65-69세	47,736	11.7	6.1	61	21.2
	70-74세	83,908	20.5	7.6	58.2	13.7
	75-79세	151,556	21	6	55.1	18
	80-84세	278,080	21	6.8	57.3	14.9
	85-89세	283,142	16.1	9.2	59.6	15
	90세 이상	185,018	11.8	9.3	59.9	19
지역	대도시	375,081	15.2	6	60.9	17.9
	중소도시	346,547	16.9	7.8	57.2	18.1
	농어촌	337,766	20.9	9.7	55.8	13.6
장기요양 인정등급	1등급	49,560	0	0.3	20.8	78.8
	2등급	97,125	1.6	2.8	52.8	42.8
	3등급	290,239	10	7.9	64.9	17.3
	4등급	484,423	18.9	9.8	63.4	7.9
	5등급	115,723	44.6	6.7	43.9	4.9
	인지지원등급	22,324	57	6.4	32.7	4
급여유형	방문요양	436,678	14.6	9.1	63.4	13
	방문목욕	75,609	15.4	15.1	56.4	13.1
	방문간호	11,046	8.8	7	49.2	35
	주야간보호	119,740	35.3	7	55.5	2.2
	단기보호	613	12.1	6.9	59.1	21.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742	11.4	4.9	58.6	25
	노인요양시설(10-29명)	47,921	9.3	2.1	63.5	25.1
	노인요양시설(30-49명)	35,968	11.9	2.7	60.4	25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79,565	9.6	2.9	60.9	26.5
	미이용	238,512	20.8	7.2	48.2	23.8
치매 여부	예	576,808	19.3	6	54.5	20.2
	아니오	482,586	15.6	9.9	62.3	12.2

○ 예시: (장기요양요원) 월평균 근무일수

(단위: %, 명)

특성1	특성2	빈도	15일 미만	15-19일	20-24일	25일 이상
전체		478,556	7.4	7.5	68.8	16.3
성별	남성	29,360	8.4	3.1	67.3	21.3
	여성	449,196	7.3	7.7	68.9	16
연령대	29세 이하	5,136	1.6	10.4	80.1	7.9
	30-39세 이하	10,286	3.6	13.1	77	6.3
	40-49세 이하	33,947	4.1	8.4	85.3	2.2
	50-59세 이하	128,150	8.1	8.1	73.3	10.6
	60-69세 이하	231,031	8.5	7.9	68.4	15.2
	70세 이상	70,005	5.2	3.4	52.1	39.3
지역	대도시	191,446	7.4	7.2	65	20.4
	중소도시	177,561	8.7	7.6	68.5	15.2
	농어촌	109,549	5.2	7.8	76	10.9
직종	요양보호사	425,581	8.1	7.3	66.7	17.9
	사회복지사	32,107	0.5	8.1	88.1	3.3
	간호(조무)사	18,015	4.9	9	82.6	3.4
	물리(작업)치료사	2,853	1.9	13.6	83.5	1.1
급여 유형	방문요양	321,012	7.3	6.2	64	22.4
	방문목욕	16,444	29.7	6.6	47.1	16.5
	방문간호	1,384	39.8	10.7	39.8	9.8
	주야간보호	36,167	2.1	7.8	86.4	3.8
	단기보호	279	25.7	10.5	61.1	2.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108	16.5	4.9	71.7	7
	노인요양시설(10-29명)	29,119	5.6	8.8	83.9	1.7
	노인요양시설(30-49명)	21,256	4.7	12.5	81.8	0.9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44,787	3.6	13.4	81.9	1
소속기관 운영주체	개인	368,506	8	6.9	67.8	17.3
	영리법인	37,259	8.4	6	68.1	17.6
	비영리법인	68,212	3.9	11.4	73.4	11.4
	국가 또는	4,580	1.6	6.7	90.4	1.4
	지방자치단체					

2.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공표 시기

* 나라통계>통계정책관리시스템>정책지원서비스>승인통계검색>조사개요 참조

2-1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통계공표 시점

- 조사대상 기간조사기준시점 : 본조사 2022.7.12.~7.25. 실시
- 통계 공표 시점 : 2023.8.16.(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및 마이크로데이터 (2023.12.5.)

2-2 조사과정별 소요되는 기간

- 실태조사 공표 Y-1년 계획 수립, Y년 실태조사 실시, Y+1년 모니터링 실시

2-3 조사 기준시점과 통계결과의 최초 공표일 간의 차이

- 13개월(조사완료후)

2-4 통계작성 및 공표 기간 단축 가능성

□ 기간 단축 가능성 검토결과

-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는 1차 조사(2019년) 이후 두 번째 수행되는 조사로, 1차 조사와 비교하여 다소 단축됨
 - 1차 조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료입력 및 내검, 사후 검증, 에러체크 등 조사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련의 소요 기간 역시 이전 대비 단축됨.
- 향후 조사(2025년 실시 예정)에서는 조사 완료 이후 자료 내검, 사후검증, 에러체크 기간의 다수의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추가적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3.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3-1 통계의 개념 동일 여부

- 2019년 조사와 동일함 : 2022년 조사는 2회차 조사로 이전조사와 시계열 유지가 중요한 시점으로 동일하게 유지

3-2 분류체계 동일 여부

- 2019년 조사와 동일함 : 2022년 조사는 2회차 조사로 이전조사와 시계열 유지가 중요한 시점으로 동일하게 유지

3-3 조사 기준시점 동일 여부

- 2019년 조사와 동일함 : 2022년 조사는 2회차 조사로 이전조사와 시계열 유지가 중요한 시점으로 동일하게 유지

3-4 조사 실시 시기 동일 여부

- 1차 조사와 유사하게 유지하되, 2019년 조사(9월 실시)에 비해 준비기간 단축을 통해 7월 조사 실시

4. 국가간 비교성

4-1 동일한 목적을 갖는 외국 통계 명칭과 개요

- 일본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개호보험과 관련하여 가구, 시설 및 종사자, 급여, 수급자 영역에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표〉일본의 장기요양 관련 유관조사

영역	조사(통계)명	수행기관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주기	비고
가구	국민생활기초조사	후생노동성	요개호노인이 있는 세대 가구	<개호조사표> - 요개호자 일반적 특성 - 요개호자 개호현황(요개호도, 필요 원인, 서비스 이용상황, 주거개호자 등)	3년('01년 시작)	-
	개호서비스세대조사(2000)	후생노동성	전국 요보호 필요한 만 40세 이상(4,327명)(단, 65세 미만은 개호보험신청자)	- 요보호필요 원인 - 건강상태 - 가족, 친족 등의 개호상황 -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주거상황 - 복지요구 이용상황	일회성	-
시설 및 종사자	개호서비스시설 사업소조사	후생노동성	전국 개호사업소 및 시설(13,146개소)	- 시설 및 사업소 현황(소재지, 제공내용, 운영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수 등) - 이용자 현황(일상생활 자립도 등)	매년('00년 시작)	-노인보건의료시설('96~'99)과 방문개호통계조사('95~'99)가 통합
	개호사업경영실태조사	후생노동성	(17년 기준) 전국 개호사업소 및 시설(15,062개소)	- 시설 개요 및 건물상황 - 직원 수 및 직원 급여 - 서비스유형별 개호서비스 상황 - 수입, 차입금, 사업지출	3년('05년 시작)	
	개호사업경영개황조사	후생노동성	(16년 기준) 전국 개호사업소 및 시설(7,681개소)	- 시설유형별 개요 및 건물상황 - 종사자 현황(소득, 1인당 급여비, 소득 등) - 수입, 차입금, 사업지출	3년('04년 시작)	
	개호 종사자 처우상황등조사	후생노동성	(17년 기준) 전국 개호사업소 및 시설(7,660개소)	<시설사업소조사> -급여상황 -개호직원 처우 및 처우개선가산 취득사항 -급여외 처우개선사항	3년('04년 시작)	
급여	개호급여부비등 실태조사	후생노동성	개호DB에 축적되어 있는 도도부현 및 국민건강보험 단체연합회가 심사한 모든 개호급여비 및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 종합사업비 명세서 및 급여관리표	-수급자 상황(수급자수, 요개호상태 등) -수급자 1인당 비용(서비스 종류별, 도도부현별 등) -서비스 이용현황(서비스유형별) -지역밀착형 서비스 이용 현황(개호예방 치매대응영 통소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개호 등) -시설서비스 현황(요개호상태별 수급자 1인당 비용, 입퇴원 기간별 비율 등)	3년('04년 시작)	-2015년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 종합사업비 명세서 조사업명 변경
	개호보험사업 상황보고	후생노동성	보험자(광역연합과 일부사무조합)	-제1피보험자수 -요개호 및 요인정자수 -개호 및 지역밀착형 서비스 수급자수 -시설서비스 수급자수	매월('01년 시작)	

영역 ₁₎	조사(통계)명	수행기관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주기	비고
				-보험급부 개호급부·예방급부 서비스 현황		
수급자	고령자 개호실태조사	후생노동성	개호보험시설 (60개소) 조사대상노인 (3,519명)	<개호시간조사> -조사대상에 대한 서비스 48시간 기록 <기능상태조사> -인정조사 항목별(88항목)	1995년 2001년 2007년	-심신기능상태와 서비스량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정보록에 반영하기 위함

주: 1) 후생노동성의 통계목록 구분임

2) 동일조사라 하더라도 조사대상 및 내용이 연도별로 일부 상이할 경우 가장 최신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 독일, 영국, 호주 등

- 독일에서는 장기요양요양보험 통계연보(Pflegestatistik)를 2년마다 수집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제공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현황, 요수발자수 현황, 서비스 이용 의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음
- 영국의 돌봄종사자 종단조사(LoCS: Longitudinal Care Work Study)는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지원동기 및 이유,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호주의 Survey of Aged Care Houses/facilities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 돌봄서비스 수급자 및 이용현황, 서비스 중단이유, 정부지출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음

〈표〉국외의 장기요양 관련 유관조사 및 통계

국가	조사(통계)명	수행기관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주기	비고
독일	Pflegestatistik-Pflege im Rahmen der Pflegeversicherung	Destatis (Deutschland Statistische Bundesamt)	요양시설 건강보험협회	-요양시설 제공서비스 이용자 현황 -요양시설 종사자 현황(고용형태, 업무, 훈련 급여 등) -요수발자수 현황(주수발자, 거주상태 등) -서비스 이용의향 -수발자 현황	2년 ('99)	
영국	LoCS(Longitudinal Care Work Study)	The Policy Institute at King's	돌봄서비스 제공자 및 근로자 -요양보호사, 관리자,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 일반적 특성 - 근무형태(현재 직위, 근무경력, 업무내용 등) - 별도의 교육훈련현황 - 요양분야 지원 동기 및 이유 - 직업만족도	2008 2010 2012 2016	
호주	Survey of Aged Care Houses /facilities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요양시설 노인	- 일반적 특성(주거, 가족관계 등) - 돌봄 서비스 수급자 및 이용현황 - 서비스 중단 이유 - 정부지출현황(서비스별, 대상별) - 서비스제공기관 현황 - 종사자 현황	매년 ('06)	

4-2 동일한 목적을 갖는 외국 통계와의 직접 비교 가능 여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이용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검토

□ 해외 통계와 직접적 비교가능성, 이용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검토결과

- 개별국가의 장기요양 관련 조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별항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가별 장기요양제도 운영의 형태가 상이하여 직접 비교가능한 항목은 거의 없음. 이로 인해 비교를 통해 확보 가능한 정보가 매우 부족
- 타 국가의 조사자료와 비교할 경우, 국가별 장기요양제도의 수급자 규모 및 기준, 기관 운영형태 및 설립 기준, 요원의 기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해석에 주의를 해야 함

4-3 국가 간 주요 통계 내용을 비교한 통계표, 그래프

□ 일본의 주요 통계 내용 비교

조사명	개별지표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한 통계생산 가능 여부
국민생활기초조사	요개호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결혼상태 등)	○
	요개호자의 주개호자	○
	요개호자의 급여이용현황	○
	요개호자의 필요서비스 이유	
개호사업 경영실태조사	직원수	○
	직원급여	○
	기관 수입	
	기관 지출	
	기관 차입금	
개호서비스 시설 사업소 조사	기관 건물현황	○
	소재지	○
	제공내용	○
	종사자수	○
	이용자 수	○
	이용자의 일상생활자립도	

5. 유사통계와 일관성

5-1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의 명칭과 개요

□ 국내 유사통계 현황

- 국내 장기요양관련 통계 및 조사
 - 국내에서 수행중인 장기요양 관련 통계 및 조사의 개요를 살펴보면, 주기성을 갖는 통계 및 조사와 비주기적·일회적으로 실시된 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주기성을 갖는 통계 및 조사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 장기요양기관 패널경영 실태조사, 장기요양기관 노인 코호트 구축연구 등이 있음

<표>국내 장기요양 관련 유관조사(주기적)

조사(통계)명	수행기관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주기	비고
노인장기요양 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 보험 공단	(통계자료) (‘21년 기준) - 인정자(1,097,462 명) - 신청자(1,281,244 명) - 재가기관(18,524개 소) - 시설(6,334개소) - 요양보호사(507,473 명), 사회복지사(33,736 명), 간호사 (3,645명) 등	<수급자> - 시도/등급/자격/연령별 판정·인정현황, 주거상 태, 주요질병, 주수발자, 신청현황 - 시도/연령구간/등급/급여종류/기관별 급여실 적 <장기요양기관> - 연도/시도/급여종류별 기관현황(기관수, 정원 등) <장기요양요원> -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 OECD 기준장기요양 근무인력현황 <기타> - 적용인구/장기요양보험료 현황	매년 (‘09년 시작)	- 국가데이터처 승인통 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 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 보험 공단	(통계자료) (‘22년 6월말) - 인정자(974,702 명) - 신청자(1,307,231 명) - 재가기관(21,027개 소) - 시설(6,056개소) - 요양보호사(535,597 명), 사회복지사(35,497 명), 간호사 (3,776명)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와 동일	매년 (‘09년 시작)	
노인장기요양 보험 만족도 조사	국민건강 보험 공단	(‘21년 기준) - 이용자 및 보호자 (2,500명) - 종사자(2,500명) -	<보호자> - 이용자 건강상태, 요양환경 변화 - 본인일부부담금 적정납부여부 - 가족의 수발부담, 사회경제적활동 변화 - 친절도, 전반적 만족도 <이용자> - 재가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현황 및 욕구(종류, 횟수, 이용시간) ·요양보호사 업무, 만족도 - 시설서비스이용자 ·입소현황(입소시 의사결정, 변경경험, 변경이유 등) ·입소시설 만족도(프로그램 등) <일반국민> -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반적 인식 - 신청자격 및 서비스 종류 - 이용의향	매년 (‘11년 시작)	
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 실태조사	국민건강 보험 공단	(‘22년 기준(안)) 장기요양기관 1,033개 소 - 노인요양시설(169개 소) - 공동생활가정(71개 소) - 주야간보호(159개 소) - 단기보호(35개소) - 방문요양(511개소) - 방문목욕(72개소) - 방문간호(16개소)	<장기요양기관현황> - 설립유형, 사업개시일, 회계현황, 건물 소유여부 등 <종사자 급여 및 근무상황> - 근무현황(직종, 근무연수, 고용형태, 급여 형태, 사회보험가입여부 등) <장기요양기관 수입 및 지출> - 수입, 보충금, 후원금 등 -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등	매년 (‘16년 시작)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연구 (2017~2020)	국민건강 보험 공단	전국 만 55세 이상 - 장기요양 미인정자 (코호트) 약 만명(모 집단 960만명) - 인정자(패널) 약5천 명(모집단 50만명)	- 개인적 요소(인구사회학적 특성, 심리 적·영성적 요인) - 건강상태(건강수준, 건강행태, 의료이용) - 환경적 요소(사회적, 물리적, 서비스, 기술적 요소) - 신체적·인지적능력 - 적응, 활동과 참여실태 - 장애와 증상	코호트 (2년) 패널(1년)	- 2020 년 1wave 진행 예정

조사(통계)명	수행기관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주 기	비고
			- 삶의 질(SF-36, EQ-5D)		

주: 동일조사라 하더라도 조사대상 및 내용이 연도별로 일부 상이할 경우 가장 최신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 비주기적 또는 일회적으로 실시된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욕구조사(2001), 노인실태조사(장기요양조사)(2004),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실태조사(2010), 장기요양 기관종사자 임금 및 근로환경실태조사(2014), 장기요양인정자의 급여이용 형태별 부양실태조사(2016) 등이 있음

〈표〉국내 장기요양 관련 유관조사(비주기적)

조사(통계)명	수행기관	조사대상	조사내용	비고
2001년도 노인장기요 양보호서비 스 욕구조사	한국보건 사회 연구원	전국 만 65세 이 상 - 기초조사(노인 5,058명) - 장기요양보호대 상 노인조사 (2,307명) - 수 발 자 조 사 (1,011명)	<장기요양보호대상자 조사> - 거주형태, 건강상태 - 수발상태(수발자와의 관계, 어려움, 만족도 등) - 서비스욕구(장기요양서비스) - 가족관계 및 가차관(부모부양 등) <수발자 조사> - (주/부)수발자의 일반적 특성 - 사회적 지원체계(가족협조, 지지 제공자) - 건강상태 - 수발상태(시간, 기간, 경제적부담, 비상시 도움요청가 능자) - 수발부담(어려운점, 동기 등) - 서비스욕구(장기요양, 돌봄서비스 등) - 가차관(노인부양 의식)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 태 및 복지욕구조 사 (장기요양조 사)	보건복지 부 한국보건 사회 연구원	전국 만 65세 이 상 - 수발자 조사(430 명) - 장기요양조사 (3,278명)	<(가구용) 수발자조사> -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태도 - 주수발자의 일반적 특성 - 수발실태(정도, 강도, 2차 수발자, 비용 등) - 수발부담(동기, 어려움, 행위별 부담 등) - 서비스욕구, 가족협조, 부수발자 조사 <(개인용) 장기요양조사> - 일반적 특성, 가족관계, 건강의료실태 - 요양비용부담정도 - 신체기능(ADL, IADL) - 인지기능 - 문제행동영역 - 간호처치요구상태 - 재활요구영역(마비, 구축) - 부양의 교환(수발자와의 관계, 부담, 효과, 만족도 등)	- 노인실태조사는 1994, 1998, 2004, 2008, 2011, 2014년에 실시되었으나, 수 발자조사와 장기 요양조사는 2004 년에만 실시되었 음 - 장기요양조사는 2004년 기능평가 조사로 반영
2010년 노인장기요 양보험 본인부담 실태조사	국민건강 보험 공단	장기요양보험 이 용노인(3,013명) - 시설급여(1,005 명) - 재가급여(2,008 명)	- 일반적 특성(급여종류, 가족관계 등) - 본인부담금 내역(총액, 일부, 비급여 부담금 등) - 비용부담 관련 특성(주부담자, 부담비율, 부 담감 등) - 월인 또는 면제 및 기타(경험 여부, 유형, 금액, 서비스욕구 등)	
2014년 장기요양기 관 종사자 임금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국민건강 보험 공단	요양기관 종사자 (총 1,565명) - 요양보호사(822 명) - 사회복지사(254 명) - 간호사(127명) - 간호조무사(230 명)	- 일반적 특성(개인, 근무기관 특성) - 근로계약, 근무형태(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무형태, 근무일수, 시간 등) - 업무 만족도 및 근로지속의향 - 처우개선영역간 우선순위(세부항목별 필요성 /실행성)	

조사(통계)명	수행기관	조사대상	조사내용	비고
		-물리치료사(91명) -작업치료사(41명)		
2016년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이용 형태별 부양 실태조사	국민건강 보험 공단	장기요양보험인정 자 (총 2,636명) -시설서비스(318 명) -재가서비스 (1,767명) -미이용(551명)	-급여이용 형태별 인정자 및 가족부양자 특 성 -급여만족도 -지지체계 -추가 재가급여 종류 -부양비용 및 부양 부담 -심리정서적상태(우울, 삶의 질 등)	
서비스량 조사 (타임스터디)	국민건강 보험 공단 가톨릭대 학교 한국보건 사회 연구원	(‘11년 기준) -요양시설(41개소) -노인(1,006명)	<서비스량조사> -조사대상에 대한 서비스 24시간 기록 <기능상태조사> -인정조사 항목별 기능상태 판정	-2003, 2004, 2006, 2007, 2011년 실시 -2004년에는 기 능평가 조사만 실시

5-2 공표항목과 타통계 유사·동일 항목간 통계 수치 비교·검토

- 국내에서 시행해온 장기요양관련 조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등 제한된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가 대부분으로 직접적 비교에는 제한이 있음
 -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는 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하여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 기관, 장기요양요원을 포괄하여 전국적 표본을 대상으로 법률에 의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실태조사로서의 의미를 가짐
- 가장 유사한 자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작성목적, 조사 성격 및 설계, 활용 분야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어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와의 유사성
 -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수급자 특성(성, 연령, 이용급여 유형), 장기요양기관 특성(운영주체, 급여유형 등), 장기요양요원(성, 연령, 제공급여 유형)의 분포는 통계연보의 자료와 유사함
- 장기요양통계연보와의 차이점
 - 작성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는 등급신청, 판정현황 및 급여실적을 비롯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각종 운영현황을 시군구별로 세부적으로 수록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지자체, 운영센터, 요양시설 등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시군구별 데이터 위주로 통계를 작성하였음. 그러나 본 장기요양실태조사는 수급자와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장기요양기관과 요원의 현황을 조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양적 및 질적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통계 성격 및 설계: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는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일반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수조사로 매년 자료를 수집하는 반면, 본

장기요양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는 표본조사임

- 활용 분야: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는 시군구별 데이터 위주로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그러나 본 장기요양실태조사는 표본추출시 시군구를 층화지표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이용자인 수급자 및 가족, 제공자인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의 세부적인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전반의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6.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6-1 통계공표 방법

- 연구보고서: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고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dist_no=378319&tag=&nPage=1)
-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국가통계포털 공표
-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원자료 제공

6-2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 제공 여부

- ☐ 조사 실시 이후 국가통계포털(KOSIS)등록 완료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문서파일 제공(분석 테이블)

7. 통계 설명자료 제공

7-1 통계설명자료에 대한 소재 정보

☐ 통계 설명자료 소재정보

- 통계설명자료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
- 통계설명자료 DB:
 - MDIS → 자료이용 → 다운로드 서비스 → 장기요양실태조사를 조회하면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연구보고서: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고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dist_no=378319&tag=&nPage=1)

7-2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설명자료 제공(통계개요)

☐ 장기요양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제공

<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cdta?statsConfmNo=117104&kosisYn=Y>

☐ 통계 개요

- 작성기관 및 부서, 조사목적, 작성유형, 조사대상

- 조사항목 (조사표 첨부)
- 공표 주기 및 공표방법 등, 조사기간
-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주요 용어해설
- 자료 수집방법, 법적 근거, 조사연혁, 조사체계
- 국가통계승인 내역 등

7-3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설명자료 제공[조사관리]

☐ 조사관리

<https://www.k-stat.go.kr/metasvc/msbal00/statsdcdta?statsConfmNo=117104&kosisYn=Y>

- 표본관리, 조사업무 흐름도, 조사원 규모, 비표본 오차관리 제공

7-4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설명자료 제공

☐ 통계 추정, 추계 및 분석 자료 제시

7-5 간행물 또는 작성기관 홈페이지 등에 통계설명자료 제공 (KOSIS 통계설명자료 외)

- 연구보고서: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고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378319&tag=&nPage=1

8.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8-1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방법

☐ 마이크로데이터 생성방법 및 매뉴얼

- 생성방법: ①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발표('23.8.16.)
②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실태조사 담당자 논의
③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실시('23.12.5.)
- 매뉴얼
 - 응답자 식별 가능성 제거
 - 비밀보호 필요 항목 구분
 - 서술형으로 입력된 항목 중 입력오류 등 오류값이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제공 제외

8-2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방법

- 관리방법: 통계담당자(국가데이터처 MDIS)의 주기적 점검
- 매뉴얼: 통계자료의 정확한 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확인(국가데이터처 MDIS 이용기준에 따른 관리)

9.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9-1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여부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여부 및 방법

- 요구 방법: 국가데이터처의 MDIS(<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요구
- 제공 방법(마이크로데이터 이용안내)
 - 다운로드 서비스/원격접수 서비스/이용센터 서비스/주문형 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관련한 내부 규정: 마이크로데이터 관리방법 및 매뉴얼과 동일

9-2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 MDIS 홈페이지 관련 설명자료 제공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

9-3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미제공 관련 내부 규정(지침)

- 국가데이터처 MDIS 규정 준수

10.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10-1 자료 수집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법령, 규정)이나 조치

-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데이터처(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10-2 자료 처리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법령, 규정)이나 조치

-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데이터처(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10-3 자료 보관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법령, 규정)이나 조치

-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데이터처(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11.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11-1 공표자료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나 방법

- 개인 식별이 가능한 항목 처리 : 성명(기관명), 주소, 연락처 삭제

11-2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응답자 비밀 보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나 방법

- 개인 식별이 가능한 항목 처리 : 성명(기관명), 주소, 연락처 삭제

Ⅵ.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사업예산

1-1 통계 기획 및 분석인력

- 담당부서명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담당인력 및 근속년수

직위	성명	근속년수	직위	성명	근속년수
사무관	신○○	7년 5개월	주무관	김○○	1년 5개월

- 담당부서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 정책연구실
- 담당인력 및 근속년수

직위	성명	근속년수	업무관련 전공여부
연구위원	이 ○ ○	25년	사회복지, 실태조사 다수수행
연구위원	강 ○ ○	10년	동일
부연구위원	이 ○ ○	10년	동일
부연구위원	김 ○ ○	12년	동일
부연구위원	남궁○○	2년 6개월	동일
연구원	최 ○ ○	1년	사회복지

- 담당부서명 : 국가데이터처 통계대행과
- 담당인력 및 근속년수

직위	성명	근속년수	직위	성명	근속년수
사무관	홍 ○ ○	25년 7개월	주무관	김 ○ ○	8년 11개월
주무관	김 ○ ○	21년 3개월			

2. 통계위탁

2-1 통계작성을 위한 위탁업무 관리 사항

- 통계작성을 국가데이터처 통계대행과에 위탁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 등에 「통계조사 민간위탁 지침」을 반영하였음
- 조사기획, 조사표설계 및 지침서 작성, 자료처리 및 분석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계속적으로 관리감독 수행

2-2~10 조사가 완료된 후 수탁기관으로부터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받고 있는 자료 목록

- 조사가 완료된 후 국가데이터처 통계대행과로부터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받음
- 조사기획서(사업계획서) 1부
- 표본설계서 및 표본오차 산출 결과 1부

- 조사원 교육 지침서 1부
- 조사표 원본 1부
- 조사결과 원자료 1부
- 조사 최종결과 보고 1부(현장조사 및 자료처리 관련 내용 포함) : 조사 계획 및 수행 결과, 수행상황 보고 등 전반적 내용 포함

3.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나라통계>통계정책관리시스템>품질관리>통합개선과제>개선과제(정기, 수시)

3-1 최근 3년간 통계 지적사례 및 조치결과

- 외부 지적사례 없음

3-2 전주기 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내역 및 이행률(중점관리과제)

<표> 이전 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내역

2019년 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내역 및 이행률	
KOSIS의 통계설명자료 보완	-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보완 필요 - 표본관리, 조사업무 흐름도, 조사원 규모, 조사원 교육훈련, 현장조사 지도, 무응답률 및 무응답 대처 등 - 표본추출틀, 표본규모 산출식, 추정산식, 가중치 조정, 이상치 식별 및 처리 등 정보 보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마이크로데이터 및 집계표 데이터에 대한 비밀보호 관련 사항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KOSIS 통계설명자료 보완 - 표본관리, 조사업무 흐름도, 조사원 규모, 조사원 교육훈련, 현장조사 지도, 무응답률 및 무응답 대처 등 - 표본추출틀, 표본규모 산출식, 추정산식, 가중치 조정, 이상치 식별 및 처리 등 정보 보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마이크로데이터 및 집계표 데이터에 대한 비밀보호 관련 사항 보완	100%
조사 결과보고서 개선	- 주요 내용에 대한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제시(결과보고서 분량이 방대하여 파악이 어렵다는 통계진단 이용자 FGI 의견) -> 핵심을 정리하는 요약보고서 제시, 그래픽 등을 활용 제시	- 장기요양실태조사 보도자료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23.8.17) 보도자료 내* 인포그래픽 활용하여 장기요양실태조사 정보 제공 -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조사결과(749페이지) 정리	100%
상대표준오차 제공	- 2022년 보고서 작성시 주요 상대표준오차 제시 필요	-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고서 1장 기술)	100%
조사결과 공표시기 사전공지	통계공표 일정 사전 공지	-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보도자료('23.8.17)에 기재 ※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복지부 누리집 및 KOSIS 게시(9월중)'(본문 14p)	100%
장기요양요원 대상 조사방법의 적정성 검토	- 조사시 유의사항 추가 : 장기요양요원 조사 수행시 요원이 최대한 솔직히 응답하여 신뢰성 높은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로 하므로, 조사는 조사원과 응답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함	- 조사원 사전 교육시 설명, 강조 - 조사대상 사전 연락을 통해 희망 장소와 시간에서 조사하도록 함 (조사지침서 28P) - 비밀보호용 봉투사용	100%
조사내용 개선	조사내용 개선을 위한 이용자 의견수렴	- 조사데이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100%

	및 반영	조사 데이터 산출을 위한 해당 정책부서(보건복지부 등), 실무부서(건강보험공단), 연구자(교수, 연구자 등)의 조사 내용 수정 및 추가, 삭제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사 내용 수정(예,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의 새로운 항목 구성)	
--	------	--	--